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 신안군 정기종합감사 –

2022. 4.



전라남도
JeollaNamdo
〔감 사 관 실〕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신안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신안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18년 11월부터 '21년 10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조직·인사관리,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1. 11. 23.부터 12. 1.까지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Ⅱ.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가+나+다+라)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건)													모범사례 (다)	사전컨설팅 (라)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A+B+C+D+E+F)	시 정						재정상 처분외 시정 (b)	주의 (B)	개선 (C)	권고 (D)	통보 (E)	경고 (F)		
					계 (A=a+b)	재정상 처분(건/백만원)												
						소계 (a)	회수	부과추징	감액	기타								
62	23 (38명)	3 (4명)	20 (34명)	37	18 (1,841)	11 (1,841)	4 (1,238)	3 (185)	3 (388)	1 (30)	7	12	2	-	2	3	2	-

2. 주요 지적사항

1 ○○○ ○○학교 민간위탁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교육복지과)은 '19. 00. 00.부터 (사)○○○에 **위탁**하여 인생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목적으로 '○○○ ○○**학교**'를 지원 **중**

1. 민간위탁 사전절차 미이행

○ 「○○○ ○○학교 조례」 제6조 등에 ○○○ ○○**학교 운영**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신안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교육복지과)은 '19. 00. 00. **군의회 동의 없이** (사)○○○에 ○○○ ○○**학교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계약** 체결

- 그로 인하여 **지방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통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위탁 관련 조례 **취지**가 **무력화**되는 결과 초래

2. 자격 없는 자를 민간위탁자 운영자로 선정

○ 「○○○○ ○○학교 조례」 제14조 등에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조례 제15조 등에 군수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 한편 위 군은 '19. 00. 00. **군 누리집**에 ○○○ ○○학교 위탁운영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에 위탁을 희망할 경우 **평생교육 전문인력현황**, **인생학교 프로그램 연구·교육 실적**, **프로그램 보유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함

- 그런데 위 군(교육복지과)은 **(사)○○○**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할 시 **전문인력현황**도 **제출하지 않았고**,

- **연구실적**도 **㈜○○○○○**가 **수행**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도교육청 발주)와 '○○○○ ○○학교 설립에 대한 연구'(○○군 발주) 등 **2건**을 (사)○○○ 실적으로 **허위**로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위탁운영자로 **선정**

○ 그로 인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사무를 위탁운영하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

3. 민간위탁사업 관리 부적정

○ 「○○○○ ○○학교 조례」 제9조 등에 **위탁운영자**에게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학교 **이용료**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에 **제출**(변경 포함)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또한 「위·수탁 계약서」 제5조 등에 **위탁운영자**는 **운영일지**, **사용료 징수원부**, **교사** 및 **직원명부**, **안전점검 기록대장** 등을 **비치·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교육복지과)은 **(사)○○○**가 위원회를 구성한 '19. 00. 00.부터 '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결국 **위원회 심의도 없이** 사업계획서, 이용료 등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방치**

- 또한 '19년부터 '21년까지 **군수**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위탁운영자**가 81명(724만원)에 대하여 **이용료**[**]를 **부당 감액징수**하고

** 1인당 이용료 : ('20년) 9만원(2박3일)~24만원(7박8일), ('21년) 10만원(2박3일)~25만원(7박8일)

- **운영일지, 징수원부,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 등이 **미비치**하고 있는데도 '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관리 소홀

○ 그로 인하여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설이용료가 위탁운영자의 임의대로 징수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행정의 불신 초래 우려

☞ 민간위탁 업무를 소홀히 한 **前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연간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승인사항대로 위탁사무를 추진하며, 의무대장을 비치하도록 **"주의요구"**

2 5급 승진임용 등 인사 업무 처리 부적정

1. 5급 승진임용 절차 부적정

□ 위 군(행정지원과)은 ’18. 1월부터 ’21. 8월까지 **67명**을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하여 **5급 기본교육**을 **수료하**게 한 **후** 5급으로 직급 **승진**

가. 5급 승진임용순위와 다른 승진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 등에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자에 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상 **성적(70%)**과 **5급 기본교육 성적(30%)**을 **합산**하여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 한 후 그 **순위대로 임용**하도록 규정

○ 또한 「신안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9조 제3항에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르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행정지원과)은 ’18. 1월부터 ’21. 8월까지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32명**에 대한 **5급 기본교육**을 **승진대상자 의결일 순서대로 수료**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임의대로** 부당하게 교육을 **보냄**

- 또한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인사위원회의**의 **승진 의결 횟수별**로 **작성**하여 그 **순위대로** 5급으로 **임용**해야 하는데도 **5급 기본교육**을 **수료**한 **순서**대로 **작성**한 **순위**에 따라 **부당**하게 **승진임용**

○ 그로 인하여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정당**하게 **작성**할 경우의 명부 **선순위자**가 **후순위자보다 짧게는 14일**에서 **길게는 1년 10개월 늦게** 5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결과 초래

- 또한 **’19. 12. 23. 5급 승진의결**된 지방○○6급 ‘○○○’는 **’20. 5. 22.** 5급 기본교육 수료 이후 5급 승진임용명부상 **1순위**인데도 **’20. 00. 00.** 5급 **승진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하여**

- 이후 **’20. 00. 00. 수사개시**가 통보된 이후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5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나. 전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부당이행 및 동일사례 재발생

○ 「지자체 행정감사규정」 제18조 제5항에 **감사대상 지자체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

○ 한편 전남도는 '19. 2. 15. **2018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통보** 시 '18. 1. 5.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 등의 **5급 기본교육 미실시** 건에 대하여 **신속히 교육**을 **이수**시키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를 함

- 그런데 위 군(행정지원과)은 **기관경고 처분**일인 **'19. 2. 15.**부터 **'21. 1월까지** 총 **8회**의 **5급 기본교육** 기회가 있었는데도 '○○○'에 대하여 부당하게 **교육**을 **보내지 않다가 '21. 2. 22.**에서야 **교육**을 보냄

- 그로 인하여 '○○○'은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18. 1. 5.부터 **3년 7개월**이 **경과**한 **'21. 00. 00.**에서야 **5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결과 초래

○ 또한 위 군(행정지원과)은 **'19. 2. 15. 5급 기본교육 미실시**로 **기관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지방○○○○6급 '○○○'에 대하여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총 **23회**의 **5급 기본교육 기회**가 있었는데도 **부당**하게 **교육**을 **보내지 않다가 '21. 1. 25.**에서야 **교육**을 보냄

- 그로 인하여 '○○○'은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18. 12. 26.**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한 **'21. 00. 00.**에서야 **5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결과 초래

2.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행정지원과)은 '18. 11월부터 '21. 10월까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2 제5항에 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수, 우, 양, 가 **비율대로** 정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서열** 결정 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행정지원과)은 **6급 행정, 세무, 전산**직렬을 **통합**하여 **1개**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중이므로, **근무성적평정**도 **평정단위(부서)별**로 **6급 행정, 세무, 전산**직렬을 **통합**하여 **실시**한 후 **통합 서열명부**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19. 4월부터 ’20. 4월까지 **총 3회**의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단위(부서)별**로 **6급 행정, 세무, 전산직렬**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을 **통합**하여 **실시하지 않고 직렬별로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한 후 **서열명부**를 **각각 제출**토록 함

○ 그로 인하여 6급 행정, 세무, 전산직렬의 **근무성적평정**이 **’19. 4월**에 **94명, ’19. 10월**에 **88명, ’20. 4월**에 **90명** 등에 대하여 **평정단위별 확인자**(부서장)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임의대로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

※ 각각의 평정단위(부서)별 6급 세무, 전산직렬은 행정직렬을 포함한 근평서열명부 1순위부터 끝순위 중에서 어디든 배치 가능

3. 5급 승진예정인원 부당 산정

□ 위 군(행정지원과)은 ’18. 1월부터 ’21. 8월까지 소속 6급 공무원 **67명**을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 제2항에 **5급 승진예정인원**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5급 승진예정인원 산정**은 **“승진예정인원=결원+퇴직인원 - 신규임용예정인원”** 방식으로 구하되, **승진후보자**가 **남아있으면 해당 인원**만큼 **결원에서 차감**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행정지원과)은 ’18. 12월부터 ’21. 8월까지 5급 **승진예정인원 산출** 시 **기존 승진후보자**가 **남아있는 인원**을 **결원**에서 **제외하지 않는 등** 승진예정인원 산출 오류로 **총 22명**을 **부당**하게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

(단위 : 명)

승진의결일	5급 정원 (가)	5급 현원 (나)	기 결원 (다=가-나)	추가요인 (라)	감소요인 (마)	승진 가능인원 (바=다+라-마)	승진 대상자 선발(사)	과다 산정인원 (사-바)
'18.00.00.	43	43		2	2		6	**6**
'19.00.00.	44	44		2	4	-2	11	**11***
'19.00.00.	47	46	1	10	6	5	6	**1**
'20.00.00.	47	48	-1	9	5	3	7	**4**

* 당초 2명이 과원인 상태에서 11명을 추가로 선발하였기에 11명 과다산정으로 계산

- 그로 인하여 6급의 다른 직원들이 결원이 발생하는 **정당한 시점**에 **공정한 5급 승진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 초래

4. 공금을 횡령한 공무직에 대한 부당한 징계 감경

□ 위 군(행정지원과)은 '19. 00. 00. ○○○○○○의 기념품 판매수입금 **269만원**을 **횡령**한 **○○직 '○○○'**의 **중징계 요구** 건을 **감봉 3월**로 처분함

○ 「신안군 공무직 관리 규정」 제49조 등에 공무직의 **중징계**는 **해고**와 **정직**으로, **경징계**는 **감봉, 견책, 경고**로 구분되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및 성폭력범죄는 **징계 감경**을 **제외**한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행정지원과)은 '19. 00. 00. **269만원**을 **횡령**한 **○○직 '○○○'**의 **중징계 요구 건**을 '19. 00. 00.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면서

- **공금 횡령**은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데도 인사위원**에게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중징계** 건이 **경징계**인 **감봉 3월**로 **부당**하게 **감경** 의결되도록 함

○ 그로 인하여 **공금**을 **횡령한 중대 비위**에 대하여 **정당한 처분**이 내려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부당하게 인사업무를 추진한 前 담당과 前 담당자 등 **2명**에게 "**경징계 요구**", 前 담당과장·담당 등 2명 및 現 담당과장·담당·담당자 3명 등 **5명**에게 "**훈계요구**"

☞ 5급 승진임용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승진임용순위명부 순위를 준수하고, 5급 기본교육 교육시기를 임의 조정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3 보직관리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직위 부여

□ 위 군(행정지원과)은 ’19. 1월부터 ’21. 10월까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승진 및 전보 등의 정기인사를 추진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에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

○ 한편 같은 영 제7조의5에 임용권자는 1. **임용예정직**에 **전문인력**의 **확보** 2.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임용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 공동 수행의** 경우에만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행정지원과)은 ’19. 00. 00.부터 ’20. 00. 00.까지 ○○○○○○○○○○**과장** ‘○○○’로 하여금 **6급 담당 직위**인 ○○○○○○○○단의 ○○○○○○**지원담당**의 업무를 **1년** 동안 **겸임**하도록 하는 등

- ’19. 1월부터 ’21. 3월까지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 등 **3명**에게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과장**에게 **6급 담당 업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 등 **2명**에게 **최소 2개월 24일**에서 **최대 1년**까지 **2개 과**의 **과장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겸임 발령함

○ 또한 **6급 담당 직위 임용자**에 대해서는 겸임 조건이 아닌데도 ’19. 1월부터 ’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 등 **66명**에게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2개**의 **6급 담당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발령함

- 특히 ○○○○○○○과의 ○○○○○**담당**인 ‘○○○’은 ’21. 00. 00.부터 ’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같은 과**의 ○○**담당**과 ○○○**담당** 등 **총 3개**의 **6급 담당 직위**를 **4개월째**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 ’21. 10. 31. 기준으로는 **무보직 6급**이 **82명**이 있는데도 인사규정 상 6급 직위 부여가 가능한 **214명** 중, **2개 직위** 부여자가 **31명**(62개 직위), **3개 직위**를 부여자가 **1명**(3개 직위) 등 총 **32명**이 **65개 직위**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부당**하게 **겸임 발령**함

○ 그로 인하여 요건에 **맞지 않는 겸임발령**을 통하여 **보직관리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고, **6급 담당**의 경우는 **무보직 인원**이 **충분**히 있는데도 **2개 이상 직위**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보직을 부여되는 등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한 결과를 초래

☞ 보직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직위를 부여하도록 **“기관경고”**

4 5급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기획홍보실)은 '20. 00. 00. ○○○○ ○○○ **지원사업 수의계약**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지방○○○○○5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지방○○○○○7급 '○○○'는 **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각각 요구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5급 이상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홍보실)은 ○○○○ ○○○ **지원사업 수의계약**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지방○○○○○5급 '○○○'과 지방○○○○○7급 '○○○'를 **전남도인사위원회**에 **함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는데도

- '20. 00. 00. 지방○○○○○5급 '○○○'만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경징계 요구**하고,

- 같은 날 지방○○○○○7급 '○○○'는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면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를 **이행**한 점에 대하여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자체 판단**하여 **부당**하게 **군인사위원회**에 별도로 **경징계**를 **요구**

○ 그로 인하여 '○○○'은 '20. 00. 00. **전남도인사위원회**에서 **'감봉○월'**로, '○○○'는 **권한 없는 신안군인사위원회**에서 '20. 00. 00. '○○○○'로 의결되는 등 **전남도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할 **징계요구** 건이 **별도**로 **심의**되어 **상이한 판단**이 내려지는 결과를 초래

- 또한 '○○○'이 **제기**한 **'감봉○월'**에 대한 **소청**에서, **전남도소청심사위원회**가 '○○○'과 '○○○'를 **일괄 심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 신안군인사위원회에서 '○○○'를 '○○○○'한 점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을 **'감봉○월'**에서 '○○'으로 **감경**한 **근거**로 **제공**되는 결과를 초래

☞ 징계의결요구를 소홀히 한 **前 담당**에게 **"경징계요구"**

5 ○○○○○○○파크 초화류 식재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뮤지엄파크지원과)은 ’20. 4월부터 ’21. 10월까지 ○○○○○○○**파크** 내 **경관 조성**을 위하여 **1억 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화류**(핑크뮬리 등 20종, 290,747본)를 **식재**

○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 지급 편 등에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면 **검수자**가 **물품**의 **품질·수량·포장** 등을 **검수**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뮤지엄파크지원과)은 ’20. 9월부터 ’21. 10월까지 ○○○○ 등 **15종**(199,300본)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적정하게 물품을 납품하였는지 **검수**하여야 할 **검수자**가 **당일 관외출장**하여 **권한**이 없는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리 검수**하게 하는 등 **물품 검수 업무 소홀**

- 그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적정**하게 **물품**을 **납품**하였는지를 **검수**하지 못한 채 **대금**이 **지급**되어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 초래

○ 「지방계약법」 제20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하자검사자**에게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목적물**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를 **통보**하여 **목적물**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뮤지엄파크지원과)은 ’20. 4월부터 ’21. 10월까지 휴양림 동산 조성 ○○ 구입 등 **20종**(290,747본)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 특히 ○○○○○ 등 **4개 수종**(36,600본, 2,938만원)이 고사하였는데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자체 제거**하는 등 관련 업무 소홀

- 그로 인하여 **하자 보수 요구**를 통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고사**된 **초화류**를 **무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 **2,938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 초래

☞ 물품 검수 및 하자검사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에게 **“훈계요구”**
☞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6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세무회계과)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18년부터 ’21년까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10조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21조에 취득자가 취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자체장은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18년부터 ‘21년 기간에 **신고·납부 누락** 및 **감면조건 위반**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취득세**등 **78건 2,824만원**을 **부과 누락**하여 자주재원 확충 기회를 상실

(단위: 건, 천원)

세목	부과대상	건수	부과(추징) 대상세액
계		78	28,249
취득세	상속 취득세 미부과	51	18,368
	감면 취득세 추징	8	9,071
등록면허세	지하수 굴착신고 추징	19	810

☞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아 부과누락 되거나, 감면요건을 위반하여 추징대상이 된 취득세 등 2,824만원을 부과(추징)토록 **“시정요구”**

7 신안 ○○○○박물관 매입 및 관리 부적정

□ 위 군(문화관광과)은 '19. 00. 00. ○○○○ 전승기반 구축 및 공예산업 활성화,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박물관 용도의 공공용물을 취득

명칭	재산종류	취득일자	취득목적	취득금액(원)	비고
신안 ○○○○박물관	행정재산 (공공용)	2019.00.00.	박물관 조성	364,001,680 (군비)	토지 228,690,000원 건물 135,311,680원

○ 「공유재산 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변경할 때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건물·선박 등의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관광과)은 **'19년 ○○○○박물관 추진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세출예산의 목적 및 계획과 **다른 물건**(○○**읍** ○○○○○)을 **취득**

- 또한 문화관광과와 세무회계과는 ○○○○박물관 목적으로 매입한 ○○**읍** ○○○○○을 일부 ○○○○ **기사 휴게소**로만 사용하고, **대부분** 특별한 용도 없이 **방치**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이나 **공제**에도 **미가입**

○ 그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 원칙(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을 위반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재산권의 안정적 확보와 **시설이용자**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공유재산을 공제에 가입하도록 **"시정요구"** 및 앞으로 당초 계획했던 세출예산의 목적에 맞게 공유재산을 취득·사용하고, 계획과 다른 물건을 취득 시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주의요구"**

8 용역 적격심사 등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세무회계과)은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등 계약을 체결

1. ○○○ ○○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등에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19. 00. 00. 위 용역**을 **입찰 공고**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를 대상으로 같은 해 **00. 00. 적격심사**를 하면서

- 위 업체가 용역실적으로 제출한 **10건의 2억 2,349만원 중**에서 **위 공고문**에 **명시**한 **이행실적 인정 업종**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과 **동일한 이행실적**이 **3건의 8,677만원**으로

- **위 용역**의 **추정가격 1억 8,909만원의 45.88%**에 **해당**되어 **해당 비율**의 **등급**(C등급)의 **점수**인 **7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위 제출된 실적 모두**를 **인정**하여 **위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118.19%**가 **나오게 되자 해당 비율**의 **등급**(A등급)의 **점수**인 **10점**을 **부여**

○ 그로 인하여 **위 업체**의 **이행실적**을 **정당**하게 **평가하였더라면** 종합평점이 **92.8점**으로 낙찰자 결정 하한 점수인 95점에 미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아야 했는데도 이를 과도**하게 **인정**하여 **95.8점**을 **받게 되어 낙찰자로 결정**(계약기간 '19. 11. 25.~ '20. 7. 21., 계약금액 1억 8,382만원)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등에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20. 00. 00. 위 용역**을 **입찰 공고**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같은 해 **00. 00. 적격심사**를 하면서

- 위 업체가 용역실적으로 제출한 2건의 7,851만원 중에서 위 공고문에 명시한 이행실적 인정 업종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과 동일한 이행실적이 없어 이행실적 평가점수를 최하등급(D등급)의 점수인 6점으로 부여해야 하는데도

- 위 제출된 실적 모두를 인정하여 위 용역의 추정가격 1억 3,272만원의 59.15%가 나오게 되자 해당 비율의 등급(B등급)의 점수인 9점을 부여

○ 그로 인하여 위 업체의 이행실적을 정당하게 평가하였더라면 종합평점이 93점으로 낙찰자 결정 하한 점수인 95점에 미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아야 했는데도 이를 과도하게 인정하여 97점을 받게 되어 낙찰자로 결정(계약기간 '20. 7. 6. ~ '21. 6. 30., 계약금액 1억 2,621만원)

3. 일감 몰아주기 등 입찰 회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으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만,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

○ 또한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19. 1월부터 '21. 10월까지 최근 3년 동안 입찰공고 대상 13건 13억 5,234만원의 용역 계약을 32건으로 분할하여 13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

○ 그로 인하여 예정가격 대비 제한 최저율인 87.745%를 적용하는 일반 입찰을 하지 않고 낙찰율을 90%로 적용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4,817만원의 예산이 낭비가 되고, 용역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불특정 업체들의 입찰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결과 초래

☞ 용역 적격심사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에게 "경징계요구" 및 담당에게 "훈계요구"

⑨ 기성타절 등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

□ 위 군(세무회계과)은 ’18. 11. 1.부터 ’21. 10. 30.까지 **최근 3년** 동안 **28건 149억 7,618만원**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10억 2,884만원**에 계약 해제 등 **기성타절** 함

1. 민선7기 군정인수위원회 요청사항 검토 및 계약해제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조 등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교통지원과)은 **’18. 00. 00. 350톤 여객선 건조사업**을 **㈜○○○○○**과 **계약**(계약기간 ’18. 6.~’19. 3., **금액 40억 4,060만원**)하여 **추진**하던 중

- **’18. 00월 경 민선7기 군정인수위원회**에서 **위 계약**을 **중지**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 **’18. 00. 00. 위 물품계약 해제 검토보고**를 **하면서 ’17. 00. 00.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수심 깊이**가 **15m 이내**로 **저수심 관련 개선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 **위 위원회**의 **요청사항**의 **의도**에 **맞게 위 용역 결과보고서**에 **반하여 위 수심 깊이**가 **1m 이하**여서 **개선사업비**가 **약 2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여 **위 물품 계약**을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 그로 인하여 **’19. 00. 00. 위 물품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입한 5억 5,001만원**의 **예산 낭비**

2. 충분한 사업 타당성 등 검토없이 사업추진으로 기성타절 남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경비 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관광과 등 8개부서)은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사업부지 확보** 등 이를 **면밀**하게 **준비 및 검토**하여 **과업 수행 중**에 **사업부지 부재 등 사유**로 **기성 타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신안 ○○○○○○○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이행**해야 할 **용역**(기본 및 실시설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 인허가) 계약을 **유한회사 ○○ 등 3개 업체**와 **체결**(**계약금액 1억 1,734만원**)하여 **과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부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1억 179만원**에 **기성 타절**하였고

- 또한 **‘신안군 ○○○○○처리시설 구매 제작설치’ 계약**을 ㈜○○○○○와 **체결**(**계약금액 69억 8,000만원**)**하여 과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 부지**가 **없다**는 **사유**로 **5,866만원에 기성 타절**하는 등

- ’18. 11. 1.부터 ’21. 10. 30.까지 **최근 3년 동안 17건 77억 226만원의 계약 건**에 대해 **사업부지 부재 등 사유**로 **기성 타절**

○ 그로 인하여 **위 17건**을 **3억 9,058만원**으로 **기성타절**하여 **해당 금액**만큼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 앞으로 군정인수위원회의 업무중지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의도에 맞게 부당하게 검토하여 부적정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 가능성과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계약에 따른 과업 수행 중에 사업부지 변경 등 사유로 기성타절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관경고”**

⑩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주민복지과 등 3개 부서)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사업안내」,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등에 수급권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 지급**하여야 하고, **이미 지급한 과잉 지급분**은 **환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 등 3개 부서)은 '18. 11월부터 '21. 10월까지 사회보장급여를 **39명 3,046만원 과소, 40명 1,725만원 과다** 지급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지급 명세

(단위: 천원)

구분	사유	과소		과다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39	30,467	40	17,259
아동(가족양육)수당	90일이상 국외 체류			8	3,300
기 초 연 금	신규 신청한 달부터 미지급 및 과다산정	1	480	1	114
생 계 급 여	실제 소득 미반영			14	9,920
	신규 신청한 달부터 미지급	3	4,330		
	시설 사망자 초과 지급(시설장)			4	345
주 거 급 여	장기입원자 지급월 산정 오류	5	2,814	13	3,580
장 제 급 여	미신청으로 인한 미지급	27	21,100		
장 애 인 연 금	신규 신청한 달부터 미지급	3	1,743		

-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

☞ 과소 지급한 39명에 대하여 3,046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40명에 대하여 1,725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⑪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해양수산과)은 수산업발전과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추진

1. 행정처분에 따른 면세유 공급 중지 기간 통보 부적정

○ 「수산업법」 제91조 등에 어업의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 **면세유류관리기관(수협)에 면세유 공급 제한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해양수산과)은 '18. 10월부터 '19. 7월까지 ○○○ 등 **33명**을 행정처분하면서 면세유 공급중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등으로 부적정하게 **통지***

  * (부적정 통지)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 (적법한 통지 예) '20. 01. 01.~'20. 01. 30.

- 그로 인하여 면세유 공급 중지 기간에 **면세유 800리터를 부정 수급**하는 결과를 초래

2. 행정처분(시정명령) 이행 확인 부적정

○ 「수산업법」 제41조 등에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처분** 및 **시정명령하고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해양수산과)은 '19. 00. 00.에 ○○○ 등 **23명**이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무조업 어선으로 적발되어 1차 경고 처분하였으면 **30일** 이내 **시정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미이행**

- 그로 인하여 **무조업 어선**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이행**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

3. 행정처분 감경 부적정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등에 행정청은 행정처분 대상자가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 **중앙행정기관장** 등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행정처분 기준을 1회에 한하여 2분의 1 감경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해양수산과)은 ’21. 00. 00. 허가구역 외의 어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를 ’20. 00. 00. ○○**어업관리단장 표창**으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없는데도 **어업정지 60일**을 **30일**로 **부적정**하게 **감경**

- 그 결과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행정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 초래

4.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적정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등에 연안어업 허가어선으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어업을 한 경우는 **1차 위반**은 어업정지 **30일**, **2차 위반**은 어업정지 **45일** 처분하고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어업정지 **1일당 6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해양수산과)은 ‘20. 00. 00. 허가구역 외의 어업으로 적발된 ○○○ 등 2명에 대해 각각 1차 위반 과징금 **180만원**(어업정지 30일)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2차 위반 과징금 270만원**으로 과다 부과

5. 행정처분 대장 작성·관리 부적정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규칙」 제6조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

○ 또한 해수부는 **’20~’21년 신년 특별사면 추진계획**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의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하여 특별감면하고 **행정처분 대장 정리***를 하도록 통지

* ’20년 특별감면 : ’17. 10. 1.~’19. 9. 30. / ’21년 특별감면 : ’19. 10. 1.~’20. 10. 31.

- 그런데 위 군(해양수산과)은 **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기록·관리** 및 **’20~’21년 특별감면자에 대한 기록 삭제·관리**를 하지 않는 등 **행정처분** 기초**자료가 소홀**하게 **관리**되는 결과를 초래

☞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처리한 前·現 담당 **2명**에게 “**훈계요구**”

☞ 1차 경고처분 한 23명의 어업인으로부터 시정명령 이행여부 및 행정처분 대장을 관련 규정에 맞게 기록·정리하도록 **“시정요구”**

⑫ 해양수산사업 국고보조금 등 반납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해양수산과 등 2개 부서)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과 **어업인 복지**를 위해 '17년부터 '20년까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및 가두리 시설 현대화 등 **23건, 143억원**을 지원하고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 등에 보조사업 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받납**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Ⅵ.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2]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에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반환** 조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해양수산과 등 2개 부서)은 '17년부터 '20년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해 정산을 통해 사업비 잔액 및 이자액이 발생하면 반납하여야 하는데도

- 국비 잔액 11억 302만원 및 이자액 2,990만원, 도비 잔액 1,809만원 및 이자액 204만원 등 **23건, 11억 5,305만원**을 **반납**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 그 결과 **세입**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누락**하여 해양수산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사업참여 기회를 박탈**시키고 **어업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사업비 등 반납업무를 소홀히 한 前·現 담당 **2명**에게 "**훈계요구**"

☞ 국비 잔액(11억 302만원) 및 이자액(2,990만원)은 해수부에 반납, 도비 잔액(1,809만원) 및 이자액(204만원)은 전남도에 반납하도록 "**시정요구**"

13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등 부적정

□ 위 군(지도읍 등 13개 읍면)은 '18년부터 '21년까지 농업법인 등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청**하면 **현장확인** 등을 거쳐 **증명서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에 농취증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에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이 확인되면 농지 소유권 **취득 전** 법인 등기사항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도읍 등 8개 읍면)은 '19년부터 '21년까지 농취증을 발급 받은 **12개 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45**필지, 72,635㎡**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법인**의 **등기**를 **미확인**

- 그로 인하여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우려가 있는 법인에 농지를 취득하게 하는 결과 초래

○ 「농지법」 제7조에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으로 규정

- 그런데 위 군(압해읍 등 3개 읍면)은 '19년부터 '21년까지 농취증 발급 당시 **세대원 합산 면적**을 확인하지 않아 경기도 등에 거주하는 **19세대**에 **농지 소유면적**이 **1천㎡**를 **초과**하는데도 **37필지, 29,124㎡** 발급

- 그로 인하여 취득할 수 없는 자에게 농지가 **과다 취득**하게 되어 **농지 이용 효율**을 **저하** 초래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에 **농지**가 **아닌 토지** 또는 **불법 형질 변경** 등으로 자격증명 발급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미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그런데 위 군(지도읍 등 12개 읍면)는 '10년부터 '20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한 농지가 불법 형질 변경으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하여야 하는데 농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381필지, 464,767㎡**를 **반려 처분**

- 그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한 **불법 형질 변경**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농지 소유권**을 **등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

☞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등기 사항을 변경, 휴경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후 농지 처분의무통지를 하도록 "**시정요구**"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주의요구"**

⑭ 신안 ○○도 ○○○○ 보수정비 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문화관광과)은 ’20. 11. 3.부터 ’21. 5. 1.까지 전남도(문화자원과)에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승인받은 **“신안 ○○도 ○○○○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

※ 공사개요 : 1) 사업비 : 2억 118만원, 2) 사업규모 : L=370m, 3) 사업내용 : U형개거, 흄관 부설 등

1. 문화재 수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 「문화재수리법」 제25조에 문화재 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 수리업자**는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50% 미만**으로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문화재청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이 **감사원 지적사항임을 명시**하면서 **「2018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수립·통지**

○ 한편 신안군은 **위 공사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종합문화재수리업**으로 **제한**하여 입찰공고 후 **적격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면서 **문화재수리 실적**만을 **공사 실적**으로 **인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신안 ○○도 ○○○○ 보수정비 사업”**을 도급받은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전문 문화재 수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일반 전문건설업자**와 ’20. 00. 00.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 ’20. 00. 00. **문화재수리법**을 **검토**하지도 **않고 지침**에 **위반**되게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여 **무자격자**가 문화재를 **보수**한 결과를 초래

2. 공사감독자 및 준공검사자 업무 처리 부적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5조 등에 **공사감독자**는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관광과)은 ’21. 12. 1. 감사일 현재 공사감독자가 작성·비치해야 할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이 **없어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조립**과 같이 **중요 공정**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관광과)은 ’21. 12. 1. 감사일 현재 거푸집 조립과 사토장 정비 등 **시공 소홀** 및 **미시공** 등으로 **301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도 **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준공검사가 관련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사업의 **미시공 및 시공소홀 부분**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 없이** 검사가 완료되어 **부실 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하도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사업담당자 및 계약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 과다 집행한 공사비 301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15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섬발전진흥과 등 8개 과)는 ’18년 11월부터 ’21년 10월까지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361건을 추진하여 준공 또는 공사 중에 있음

○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등에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통상 500m 이내) 안**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안**에서 하는 **건설공사**는 **시행 전**에 **문화재보존 영향**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섬발전진흥과)은 ’19. 00. 00. 착공한 ’20. 00. 00. 착공한 ○○○○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인데도 **문화재보전 영향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등에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도 지정 문화재**는 **도지사**에게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섬발전진흥과)은 ’19. 00. 00. 착공한 ○○**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등 **2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여 **준공**

○ 그로 인하여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게 되었고, 법**을 **위반**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등의 **주변**의 **현상**을 **변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담당자 4명**에게 **“훈계요구”**

16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부적정

□ 위 군(안전건설과 등 11개 부서)은 '18년 11월부터 '21년 10월까지 5억원 이상 **110개 사업장**에 **품질관리계획 승인, 시험실·기술인 배치 업무**를 **추진**

1. 품질관리계획 업무 처리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는 **적정한 시험실·기술인 배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 등 9개 부서)은 '21. 12. 1. 감사일 현재 **97개 사업장**에서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을 **미승인**하고, **82개 사업장**에 부적합한 **시험실**을 **설치**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등에 **초급품질관리** 대상사업의 **품질관리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금액**을 **별도 계상**하지 **않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섬발전진흥과 등 2개 부서)은 '21. 12. 1. 감사일 현재 **○○항 ○○○○300사업** 등 3건에서 **품질관리비용을 과다 반영**하여 **9,053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하여 **예산 낭비 초래**

○ 그로 인하여 **부실사고**를 위해 **수립**하여야 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공사**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2. 안전관리계획 업무 처리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98조 등에 **항타·항발기 등**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와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 등 9개 부서)은 '21. 12. 1. 감사일 현재 **96개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검토하지않고 미승인**

- 그로 인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초래

☞ 건설공사 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과장 2명**에게 **"훈계요구"**
☞ 관련부서에 과다 반영된 품질관리비 **9,053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3. 모범사례

1 퍼플섬, 수선화 섬 등 작은 섬 관광 명소화 사업

섬 고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주민 역량강화 및 의식개선을 통해 지역 관광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 추진배경

○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섬 개발전략 구상과 관광 명소화 추진

○ 작은 섬의 자연환경과 특수성을 이용하여 사계절 꽃피는 섬 조성을 위해 수선화 등 꽃 단지 조성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

○ 작은 섬에 관행 농업 대신 수선화 등을 활용 신규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주민주도형 지역 축제를 개최하여 6차 산업 실현 등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가고 싶은 섬 선정 후 5년간

- 사업대상 : 퍼플섬('15년), 기점소악도('17년), 우이도('19년), 선도('20년), 옥도('22년)
- 대상화초 : 퍼플섬(라벤더), 기점소악도(라일락), 우이도(수국), 선도(수선화), 옥도(무궁화)

○ 사 업 비 : 220억원(도비 50%, 군비 50%)

- 퍼플섬 40억원 / 기점소악 40억원 / 우이도 40억원 / 선도 50억원 / 옥도 50억원

○ 사업내용

- H/W : 마을경관(산책로, 마을정비 등), 관광시설(복합센터, 게스트하우스, 카페 등)
- S/W : 주민 역량강화, 마을기업 육성, 관광서비스 개선, 홍보마케팅 등

□ 추진실적 및 성과

○ 퍼플섬 반월박지도 추진 실적('15~'21) / 4,343백만원

- 기반조성사업 : 게스트하우스, 마을식당, 마을카페 조성
- 마을경관사업 : 퍼플교 및 지붕채색, 등산로 및 산책로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등

○ 수선화의 섬 선도 추진실적('20~'21) / 1,670백만원

- 기반조성사업 : 다목적센터 리모델링, 마을카페 조성
- 마을경관사업 : 수선화 특화경관 조성, 지붕채색, 등산로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수선화축제 개최.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등

○ 가고 싶은 퍼플섬(반월박지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급부상

-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퍼플섬을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
-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
- 미국 CNN과 폭스뉴스(Fox News), 독일 위성TV 프로지벤(Prosieben), 홍콩 여행잡지 유 매거진(U magazine), 영국 로이터(Reuter) 등 보도
-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방문 : 30여개 자치단체 공무원 등

퍼플섬(반월·박지도)	수선화섬(선도)
	
	

□ 기대효과

○ 가고 싶은 섬 이전 대비 관광객 폭발적으로 증가

- 증가추이 : '18년) 3.5만천명→ '19년) 30.6 → '20년) 24.2 → '21년) 29.5

○ 관광·숙박 등 관광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음식점 등 상권 활성화

- '21년 매출내역 : 453백만원(숙박 53, 식당 등 255, 농업소득 125, 체험 20)

2 친환경 자연정화 생태습지 조성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처리 지역 생태습지 조성으로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과 더불어 세계 자연문화유산인 갯벌생태계 오염원 제거

□ 추진배경

○ 세계자연문화유산(신안갯벌),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전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지역으로

○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로 인해 공공수역의 수질저하 방지 와 생태환경 개선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 사 업 명 : 친환경 자연정화 생태습지 시범사업

○ 사 업 량 : 친환경 자연정화 생태습지 조성(563.4평)

○ 총사업비 : 328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별도의 처리시설이 없어 갯벌로 방류되고 있는 생활오수 및 비점오염원에 따른 수질 악화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연정화 생태습지 조성

□ 추진실적

○ 2019년 도초 한발마을 자연정화 생태습지 조성사업 추진

○ 2020년 도초 한발마을 자연정화 생태습지 조성사업 완료

- 위　　치 : 도초면 만년리 835-1 일원

- 사 업 량 : 자연정화 생태습지조성 1,862㎡(563.4평)

- 사업내용

  ▸ 기반시설 구축, 습지조성, 조경식재, 유지관리 등

  ▸ 유용미생물(EM) 투입 장치 설치를 통한 수질개선

○ 2021. 09. 08 : 신안군 비점오염 저감(생태습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160백만원)

○ 2022. 03월 : 2023년 신규사업 신청 후 계속 추진

□ 기대효과

○ 생활오수 및 비점오염원 정화를 통해 신안군 생태계(갯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및 공공수역 수질 보전

○ 마을하수처리시설 확충 대비 예산절감 효과가 크며 마을과 인접한 수변공원 조성효과 등 경관개선, 생태체험공간 활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 소규모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조성되어 마을주변 미처리 하수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개선 효과가 커 주민 호응 및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수질개선 효과로는 BOD 2배, COD 2배, SS 2배, T-N 6배, T-P 3배 제거로 수질개선에도 큰 효과를 거두었음

□ 사진대지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언론보도(2020. 10. 19.)</td>
<td>언론보도(2021. 11. 07.)</td>
</tr>
</table>

4. 처분요구서

목 차

① ○○○ ○○학교 민간위탁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 34

② 신안군 ○○재단 회계사무 처리 부적정(개선) ····· 42

③ 5급 승진임용 등 인사 업무 처리 부적정(기관경고, 징계, 훈계) ····· 45

④ 보직관리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직위 부여(기관경고) ····· 64

⑤ 5급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 업무 처리 부적정(징계) ····· 69

⑥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72

⑦ 경관식재용 물품 구매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75

⑧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주의) ····· 77

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업무 등 처리 부적정(훈계) ····· 82

⑩ ○○○○○○○파크 초화류 식재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88

⑪ 무허가 축사 농업경영체 보조금 지원 등 사후관리 부적정(훈계) ····· 93

⑫ 경관보전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부적정(시정, 주의) ····· 95

⑬ 전통문화 전수교육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98

⑭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 101

⑮ 관광용 자전거 등 물품관리 부적정(시정, 통보) ····· 105

⑯ 신안 ○○○○박물관 매입 및 관리 부적정(시정, 주의) ····· 111

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미통보(시정) ····· 114

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업무 추진 부적정(훈계, 개선) ····· 117

⑲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부적정(시정) ····· 120

⑳ 용역 적격심사 등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징계, 훈계) ····· 123

㉑ 기성타절 등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기관경고) ····· 133

㉒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 139

㉓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 150

㉔ 해양수산사업 국고보조금 등 반납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 160

㉕ 신안군○○회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훈계, 시정, 주의) ····· 165

㉖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등 부적정(시정, 주의) ····· 170

㉗ 농업·기술지도 분야 민간보조사업 등 추진 부적정(주의, 통보) ····· 176

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 183

㉙ 신안 ○○도 ○○○○ 보수정비 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시정) ····· 190

㉚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 196

㉛ ○○면 직원숙소 신축공사 및 3급 관사 관리 부적정(훈계, 시정) ····· 200

㉜ 지방도 도로연결 허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 206

㉝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추진 부적정(훈계, 시정) ····· 210

㉞「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 부적정(훈계, 시정) ····· 216

㉟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 221

㊱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부적정(훈계, 시정) ····· 229

전 라 남 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 ○○학교 민간위탁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교육복지과)

훈 계 대 상 자　신안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9. 00. 00. (사)○○○(이사장 ○○○)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1] 하여 ○○○ ○○학교[2]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표 1] “○○○ ○○학교 민간위탁금 지원 현황”과 같이 1,092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관리하고 있다.

[표 1] ○○○ ○○학교 민간위탁금 지원 현황(2019～2021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지원현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민간위탁금	1,092	452	300	340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 ○○○○는 2019.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과에서 ○○○ ○○학교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및 관리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민간위탁 사전 절차 미이행

1) 위·수탁기간 : 2019. 3. 27.～2024. 3. 26.(5년간)

2) ○○○ ○○학교란 신안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행복한 공동체(삶)을 위하여 신안군이 설립한 스스로 선택하는 인생설계형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공간)을 말하며, 신안군 ○○면 ○○○길 000에 위치하고 있음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신안군 ○○○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 ○○학교 조례”라고 한다) 제6조에 따르면 ○○○ ○○학교는 군수가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도 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신안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법제처 의견제시[3] 사례에 따르면 민간 위탁 시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더라도 민간위탁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 민간위탁 대상자와 수탁금액 등 해당 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질 수 있을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거나,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 또는 수탁자를 확정적으로 규정[4]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 ○○학교 조례」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민간위탁 여부 또는 수탁자를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섬마을 인생학교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신안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여야 했다.

---

3) 안건번호 의견 14-0045(2014. 2. 27.), 민간위탁 시 개별 조례에 지방의회 동의 규정이 없으나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안건번호 의견 15-0052(2015. 3. 13.),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관련)

4) ‘~에 관한 업무는 OOO에 위탁한다’ 등의 형식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교육복지과)은 2019. 00. 00. ○○○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신안군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와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로 인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자격없는 자를 민간위탁 운영자로 선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 ○○학교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되, 「신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신안군 평생교육 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군수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류가 발생한 경우, 현저한 이유로 수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이 조례와 계약 조건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신안군은 2019. 00. 00. 신안군 누리집에 공고 제2019-000호로 ○○○ ○○학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하면서 위탁운영 신청자는 시설운영 상근인력 현황(이력서, 자격증, 단 법인 회원만 인정), 평생학교 전문인력 현황(이력서, 자격증, 단 법인 회원만 인정), ○○○ ○○학교 프로그램 연구·교육 등 실적, ○○○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유현황, ○○○ ○○학교 운영계획서 등의 서류[5]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신안군 평생교육 협의회에서 심사기준[6]에 따

라 심사하며, 위탁운영자 신청자가 1개 법인일 경우에는 1차 서류심사와 프리젠테이션(10분 이내)을 통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신안군 평생교육 협의회의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공고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 ○○학교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문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자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에 따라 운영능력, 상근인력, 전문인력, 사업실적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교육복지과)은 2019. 00. 00. ○○○ ○○학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위탁운영 신청자인 (사)○○○가 평생학교 전문인력 현황도 제출하지 않았고, [표 2] “(사)○○○가 허위로 제출한 인생학교 프로그램 연구실적 현황”과 같이 ㈜○○○○○가 수행한 ○○도교육청이 발주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와 ○○군이 발주한 ○○○ ○○학교 설립에 대한 연구 등 2건을 (사)○○○의 프로그램 연구실적으로 허위로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2021. 00. 00. 1차 서류심사에서 통과시켜 2021. 00. 00. 신안군 평생교육 협의회의 2차 심사[7]를 거쳐 (사)○○○를 부당하게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였다.

[표 2] (사)○○○가 허위로 제출한 인생학교 프로그램 연구실적 현황

연구용역명	발주기관	계약기간	연구참여인원(명)	실제 용역업체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도교육청	2015.12.	6	㈜○○○○○
○○○ ○○학교 설립에 대한 연구	○○군	2019.02.	3	㈜○○○○○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5) (제출서류) 수탁운영신청서, 법인현황,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사용 인감계 및 서약서, 시설운영 상근인력 현황(이력서, 자격증, 단 법인 회원만 인정), 평생학교 전문인력 현황(이력서, 자격증, 단 법인 회원만 인정), ○○○ ○○학교 프로그램 연구·교육 등 실적, ○○○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유현황, ○○○ ○○학교 운영계획서, 기타(법인 및 종사자 표창장, 자격, 경력증명사본 등)

6) (심사기준) ○○○ ○○학교 운영능력, 상근인력, 평생교육 전문인력, 평생교육 사업실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유현황 등

7) 검토자 : 신안군 교육복지과 지방○○7급 ○○○

또한 2019. 00. 00. 실시하는 ○○○ ○○학교 위탁운영 제안발표와 2019. 00. 0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1985. 00. 00.)은 위임장을 제출한 2019. 00월에는 다른 회사[8]의 직원이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안발표 및 계약사항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가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하기 위한 수탁자로 선정되어 행정의 신뢰도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민간위탁사업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 ○○학교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군수가 ○○학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회계연도 잉여이익의 사용계획, 인생학교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이용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운영상황 및 장부 등 그 밖의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신안군 ○○○ ○○학교 위·수탁 계약서」(이하 "위·수탁 계약서"라고

8) 세무회계과-0000(2019. 00. 00.), ○○○형 ○○○ ○○학교 설립 프로그램 개발용역 계약 건 용역착수계
- 계약상대자 : ㈜○○○○○○ / 계약금액 : 10,450,000원
- 연구보조원 : ○○○(1990.00.00.), ○○○(1985.00.00.), ○○○(1991.00.00.)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사)○○○는 위탁기간 중 관계법령 및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고, 신안군수와 협의 또는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사)○○○는 ○○○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일지, 시설사용료 징수원부, 시설사용신청서 및 승낙 관련서류, ○○학교 일지(참여자 명단, 교육내용 등의 내용 포함), ○○학교 교사 및 직원 명부,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 집기 및 물품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수탁 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사)○○○는 신안군수에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을 상세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관련 조례 및 「위·수탁 계약서」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제출받아야 하고,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인생학교 이용자의 이용료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에게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검사하여야 하고, 운영일지, 시설사용료 징수원부,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 등이 관리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교육복지과)은 ○○○ ○○학교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 체결 이후 2019. 00. 00. 수탁자인 (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9]한 후 2019. 6. 25.부터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으면서 임의적으로 연간 사업계획, 이용료 등을 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 ○○학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면서 수탁자인 (사)○○○에게 [표 3] “○○○ ○○학교 이용료 승인 현황”과 같이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사)○○○가 2019. 4월부터 2021. 10월까지 [별표] “○○○ ○○학교 이용료 부당 감액 명세”와 같이 ○○○ 등 73명의 이용료를

9) 신안군 교육복지과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사)○○○로부터 접수된 공문은 확인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위원회 명단만 관리 중임
- (위원장) ○○○ (부위원장) ○○○ (위원) ○○○, ○○○, ○○○, ○○○, ○○○ (서기) ○○○

전부 감액하여 징수하지 않는 등 81명의 이용료 7,240,000원을 승인내용과 다르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징수하지 않았는데도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다.

[표 3] ○○○ ○○학교 이용료 승인 현황

구분	이용료 징수에 대한 군 승인내용	군 승인일
2019년	(3박4일, 4박5일, 9박10일, 29박30일) - 이용료는 징수하되 확정 이용료는 없음	2019.05.03.[10]
2020년	(2박3일) 90,000원 (4박5일) 150,000원 (7박8일) 240,000원 (13박14일) 420,000원 (기관 맞춤형, 2박3일) 90,000원	2020.02.03.[11]
2021년	(2박3일) 100,000원 (4박5일) 150,000원 (5박6일) 190,000원 (7박8일) 250,000원 (고등학생, 2박3일) 45,000원 (지역민, 2박3일) 45,000원 (소규모, 5박6일) 190,000원	2021.01.27.[12]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수탁자인 (사)○○○가 운영일지, 시설사용료 징수원부, 시설사용신청서 및 승낙 관련서류, ○○학교 일지(참여자 명단, 교육내용 등의 내용 포함), ○○학교 교사 및 직원 명부,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 집기 및 물품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지 않고 있는데도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설이용료가 수탁자 임의대로 징수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신안군 ○○○ ○○학교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를 훈계하고**(훈계)**

10) 교육복지과-00000(2019. 00. 00). 2019년 ○○○ ○○학교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통보

11) 교육복지과-0000(2020. 00. 00.), 2020년 ○○○ ○○학교 사업계획서 승인 및 민간위탁금(1차) 교부신청 안내

12) 교육복지과-0000(2021. 00. 00.), 2021년 ○○○ ○○학교 사업계획서 승인 및 민간위탁금(1차) 교부신청 안내

② 앞으로 「○○○ ○○학교 조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연간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신안군수가 승인한 사업계획대로 민간위탁 사업이 운영되도록 하며,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을 비치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개 선 요 구

제　　목　신안군 ○○재단 회계사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교육복지과)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2008. 00. 00.「신안군 ○○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08. 00. 00. 신안군 ○○재단(이사장 신안군수)을 설립하였으며, 2021. 12. 1. 감사일 현재 [표] “신안군 ○○재단 재산 보유 현황”과 같이 6,852,608,897원을 운용하고 있다.

[표] 신안군 ○○재단 재산 보유 현황(2021.12.1.현재)

(단위 : 원)

구분	계좌번호(증권번호)	보유액	비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함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이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등 그 밖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을 말하고,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르면「지방재정법」 및「지방회계법」 등 지

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신안군 ○○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제10조에 따르면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신안군 ○○재단의 세입·세출 등 회계 업무의 투명성과 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책임한계 등을 위하여 회계관직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등 회계관직을 지정한 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고, 재정보증을 한 후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교육복지과)은 2015. 00. 00.[1]부터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신안군 ○○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정관 등에 회계관직 지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신안군○○재단의 임원[2] 중에서 상임이사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담당부서의 ○○○○담당이 세입·출 통장과 세입·출 직인[3]을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회계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등 회계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회계관직을 지정받지 않은 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회계사고로 인하여 변상처분 등에 대한 예견치

---

1) 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 ○○○○과(2015. 00. 00.), (재)신안군○○재단 정관 변경 허가, 2015. 00. 00. 변경등기 완료일

2) 재단법인 신안군○○재단 정관 제18조부터 제25조
- 2021. 12. 1. 감사일 현재 (이사장) ○○○ (상임이사) ○○○ (이사) ○○○, ○○○, ○○○, ○○○, ○○○, ○○○ (감사) ○○○, ○○○

3) 직인명 : 신안군○○재단인

않은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를 발생시켰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앞으로 신안군 ○○재단에 회계관직을 지정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회계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제도상 개선)**

전 라 남 도

기관경고 및 징계·훈계요구

제 목 5급 승진임용 등 인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행정지원과)

징 계 대 상 자 ① 신안군 ○○○○과 지방○○사무관 ○○○

② 신안군 ○○읍 지방○○○○주사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① 신안군 ○○○○국 지방○○관 ○○○

② 신안군 ○○면 지방○○사무관 ○○○

③ 신안군 ○○○○과 지방○○사무관 ○○○

④ 신안군 ○○○○과 지방○○주사 ○○○

⑤ 신안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8. 1월부터 2021. 8월까지 소속 6급 공무원 중에서 67명을 5급

(지도관 포함) 승진대상자로 선발하여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후 5급(지도관 포함)으로 직급 승진을 시키고 있다.

또한 2018. 11월부터 2021. 10월까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9. 2. 15.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받은 2018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의 기념품 판매수입금 2,695,000원을 횡령한 ○○직 ○○○의 중징계 요구 건에 대하여 2019. 00. 00. 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3월로 의결한 후 징계처분하였다.

지방○○사무관 ○○○은 2019.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1]으로, 지방○○○○주사 ○○○은 2018.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과에서 ○○업무담당자로, 지방○○관 ○○○은 2020.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지방○○사무관 ○○○은 2019.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사무관 ○○○는 2021.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지방○○주사 ○○○은 2021.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으로, 지방○○주사보 ○○○은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와 다른 승진임용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1) 신안군은 6급 직위자를 '담당'으로 보임 중. 담당은 타 시군의 6급 팀장과 같은 직위

또한「신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0%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소속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동일한 날짜에 승진 의결된 5급 승진자를 같은 기수의 승진자 교육에 보내야 하고, 승진대상자별 승진후보자명부상 성적(70%)과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30%)을 합산하여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결원이 있으면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대로 임용하여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기관 및 개인의 사정 등에 따라 5급 승진자 교육을 나누어 보내게 될 경우에도 동일한 날짜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 된 대상자들의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이후 '통합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대로 임용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행정지원과)은 2018. 1월부터 2021.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67명 중 [표 1]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나누어 보내고 우선 승진한 현황"과 같이 지방○○6급 ○○○ 등 32명에 대하여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승진대상자 의결일 순서대로 수료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임의대로 부당하게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5급 승진임용은 인사위원회 5급 승진의결 횟수별로 승진의결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상 성적(70%)과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30%)을 합산한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하여야 하는데도 인사위원회의 5급 승진의결 횟수가 아닌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순서대로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를 작성한 후 부당하게 그 순위에 따라 5급으로 임용하였다.

[표 1]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나누어 보내고 우선 승진한 현황(2018.1월~2021.8월)

연번	승진 심사일	승진 직급	승진전 직급	성명	합산성적			5급 기본교육과정 수료기수	정당한 5급승진 임용명부 순위	승진 임용일	선순위보다 승진을 먼저한 기간
					합산 점수	근무 성적	교육 점수				
1	2018. 01.05.	○○ 5급	○○6급	○○○	97.96	69.83	28.13	21년 제 3기	1	2021.00.00.	
2				○○○	96.28	68.08	28.20	19년 제 6기	2	2019.00.00.	1년 10개월 17일
3	2018. 08.17.	○○ 5급	○○6급	○○○	97.78	69.75	28.03	18년 제11기	1	2018.00.00.	
4				○○○	93.93	66.11	27.82	18년 제10기	2	2018.00.00.	14일
5		○○ 5급	○○6급	○○○○	96.06	67.99	28.07	18년 제11기	1	2018.00.00.	
6				○○○	95.84	68.52	27.32	18년 제10기	2	2018.00.00.	
7				○○○	94.47	66.5	27.97	18년 제10기	3	2018.00.00.	
8				○○○	93.73	65.75	27.98	18년 제11기	4	2018.00.00.	
9			○○6급	○○○	93.21	65.45	27.76	18년 제10기	5	2018.00.00.	14일
10	2018. 12.26.	○○ 5급	○○6급	○○○	94.19	65.89	28.3	19년 제 4기	1	2019.00.00.	
11				○○○	92.71	64.61	28.1	19년 제 2기	2	2019.00.00.	4개월
12		○○○○ 5급	○○○○ 6급	○○○	98.14	70	28.14	21년 제 2기	1	2021.00.00.	
13		○○ 5급	○○6급	○○○	96.87	68.78	28.09	19년 제 6기	1	2019.00.00.	
14				○○○	96.44	68.43	28.01	19년 제 4기	2	2019.00.00.	3개월 9일
15	2019. 06.25.	○○ 5급	○○6급	○○○	97.56	68.29	29.27	19년 제12기	1	2020.00.00.	
16				○○○	95.55	67.21	28.34	19년 제 8기	2	2019.00.00.	
17				○○○	95.04	66.95	28.09	19년 제10기	3	2020.00.00.	
18				○○○	94.85	66.79	28.06	19년 제 8기	4	2019.00.00.	8개월 10일
19				○○○	93.98	65.64	28.34	19년 제10기	5	2020.00.00.	
20			○○6급	○○○	92.85	65.02	27.83	19년 제10기	6	2020.00.00.	
21			○○6급	○○○	92.56	64.56	28	19년 제 9기	7	2020.00.00.	6개월
22	2019. 12.23.	○○ 5급	○○6급	○○○	96.89	68.25	28.64	20년 제 4기	1	미승진	
23				○○○	96.56	68.26	28.3	20년 제 1기	2	2020.00.00.	
24				○○○	94.25	65.79	28.46	20년 제 1기	3	2020.00.00.	
25	2020. 12.24.	○○ 5급	○○6급	○○○	96.89	68.26	28.63	21년 제 3기	1	2021.00.00.	
26				○○○	96.62	67.73	28.89	21년 제 3기	2	2021.00.00.	
27				○○○	96.32	68.43	27.89	21년 제 3기	3	2021.00.00.	
28				○○	94.98	66.46	28.52	21년 제 2기	4	2021.00.00.	5개월 7일
29	2021. 08.05.	○○ 5급	○○6급	○○○	97.23	69.27	27.96	21년 제12기	1	미승진	
30			○○6급	○○○	96.78	68.32	28.46	21년 제11기	2		
31			○○6급	○○○	96.72	68.59	28.13	21년 제11기	3		
32			○○6급	○○○	96.59	68.31	28.28	21년 제10기	4	2021.00.00.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2018. 1. 5.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은 5

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선순위자인 ○○○보다 1년 10개월 17일 먼저, 2018. 8. 17.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과 지방○○6급 ○○○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선순위자인 ○○○과 ○○○○보다 각각 14일 먼저, 2018. 12. 26.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과 지방○○6급 ○○○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선순위자인 ○○○과 ○○○보다 4개월과 3개월 9일 먼저, 2019. 6. 25.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과 ○○○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선순위자인 ○○○보다 8개월 10일과 6개월 먼저, 2020. 12. 24.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선순위자인 ○○○보다 5개월 7일 먼저 승진하는 등 5급 승진의결 횟수별 승진임용순위명부 후순위자가 선순위자 보다 짧게는 14일에서 길게는 1년 10개월 17일까지 부당하게 먼저 승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2019. 12. 23.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는 2020. 5. 22.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이후 승진임용순위명부상 1순위이었는데도 결원발생에 따른 2020. 00. 00. 5급 승진인사에서 직급 승진을 하지 못하여 이후 2020. 00. 00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가 통보된 이후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5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2021. 8. 5.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상 4순위였는데도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1순위보다 먼저 2021. 10. 12. 승진되었고,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1순위인 지방○○6급 ○○○은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5급으로 승진되지 못하는 등 인사법령을 위반하면서 5급 승진임용을 임의대로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201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부당이행 및 동일사례 재발생

전라남도는 2018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감사관-0000(2019. 2. 15.)로 통보하면서 신안군수에게 2018. 1. 5.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과 ○○○에 대한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 미실시 건과 관련하여 신속히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를 하였다.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고,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2019. 2. 15.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받은 2018. 1. 5.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과 ○○○에 대한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 미실시 건과 관련하여 신속히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전라남도에 통보하여야 했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행정지원과)은 지방○○6급 ○○○에 대하여 2018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2019. 2. 15.이후부터 2021. 1월까지 총 8회[1]의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지 않다가 2021. 2. 22.에서야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수료하도록 하였고, 이후 5급 승진대상자 의결일인 2018. 1. 5.부터 3년 7개월 4일이 경과한 2021. 00. 00.에서야 5급으로 승진임용하였다.

또한 2019. 2. 15. 2018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2018. 12. 26.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을 2019. 1월부터 2020. 12월까지 총 23회[2]의 5급 기본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지 않다가 2021. 1. 25.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수료하도록 하였고, 이후 5급 승진대상자 의결일인 2018. 12. 26.부터 2년 2개월 4일이 경과한 2021. 00. 00.에서야 5급으로 승진임용하였다.

---

1) 5급 승진리더 과정 : 2019년 제4기(2019. 3. 18~4. 26.), 2019년 제5기(2019. 4. 22.~5. 31.), 2019년 제6기(2019. 5. 13.~6.21.), 2020년 제1기(2020. 1. 6.~2. 14.), 2020년 제2기(2020. 1. 28.~3. 6.), 2020년 제3기(2020. 4. 20.~5. 15.), 2021년 제1기(2021. 1. 19.~2. 19.), 2021년 제2기(2021. 1. 25.~2. 26.)

2) 5급 승진리더 과정 : 2019. 2. 15.~12월 기간 중 9회(제4기~제12기), 2020년(13회), 2021년 제1기(2021. 1. 18.~2.19./전남도로부터 2020. 12. 23.까지 명단제출 요청 받음)

그로 인하여 2018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자의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 미실시 건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이 2년 7일이 지난 2021. 00. 00.에서야 이행되었고, 지적된 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2018년 정기종합감사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되풀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제5항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고,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제32조 제8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수”(20%), “우”(40%), “양”(30%), “가”(10%)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되,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되 제출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편 신안군은 6급 행정직렬, 6급 세무직렬, 6급 전산직렬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한 후 순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6급 행정·세무·전산직렬에 대해서는 평정단위(부서)별로 통합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하여 그 순위를 정한 서열 명부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순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근무성적평정순위를 결정하도록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행정지원과)은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작성하고 있으므로 근무성적평정도 평정단위(부서)별로 통합·작성하여야 하는데도 2019. 4월부터 2020. 4월까지 총 3회에 걸친 근무성적평정에서 평정단위(부서)별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을 통합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아니하고 평정단위(부서)별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 각각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게 한 후 서열명부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제출된 서열명부를 기초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의 통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6급 세무직렬과 6급 전산직렬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임의대로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의 통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표 2] “부당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의 근무성적평정 인원 현황”과 같이 2019. 4월 근무성적평정 시에는 94명, 2019. 10월 근무성적평정 시에는 88명, 2020. 4월 근무성적평정 시에는 90명이 평정단위별 확인자인 부서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실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부당한 6급 행정·세무·전산직렬 통합 근무성적평정 인원 현황(2019.4월~2020.4월)

(단위 : 명)

구분	계	6급 행정직렬	6급 세무직렬	6급 전산직렬
2019. 4월 근무성적평정	94	75	13	6
2019. 10월 근무성적평정	88	69	13	6
2020. 4월 근무성적평정	90	69	15	6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5. 5급 승진예정인원 과다 산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 제2항에 따르면 5급 승진예정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승진예정인원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Ⅵ 승진임용 5.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 산정 편에 따르면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 산정은 “승진예정인원=결원+퇴직인원 - 신규임용예정인원”의 식으로 구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승진후보작 승진후보자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인원만큼 결원에서 차감하며 퇴직인원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정년퇴직 예정인원(공로연수 확정자 포함), 명예퇴직 예정인원 및 기타 최근 3년 평균 면직인원(의원면직, 직권면직, 파면·해임 및 기타 당연퇴직 등 포함)으로 하되 퇴직인원으로 포함한 공로연수자는 퇴직할 때 재산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5급 승진예정인원은「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부당산정에 따른 과다 산정이 안되도록 인사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행정지원과)은 2018. 12월부터 2020.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5급 승진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승진심사 시 기존 승진후보자가 남아있는 경우를 결원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등 승진대상자 산정을 잘못하여 [표 3] “5급 승진대상자 과다산정 현황”과 같이 2018. 00. 00.에 6명, 2019. 00. 00.에 11명, 2019. 00. 00.에 1명, 2020. 00. 00.에 4명 등 총 22명을 5급 승진대상 요인이 발생하는 시점보다 부당하게 먼저 5급 승진대상자로 선발하였다.

[표 3] 5급 승진대상자 과다산정 현황(2019.12월~2020.12월)

(단위 : 명)

승진의결일	5급 정원 (가)	5급 현원 (나)	기 결원 (다=가-나)	추가요인 (라)	감소요인 (마)	승진가능인원 (바=다+라-마)	승진대상자 선발(사)	과다산정인원 (사-바)
2018.00.00.	43	43		2	2		6	**6**
2019.00.00.	44	44		2	4	-2	11	**11**[3]
2019.00.00.	47	46	1	10	6	5	6	**1**
2020.00.00.	47	48	-1	9	5	3	7	**4**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승진의결로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저해하였

3) 당초 2명이 과원인 상태에서 11명을 추가로 선발하였기에 11명 과다산정으로 계산

고, 나머지 직원들이 결원이 발생하는 정당한 시점에 5급 승진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6. 공금을 횡령한 공무직에 대한 부당한 징계 감경

가. 관계법령

「신안군 공무직 관리 규정」 제49조에 따르면 공무직의 중징계는 해고와 정직으로, 경징계는 감봉, 견책, 경고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56조의3에 따르면 징계대상자가 표창을 받았거나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징계를 경감할 수 있으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및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및 성폭력범죄에 따른 공무직의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부서의 징계요구양정에 대하여 감경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행정지원과)은 2019. 00. 00. 징계요구부서(기획홍보담당관실)로부터 ○○○○○○○의 기념품 판매수입금 2,695,000원을 횡령한 ○○직 ○○○의 중징계 요구에 대하여 2019. 00. 00. 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공금 횡령은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데도 군인사위원회 위원이 감경 가능여부를 질의하자 감경할 수 있다고 답변하여 중징계 사항이 경징계인 감봉 3월로 부당하게 감경 의결되도록 하였다.

그로 인하여 공금의 횡령·유용 및 성폭력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한 「신안군 공무직 관리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공무직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가 이루어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7.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 ○○○의 경우

○○○은 2019.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과에서 ○○업무를 총

괄하는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1)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와 다른 승진임용

○○○은 2018. 1월부터 2019.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12명에 대하여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승진대상자 의결일 순서대로 수료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9. 7월부터 2020. 12월까지 [표 4]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나누어 보내고 우선 승진한 현황”과 같이 임의대로 부당하게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였다.

또한 5급 승진임용은 인사위원회 5급 승진의결 횟수별로 승진의결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상 성적(70%)과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30%)을 합산한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하여야 하는데도 인사위원회의 5급 승진의결 횟수가 아닌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순서대로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부당하게 그 순위에 따라 5급으로 임용하였다.

[표 4]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나누어 보내고 우선 승진한 현황(2019.7월~2020.12월)

연번	승진 심사일	승진 직급	승진전 직급	성명	합산성적			5급 기본교육과정 수료기수	정당한 5급승진 임용명부 순위	승진 임용일	선순위보다 승진을 먼저한 기간
					합산 점수	근무 성적	교육 점수				
1	2018. 01.05.	○○ 5급	○○6급	○○○	97.96	69.83	28.13	21년 제 3기	1	2021.00.00.	
2	2018. 12.26.	○○○○ 5급	○○○○ 6급	○○○	98.14	70	28.14	21년 제 2기	1	2021.00.00.	
3	2019. 06.25.	○○ 5급	○○6급	○○○	97.56	68.29	29.27	19년 제12기	1	2020.00.00.	
4				○○○	95.55	67.21	28.34	19년 제 8기	2	2019.00.00.	
5				○○○	95.04	66.95	28.09	19년 제10기	3	2020.00.00.	
6				○○○	94.85	66.79	28.06	19년 제 8기	4	2019.00.00.	8개월 10일
7				○○○	93.98	65.64	28.34	19년 제10기	5	2020.00.00.	
8			○○6급	○○○	92.85	65.02	27.83	19년 제10기	6	2020.00.00.	
9			○○6급	○○○	92.56	64.56	28	19년 제 9기	7	2020.00.00.	6개월
10	2019. 12.23.	○○ 5급	○○6급	○○○	96.89	68.25	28.64	20년 제 4기	1	미승진	
11				○○○	96.56	68.26	28.3	20년 제 1기	2	2020.00.00.	
12				○○○	94.25	65.79	28.46	20년 제 1기	3	2020.00.00.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2019. 6. 25.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행정6급 ○○○과

○○○에 대하여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선순위자인 ○○○보다 8개월 10일과 6개월 먼저 승진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2019. 12. 23.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에 대하여 2020. 5. 22.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이후 승진임용순위명부상 1순위이었는데도 결원발생에 따른 2020. 00. 00. 5급 승진인사에서 승진시키지 않아 이후 2020. 00. 00.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가 통보된 이후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5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201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부당이행 및 동일사례 재발생

○○○은 2019. 7. 1.부터 2020. 12. 31.까지 [표 4]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나누어 보내고 우선 승진한 현황”과 같이 2018. 1. 5.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에 대하여 총 4회[4]의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5급으로 승진기회를 박탈하였고, 결국 2021. 2. 22.에서야 교육훈련 기회가 제공되어 5급 승진대상자 의결일인 2018. 1. 5.부터 3년 7개월 4일이 경과한 2021. 00. 00.에서야 5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2019. 2. 15. 2018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2018. 12. 26.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12. 31.까지 총 20회[5]의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5급으로의 승진기회를 박탈하였고, 결국 2021. 1. 25.에서야 교육훈련 기회가 제공되어 5급 승진대상자 의결일인 2018. 12. 26.부터 2년 2개월 4일이 경과한 2021. 00. 00.에서야 5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로 인하여 2018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자의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 미실시 건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이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으로 재직하는 1년 6개월 동안 이행되지 않았고, 지적된 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2018년 정기종합감사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되풀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5급 승진리더 과정 : 2020년 제1기(2020. 1. 6.~2. 14.), 2020년 제2기(2020. 1. 28.~3. 6.), 2020년 제3기(2020. 4. 20.~5. 15.), 2021년 제1기(2021. 1. 19.~2. 19.)

5) 5급 승진리더 과정 : 2019. 2. 15.~12월 중 9회(제4기~제12기), 2020년(13회), 2021년 제1기(2021. 1. 18.~2.19./전남도로부터 2020. 12. 23.까지 명단제출 요청받음)

(3)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은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작성하고 있으므로 근무성적평정도 평정단위(부서)별로 통합·작성하여야 하는데도 2019. 10월과 2020. 4월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평정단위(부서)별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을 통합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아니하고 평정단위(부서)별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 각각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게 한 후 서열명부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출된 서열명부를 기초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의 통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6급 세무직렬과 6급 전산직렬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임의대로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의 통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표 2] “부당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의 근무성적평정 인원 현황”과 같이 2019. 10월 근무성적평정 시에 88명, 2020. 4월 근무성적평정 시에 90명이 평정단위별 확인자인 부서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실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5급 승진예정인원 과다 산정

○○○은 2019. 12월부터 2020. 6월까지 2회에 걸쳐 5급 승진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승진심사 시 기존 승진후보자가 남아있는 경우를 결원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등 승진대상자 산정을 잘못하여 [표 3] “5급 승진대상자 과다산정 현황”과 같이 2019. 00. 00.에 1명, 2020. 00. 00.에 4명 등 총 5명을 5급 승진대상 요인이 발생하는 시점보다 부당하게 먼저 5급 승진대상자로 선발하였다.

그로 인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승진의결로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저해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이 결원이 발생하는 정당한 시점에 5급 승진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의 경우

○○○은 2018.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과에서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1)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와 다른 승진임용

○○○은 2018. 1월부터 2019.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21명에 대하여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승진대상자 의결일 순서대로 수료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8. 9월부터 2019. 10월까지 [표 5]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나누어 보내고 우선 승진한 현황”과 같이 임의대로 부당하게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였다.

또한 5급 승진임용은 인사위원회 5급 승진의결 횟수별로 승진의결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상 성적(70%)과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30%)을 합산한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하여야 하는데도 인사위원회의 5급 승진의결 횟수가 아닌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순서대로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부당하게 그 순위에 따라 5급으로 임용하였다.

[표 5]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나누어 보내고 우선 승진한 현황(2018.9월~2019.10월)

연번	승진 심사일	승진 직급	승진전 직급	성명	합산성적			5급 기본교육과정 수료기수	정당한 5급승진 임용명부 순위	승진 임용일	선순위보다 승진을 먼저한 기간
					합산 점수	근무 성적	교육 점수				
1	2018. 01.05.	○○ 5급	○○6급	○○○	97.96	69.83	28.13	21년 제 3기	1	2021.00.00.	
2				○○○	96.28	68.08	28.20	19년 제 6기	2	2019.00.00.	1년 10개월 17일
3	2018. 08.17.	○○ 5급	○○6급	○○○	97.78	69.75	28.03	18년 제11기	1	2018.00.00.	
4				○○○	93.93	66.11	27.82	18년 제10기	2	2018.00.00.	14일
5		○○ 5급	○○6급	○○○○	96.06	67.99	28.07	18년 제11기	1	2018.00.00.	
6				○○○	95.84	68.52	27.32	18년 제10기	2	2018.00.00.	
7				○○○	94.47	66.5	27.97	18년 제10기	3	2018.00.00.	
8				○○○	93.73	65.75	27.98	18년 제11기	4	2018.00.00.	
9			○○6급	○○○	93.21	65.45	27.76	18년 제10기	5	2018.00.00.	14일
10	2018. 12.26.	○○ 5급	○○6급	○○○	94.19	65.89	28.3	19년 제 4기	1	2019.00.00.	
11				○○○	92.71	64.61	28.1	19년 제 2기	2	2019.00.00.	4개월
12		○○○○ 5급	○○○○ 6급	○○○	98.14	70	28.14	21년 제 2기	1	2021.00.00.	
13		○○ 5급	○○6급	○○○	96.87	68.78	28.09	19년 제 6기	1	2019.00.00.	
14				○○○	96.44	68.43	28.01	19년 제 4기	2	2019.00.00.	3개월 9일
15	2019. 06.25.	○○ 5급	○○6급	○○○	97.56	68.29	29.27	19년 제12기	1	2020.00.00.	
16				○○○	95.55	67.21	28.34	19년 제 8기	2	2019.00.00.	
17				○○○	95.04	66.95	28.09	19년 제10기	3	2020.00.00.	

연번	승진 심사일	승진 직급	승진전 직급	성명	합산성적			5급 기본교육과정 수료기수	정당한 5급승진 임용명부 순위	승진 임용일	선순위보다 승진을 먼저한 기간
					합산 점수	근무 성적	교육 점수				
18				○○○	94.85	66.79	28.06	19년 제 8기	4	2019.00.00.	8개월 10일
19				○○○	93.98	65.64	28.34	19년 제10기	5	2020.00.00.	
20			○○6급	○○○	92.85	65.02	27.83	19년 제10기	6	2020.00.00.	
21			○○6급	○○○	92.56	64.56	28	19년 제 9기	7	2020.00.00.	6개월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2018. 1. 5.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선순위자인 ○○○보다 1년 10개월 17일 먼저, 2018. 8. 17.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과 지방○○6급 ○○○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선순위자인 ○○○과 ○○○○보다 각각 14일 먼저, 2018. 12. 26.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과 지방○○6급 ○○○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선순위자인 ○○○과 ○○○보다 4개월과 3개월 9일 먼저, 2019. 6. 25.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과 ○○○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선순위자인 ○○○보다 8개월 10일과 6개월 먼저 승진하는 등 인사법령을 위반하면서 5급 승진임용을 임의대로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201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부당이행 및 동일사례 재발생

○○○은 2018. 9. 5.부터 2019. 10. 13.까지 [표 5]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나누어 보내고 우선 승진한 현황”과 같이 2018. 1. 5.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에 대하여 총 3회[6]의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5급으로의 승진기회를 박탈하였고, 결국 2021. 2. 22.에서야 교육훈련 기회가 제공되어 5급 승진대상자 의결일인 2018. 1. 5.부터 3년 7개월 4일이 경과한 2021. 00. 00.에서야 5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2019. 2. 15. 2018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2018. 12. 26.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19. 10. 13.까지 총 8회[7]의 5급 기본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5급으로의 승진기회를 박탈하였고, 결국 2021. 1. 25.에서야 교육훈련 기회가 제

6) 5급 승진리더 과정 : 2020년 제1기(2020. 1. 6.~2. 14.), 2020년 제2기(2020. 1. 28.~3. 6.), 2020년 제3기(2020. 4. 20.~5. 15.)

7) 5급 승진리더 과정 : 2019. 2. 15.~10. 13. 기간 중 8회(제4기~제11기)

공되어 5급 승진대상자 의결일인 2018. 12. 26.부터 2년 2개월 4일이 경과한 2021. 00. 00.에서야 5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로 인하여 2018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자의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 미실시 건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이 ○○담당자로 재직하는 8개월 동안 이행되지 않았고, 지적된 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2018년 정기종합감사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되풀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은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작성하고 있으므로 근무성적평정도 평정단위(부서)별로 통합·작성하여야 하는데도 2019. 4월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평정단위(부서)별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을 통합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아니하고 평정단위(부서)별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 각각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게 한 후 서열명부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출된 서열명부를 기초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의 통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6급 세무직렬과 6급 전산직렬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임의대로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의 통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표 2] “부당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의 근무성적평정 인원 현황”과 같이 2019. 4월 근무성적평정 시에 94명이 평정단위별 확인자인 부서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실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5급 승진예정인원 과다 산정

○○○은 2018. 12월부터 2019. 6월까지 2회에 걸쳐 5급 승진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승진심사 시 기존 승진후보자가 남아있는 경우를 결원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등 승진대상자 산정을 잘못하여 [표 3] “5급 승진대상자 과다산정 현황”과 같이 2018. 00. 00.에 6명, 2019. 00. 00.에 11명 등 총 17명을 5급 승진대상 요인이 발생하는 시점보다 부당하게 먼저 5급 승진대상자로 선발하였다.

그로 인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승진의결로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저해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이 결원이 발생하는 정당한 시점에 5급 승진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신안군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와 다른 승진임용의 경우 소수직렬과 업무추진 등의 인력운영 상황 등으로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나누어 보내고 승진의결일 기준이 아닌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의 수료한 순서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승진임용하였으며, 5급 승진예정인원 과다 산정은 조직개편 예정으로 예상 증가분까지 산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의 “임용권자는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기속행위로 규정한 취지는 누구라도 부당한 개입이나 영향으로 임용순위를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승진임용 순위를 변경하여 임용할 경우 승진임용 지연에 따라 그 개인의 총 급여나 연금 측면에서 상당한 손해를 유발할 수 있고, 지연되는 기간 중에 징계, 사고 등 예상치 못한 문제로 승진임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신안군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신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9조 제3항에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법령의 취지를 무시한 채 임의대로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달리 보내어 5급 승진임용

순위명부상 후순위자가 선순위자보다 먼저 임용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을 무시하고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후순위자를 선순위자보다 먼저 부당하게 승진 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조직개편 예상 증가분까지 산정하여 5급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안군 감사기간 중 과다 산정인원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산출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신안군의 조직개편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2018. 12. 26. 5급 승진대상자를 선발하면서 과다산정한 인원은 6명인데도 실제 조직개편은 2019. 3. 15.에서야 5급이 1명만 증가하였고, 2019. 6. 26. 5급 승진대상자를 선발하면서 과다산정한 인원은 11명인데도 실제 조직개편은 2019. 10. 11.에서야 5급 3명만 증가하였으며, 2019. 12. 23.과 2020. 6. 29. 5급 승진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이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는데도 5급 승진대상자가 과다산정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시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와 다른 승진임용의 경우 및 5급 승진예정인원 과다 산정 관련 신안군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요구 양정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와 다른 승진임용을 하고, 201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부당하게 이행하고 동일한 사례를 또 다시 발생시켰으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5급 승진예정인원 산출을 과다하게 한 지방○○사무관 ○○○과 지방○○○○주사 ○○○의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에 위배 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5급 승진대상자를 임용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를 준수하고,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자에 대하여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 교육시기를 임의 조정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교육을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에도 통합 작성한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순위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기관경고**)

②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와 다른 승진임용을 하고, 201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부당하게 이행하고 동일한 사례를 또 다시 발생시켰으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5급 승진예정인원 산출을 과다하게 한 지방○○사무관 ○○○과 지방○○○○○○주사 ○○○을「지방공무원법」제72조에 따라 경징계하며(**징계**)

③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와 다른 승진임용을 하고, 201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부당하게 이행하고 동일한 사례를 또 다시 발생시켰으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5급 승진예정인원 산출을 과다하게 하며, 공금을 횡령한 공무직에 대하여 부당하게 징계를 감경한 지방○○관 ○○○, 지방○○사무관 ○○○, 지방○○사무관 ○○○, 지방○○주사 ○○○, 지방○○주사보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 라 남 도
기 관 경 고

제　　목　보직관리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직위 부여

관계기관(부서)　신안군(행정지원과)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 2019. 1월부터 2021. 10월까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승진 및 전보 등의 정기인사를 실시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같은 영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영 제7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1. 임용예정직에 전문인력의 확보 2.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임용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 공동 수행의 경우에만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고, 겸임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겸임 인사발령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행정지원과)은 2019.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 ○○○○○과장 ○○○로 하여금 ○○○○○○○○단의 ○○○○○○○지원담당의 업무를 1년 8일 동안 겸임하도록 하는 등 2019. 1월부터 2021. 3월까지 [표 1] “과장급 직위 임용자에게 부당한 추가 직위 업무를 부여한 현황”과 같이 과장 직위에 임용된 ○○○ 등 3명에게 최소 2개월 1일에서 최대 1년 8일까지 담당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부당하게 겸임 발령하였다.

또한 ○○○○○○○ 소장 ○○○에게 2개월 24일, ○○○○○지원단 ○○○에게 1년 동안 2개 과의 과장 업무를 부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부당하게 겸임 발령하였다.

[표 1] 과장급 직위 임용자에게 부당한 추가 직위 업무를 부여한 현황(2019.1월~2021.3월)

대상자					겸임 직위				겸임 기간
부서	직위	직급	성명	직위 임용일	부서	직위	시작	종료	
○○ ○○과	과장	지방○○ 지도사	○○○	2019. 00.00.	○○○○○ ○○단	○○○○○○ 지원담당	2019. 00.00.	2020. 00.00.	1년 8일
○○○ ○○과	과장	지방○○ 지도사	○○○	2019. 00.00.	○○○○○ ○○단	○○○○○○ 지원담당	2019. 00.00.	2020. 00.00.	6개월 8일
○○ ○○실	실장	지방○○ 5급	○○○	2021. 00.00.	○○○○ TF	○○팀장	2021. 00.00.	2021. 00.00.	2개월 1일
○○○○ ○○	소장	지방○○ 지도관	○○○	2019. 00.00.	○○○○○ ○○단	○○○○○ ○○단장	2019. 00.00.	2019. 00.00.	2개월 24일
○○○○ 지원단	단장	지방○○ 5급	○○○	2018. 00.00.	○○○ ○○과	○○○ ○○과장	2019. 00.00.	2020. 00.00.	1년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6급 담당 직위 부여자에 대해서는 2019. 1월부터 2021. 8월까지 [표 2] “기준일별 6급 담당에 대한 부당한 직위 부여 현황”과 같이 2019. 1. 31. 기준으로 인사규정상의 6급 담당 직위 부여가 가능한 203명(203개 직위) 가운데 2개 직위를 부여한 자가 3명(6개 직위), 2019. 7. 31. 기준으로 인사규정상의 6급 담당 직위 부여가 가능한 203명(203개 직위) 가운데 2개 직위를 부여한 자가 4명(8개 직위), 2020. 1. 31. 기준으로 인사규정상의 6급 담당 직위 부여가 가능한 202명(202개 직위) 가운데 2개 직위를 부여한 자가 7명(14개 직위), 2020. 7. 31.

기준으로 인사규정상의 6급 담당 직위 부여가 가능한 214명(214개 직위) 가운데 2개 직위를 부여한 자가 12명(24개 직위), 2021. 1. 31. 기준으로 인사규정상의 6급 담당 직위 부여가 가능한 206명(206개 직위) 가운데 2개 직위를 부여한 자가 26명(52개 직위), 2021. 8. 31. 기준으로 인사규정상의 6급 담당 직위 부여가 가능한 214명(214개 직위) 가운데 2개 직위를 부여한 자가 12명(28개 직위), 3개 직위를 부여한 자가 1명(3개 직위)이 있는 등 6급 담당 1명에게 다른 담당 직위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부당하게 겸임 발령하였다.

[표 2] 기준일별 6급 담당에 대한 부당한 직위 부여 현황(2019.1월~2021.8월)

기준일	인사규정상 6급 담당 직위		담당 직위 부여 현황					일반직 (임기제 포함) 현원	보직 부여자	무 보직자
			계	1인에게 1개직위 부여	부당한 직위 부여					
					1인에게 2개직위	1인에게 3개직위	공석			
2019. 01.31.	직위(개)	203	203	174	6		23			
	인원(명)	203	177	174	3			242	177	65
2019. 07.31.	직위(개)	203	203	176	8		19			
	인원(명)	203	180	176	4			245	180	65
2020. 01.31.	직위(개)	202	202	180	14		8			
	인원(명)	202	187	180	7			245	187	58
2020. 07.31.	직위(개)	202	202	178	24					
	인원(명)	202	190	178	12			243	190	53
2021. 01.31.	직위(개)	206	218	166	52					
	인원(명)	206	192	166	26			256	192	64
2021. 08.31.	직위(개)	214	214	163	28	3	20			
	인원(명)	214	178	163	14	1		248	178	70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2021. 10. 31.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3] “2021. 10. 31. 기준 6급 담당에 대한 부당한 직위 부여 현황”과 같이 6급 공무원 중 무보직이 82명이 있는데도 인사규정상의 6급 담당 직위 부여가 가능한 214명(214개 직위) 가운데 2개 직위를 부여한 자가 31명(62개 직위), 3개 직위를 부여한 자가 1명(3개 직위)이 있는 등 총 32명의 6급 담당이 다른 담당 직위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3] 2021.10.31. 기준 6급 담당에 대한 부당한 직위 부여 현황

기준일	인사규정상 6급 담당 직위		담당 직위 부여 현황					일반직 (임기제 포함) 현원	보직 부여자	무 보직자
			계	1인에게 1개직위 부여	부당한 직위 부여					
					1인에게 2개직위	1인에게 3개직위	공석			
2021. 10.31.	직위(개)	214	214	130	62	3	19			
	인원(명)	214	162	130	31	1		244	162	82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6급 담당이 추가로 부여된 다른 담당 직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살펴보면 2019. 1월부터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6급 담당에게 다른 담당 직위를 부당하게 부여한 명세”와 같이 6급 담당 직위에 임용된 ○○○ 등 67명에게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 11월 29일까지 다른 담당 직위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과 ○○○○○담당 지방○○6급 ○○○에게는 2021.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같은 과 ○○담당과 ○○○담당 등 총 3개 담당 직위를 3개월 22일째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법령에 요건에 맞지 않는 겸임 발령을 통하여 보직관리 원칙을 위반하는 부당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6급 담당의 경우는 무보직 인원이 충분한데도 2개 이상 담당 직위의 업무가 부여되는 등의 정상적이지 아니한 보직 부여로 인사운영이 문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신안군은 지방공무원법상의 보직관리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여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보직관리로 겸임보직을 받은 담당요원이나 무보직 6급 직원의 경우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신안군의 겸임 발령은 같은 영 제7조의5에서 정한 겸임 발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겸임보직을 받은 담당요원이 업무를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었다면서도 정원 조례규칙과 부서별 정원을 정한 정원 규정은 변경되지 않고 있는 점 및 오히려 업무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6급 담당의 직위를 남발하여 설치하였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앞으로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하고, 겸임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겸임 인사발령을 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5급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기획홍보실)

징 계 대 상 자 신안군 ○○○○과 지방○○주사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20. 00. 00. ○○○○ ○○○ 지원사업 수의계약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지방○○○○5급 ○○○을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하였고, 지방○○○○7급 ○○○를 신안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 징계 사건과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기획홍보실)은 ○○○○ ○○○ 지원사업 수의계약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지방○○○○○5급 ○○○과 지방○○○○○7급 ○○○는 5급 공무원 및 5급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사건이므로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함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데도 2020. 00. 00. 지방○○○○○5급 ○○○만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경징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지방○○○○○7급 ○○○는 직장 상사인 지방○○○○○5급 ○○○과 함께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면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를 이행한 점에 대하여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자체 판단하여 전라남도인사위원회가 아닌 신안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였다.

그로 인하여 징계요구부서(기획홍보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방○○○○○5급 ○○○은 2020. 00. 00.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감봉○월'로, 지방○○○○○7급 ○○○는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신안군인사위원회에서 2020. 00. 00. '○○○○'로 의결되는 등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징계요구 건이 별도로 심의되어 상이한 판단이 내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지방○○○○○5급 ○○○이 전라남도인사위원회의 '감봉○월' 징계의결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한 건에 대하여 전라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서 ○○○○ ○○○ 지원사업 수의계약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지방○○○○○5급 ○○○과 지방○○○○○7급 ○○○를 일괄 심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신안군인사위원회에서 지방○○○○○7급 ○○○를 '○○○○' 처분한 점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지방○○○○○5급 ○○○을 '감봉○월'에서 '○○'으로 감경해 주는 근거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신안군은 ○○○○에 의한 군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5급 공무원은 직원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일관된 행태를 보였고, 7급 공무원은 위반사실 인정 및 깊이 반성한 점, 짧은 근무기간으로 경험이 부족하여 부서장의 부당한 지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부서장과 동일 인사위원회에 회부 될 경우 하위직 직원이 받게 될 심리적 압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라남도와

신안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로 징계수위를 동일하게 요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4 제1항에 5급 이상 공무원 징계 사건과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강행규정화 되어 있다는 점, 징계대상자 역시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1], 5급 공무원은 직원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일관된 행태를 보인 반면 7급 공무원은 위반사실 인정 및 깊이 반성하고 짧은 근무기간으로 경험이 부족하여 부서장의 부당한 지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을 거라는 점 및 부서장과 동일 인사위원회에 회부 될 경우 하위직 직원이 받게 될 심리적 압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은 징계요구부서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위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징계요구 양정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의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에 위배 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을「지방공무원법」제72조에 따라 경징계하시기 바랍니다.**(징계)**

1) 지방○○6급 ○○○은 2021. 12. 1. 문답과정에서 ○○○ 주무관으로부터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 받았다고 답변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기획홍보실, 행정지원과)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8. 11월부터 2021. 10월까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직원 53명의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처리하였고, 6급 이하 소속 직원 37명에 대한 경징계 요구에 대하여 군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다.

2. 징계요구 부당 처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건 통보 결과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아동학대보호 사건송치 등)일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를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기획홍보실)은 2019. 00. 00.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지방○○8급 ○○○의 ○○○○○○○○○법 위반(치상) 구약식 처분과 2021. 00. 00.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지방○○9급 ○○○의 ○○○○법 위반 ○○○○보호 사건송치 결과를 통보받았는데도 군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체 '내부종결' 하였다.

그로 인하여 징계요구부서(기획홍보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안군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 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 심사 청구서에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인사실무(행정안전부) 제9장 복무 및 징계의 3. 징계편에 따르면 실제로 심사를 하기 전에 권한있는 징계처분권자가 적법하게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심사청구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후에는 심사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징계요구부서(기획홍보실)의 경징계 요구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처분할 때는 우선 그 의결 결과를 징계요구부서(기획홍보실)에 통보하여 징계요구부서(기획홍보실)의 심사 청구 의사를 확인한 후 징계대상자에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행정지원과)은 2018. 11월부터 2021. 10월까지 징계요구부서(기획홍보실)로부터 [별표] “징계의결 심사 절차를 위반한 징계 명세”와 같이 총 37명 모두에 대하여 경징계 요구를 받아 징계업무를 처리하면서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를 징계요구부서(기획홍보실)에 통보하며 징계요구부서(기획홍보실)의 심사 청구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을 함께 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징계의결 결과에 대한 징계요구부서의 심사 권한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앞으로 징계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처리하고,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를 처분할 때는 그 의결 결과를 징계요구부서에 통보하여 징계요구부서의 심사 청구 의사를 확인한 후 징계대상자에게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경관식재용 물품 구매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공원녹지과)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9. 3월부터 2021. 10월까지 3,12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일원에 경관 조성을 위한 조경수·화훼류 등을 식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총칙에 따르면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용역·물품의 제조·구매 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공원녹지과)은 2019. 3월부터 2021. 10월까지 [별표] “경관식

재 관련 물품 분할발주 명세"와 같이 단일사업이면서 시기도 같은 ○○도 퍼○○○ 경관 개선용 ○○○ 구매 등 총 52건, 2,217백만원의 물품 구매를 (유)○○○○ 등 8개 관내 여성기업 등과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분할하여 세무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물품 제조·구매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도내 동종업체의 참여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앞으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물품 구매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공원녹지과)

훈 계 대 상 자 신안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8. 11월부터 2021. 10월까지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5,575백만원의 보조금으로 조림·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보 ○○은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조림·숲가꾸기사업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경제림 조림사업 산주 자부담금 미징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64조에 따르면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등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산림청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 조림 편에 따르면 산림소유자의 부담금이 있는 경제림(유휴토지 조림 포함) 조성 보조사업은 산주 또는 조림의무자(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자 포함)로부터 자부담금 10%를 부담·징수한 경우에만 보조사업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산림소유자의 부담금이 있는 경제림(유휴토지 조림 포함) 조성 보조사업은 산주 또는 조림의무자로부터 자부담금 10%를 징수한 경우에만 보조사업을 실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공원녹지과)은 2018. 11월부터 2021. 4월까지 [표 1] “경제림 조림사업 산주 자부담금 미징수 현황”과 같이 2020년 경제림 조림사업 등 3건의 산주 자부담이 있는 경제림 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주 자부담금 18,589천원을 징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경제림 조림사업 산주 자부담금 미징수 현황(2018.11월~2021.4월)

(단위 : ha, 명, 천원)

구분	사업명	면적	수종	자부담 인원	사업비			산주 자부담금 미징수액
					계	국비 등 보조금	산주 자부담금	
계	3건	61			185,892	167,303	18,589	18,589
2018	2018년 경제림 조림사업	15	황칠	○○○등 11	55,823	50,241	5,582	5,582
2020	2020년 경제림 조림사업	31	편백 등 3	○○○ 등 31	94,695	85,225	9,470	9,470
2021. 4월까지	2021년 경제림 조림사업	15	편백 등 2	○○○ 등 21	35,374	31,837	3,537	3,537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산림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주 자부담금 18,589천원을 징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주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예산의 추가 투입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조림지 풀베기사업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훈령) Ⅲ-1-나. 조림 편에 따르면 풀베기사업의 작업 시기는 1회 실행지의 경우 5월부터 7월 사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할 경우에는 1회 실행지의 경우 5월

부터 7월 사이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공원녹지과)은 2019. 8월부터 2021. 10월까지 [별표] “조림지 풀베기사업 추진 명세”와 같이 2020년 도초 수다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 35건, 190.01ha의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의 적기인 5월부터 7월 사이가 아닌 8월부터 10월 사이에 추진하였다.

그로 인하여 권장시기에 맞지 않는 사업을 실행하여 조림 후 주변 식생에 의해 조림한 나무가 경쟁에서 도태되어 피압되는 등 조림수목의 생육을 돕기 위한 조림지 풀베기사업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조림·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0조에 따르면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은 작업인원의 5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하고, 감독자는 사업 착수 및 작업원 교체 시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타 지역 사업장과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조림·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제출한 작업원 운영계획서에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의 경우 기술인력이 50% 이상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작업원을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이중등록 및 허위등록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공원녹지과)는 2018. 12월부터 2021. 9월까지 조림·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2] “조림·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 입력 현황”과 같이 2019년 유휴토지 조림사업 등 총 48건의 사업 중 16건만 사업 착수 시 작업

원을 입력하고, 25건은 착공 이후, 7건은 사업완료 후에 작업원을 입력하는 등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조림·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 입력 현황(2018.12월~2021.9월)

(단위 : 건)

구분	사업량	작업원 관리 전자시스템 입력 시기		
		착공 시	착공 이후	사업완료 후
계	48	16	25	7
2018. 12월	1			1
2019	12	1	6	5
2020	19	5	13	1
2021. 9월까지	16	10	6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인 작업원이 타 사업장에 이중 등록되어 있을 경우 조림·숲가꾸기사업의 공정 완성도가 저해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산주 자부담금 미부과, 조림지 풀베기사업 적기 미시행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보 ○○을 훈계하고**(훈계)**

② 앞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등에서 정한 절차 준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훈 계 요 구

제　　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업무 등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공원녹지과)

훈 계 대 상 자 신안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8. 11월부터 2021. 10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산림의 보전·이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보 ○○○은 2018.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관리 및 산지전용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산지전용지역 재선충병 방제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행정동·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되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신고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소나무류 이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 할 시 산림기술자가 작성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방제계획서에 따

라 방제·처리를 완료한 후 시장·군수에게 산림기술자가 작성한 재선충병 방제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방제계획서와 방제완료서가 방제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을 때에는 재선충병 방제계획서와 방제완료서의 적정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확인하여 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공원녹지과)은 2018. 11월부터 2020. 7월까지 [표 1] “재선충병 방제계획 승인 등 업무 처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 등의 신청자 또는 신고자로부터 ○○읍 ○○리 산000 등 14건에 대하여 신청자 또는 신고자로부터 재선충병 방제계획서를 제출받았는데도 방제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심사 및 통보하지 않았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가 방제기간 내에 방제완료서를 제출하지 않아 방제·처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1] 재선충병 방제계획 승인 등 업무 처리 부적정 현황(2018.11월~2020.7월)

연번	소재지	신청자 또는 신고자	방제기간	계획서 제출여부 (방제자)	계획서 승인여부 (신안군)	방제완료서 제출여부 (방제자)	준공처리 여부 (신안군)
계	14건						
1	○○읍 ○○리 산000	○○○	2018.00.00. ~2019.00.00.	여	부	부	부
2	○○읍 ○○리 산000	○○○	2019.00.00. ~2019.00.00.	여	부	부	부
3	○○읍 ○○리 산000	○○○	2019.00.00. ~2019.00.00.	여	부	부	부
4	○○읍 ○○길 00	○○○	2019.00.00. ~2021.00.00.	여	부	부	부
5	○○읍 ○○리 산000	○○○	2019.00.00. ~2019.00.00.	여	부	부	부
6	○○읍 ○○리 산000	○○○	2019.00.00. ~2019.00.00.	여	부	부	부
7	○○읍 ○○리 산000	○○○	2019.00.00. ~2019.00.00.	여	부	부	부
8	○○읍 ○○리 산00	○○○	2019.00.00. ~2021.00.00.	여	부	부	부
9	○○읍 ○○리 산000	○○○	2019.00.00. ~2022.00.00.	여	부	미도래	미도래

연번	소재지	신청자 또는 신고자	방제기간	계획서 제출여부 (방제자)	계획서 승인여부 (신안군)	방제완료서 제출여부 (방제자)	준공처리 여부 (신안군)
10	○○읍 ○○리 산000	○○○	2019.00.00. 2022.00.00.	여	부	미도래	미도래
11	○○읍 ○○리 산00	○○○	2020.00.00. ~2022.00.00.	여	부	미도래	미도래
12	○○읍 ○○리 산00	○○○	2020.00.00. ~2020.00.00.	여	부	부	부
13	○○읍 ○○리 산00	○○○	2020.00.00. ~2020.00.00.	여	부	부	부
14	○○읍 ○○리 산000	○○○	2020.00.00. ~2021.00.00.	여	부	부	부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재선충병 방제계획 적정성과 방제·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여 산지개발로 인한 재선충병이 확산될 수 있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 미구성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지역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과 관련하여 관내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정보의 공유, 공동예비관찰조사 및 공동방제의 실시, 그 밖에 지역 단위 방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관내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한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정보의 공유, 공동예비관찰조사 및 공동방제의 실시, 그 밖에 지역 단위 방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공원녹지과)은 2017. 00. 00. ○○읍 ○○리 산00번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으로 압해읍 전역 2,451ha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고, 신안군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회복된 2020. 00. 00.까지 ○○읍 일원 산림 144ha에 피해목(피해우려목 포함)이 발생하였는데도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지 않는 등 방제 활동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소나무재선충 완전방제를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허가지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지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군수에게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허가지에 대하여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산지의 형질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복구를 하도록 복구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공원녹지과)은 2019. 4월부터 2021. 10월까지 [표 2]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지역 행정조치 미이행 현황”과 같이 ○○○○ 자연장지 조성 건 등 14건에 대하여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간연장 등을 하지 않은 채 허가기간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년 7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복구명령, 허가취소 등의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지역 행정조치 미이행 현황(2019.4월~2021.10월)

(단위 : ㎡)

연번	산지 전용자	산림소재지			허가 면적	산지전용 목적	허가기간 만료일	행정 조치 여부
		읍면	리	지번				
계	14건							
1	○○○○	○○	○○	산000	4,434	○○~○○간 도로공사 진입로	2019.04.17.	부
2	○○○○	○○	○○	산0004	1,715	○○○○ 개통대비 우회도로 개설	2020.05.30.	〃
3	○○○○	○○	○○	산00	1,487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2020.06.30.	〃
4	○○○	○○	○○	산00	1,990	○○○○ 자연장지 조성	2020.06.31.	〃
5	○○○○	○○	○○○	산000	1,998	○○면 재난대비창고 신축	2020.08.30.	〃
6	○○○○	○○	○○	산00	5,772	○○ 소나무공원 관람로 개설	2020.08.30.	〃
7	○○○	○○	○○	산00	3,552	○○○ 관련시설(축사 양성화)	2020.09.30.	〃
8	○○○	○○	○○○	000	203	○○○○ 작업로	2021.01.30.	〃
9	○○○	○○	○○	산000	2,315	○○○○시설	2021.02.28.	〃
10	○○○	○○	○○	산00	1,990	○○ 묘지 조성	2021.03.30.	〃
11	○○○	○○	○○	000	498	○○○ 관련시설(축사 양성화)	2021.03.31.	〃
12	○○○	○○	○○	산000	3,250	○○○○ 신축	2021.07.30.	〃
13	○○○	○○	○○	산000	948	○○○○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	2021.08.30.	〃
14	○○○	○○	○○	산000	607	진출입로 조성	2021.10.31.	〃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훼손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치된 경우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 심사·확인 및 방제지역협의회 미구성, 산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보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 라 남 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파크 초화류 식재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뮤지엄파크지원과)

훈 계 대 상 자 신안군 ○○○○○지원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20. 4월부터 2021. 10월까지 18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파크 일원에 경관 조성을 위하여 핑크뮬리 등 20개 수종, 290,747본의 초화류를 식재하였다.

지방○○주사 ○○○는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지원과에서 경관 조성을 위한 초화류 식재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물품구매 검수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수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 지급 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

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지정한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면 물품의 품질, 수량, 포장, 표기 상태, 품질 식별기호 등을 검수하여야 하며, 그 대가는 검수에 합격한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이 납품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이 계약상 명시된 규격의 제품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뮤지엄파크지원과)은 2020. 9월부터 2021. 10월까지 [표 1] “초화류 구입 관련 검수 업무 부적정 현황”과 같이 ○○○○ 구입 등 15종, 199,300본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적정하게 물품을 납품하였는지 검수하여야 할 검수자 ○○○(위임받은 소속 공무원)가 당일 광주광역시 등 관외 출장하여 물품 검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권한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작업반장) ○○○ 등에게 대리로 검사하게 하고, 추후에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검수를 진행하는 등 물품 검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초화류 구입 관련 검수 업무 부적정 현황(2020.9월~2021.10월)

(단위 : 본)

연번	사업명	구입품목	구입량	구입처	납품일자	위임받은 검수공무원 근무상황
계	11건	15종	199,300			
1	○○○○ 구입	○○○○	10,000	○○○○	2020.00.00.	관외 출장
2	○○○○(○○○)	○○○○	7,000	○○○○식물원	2020.00.00.	관외 출장
3	○○○○○ 구입	○○○○○	3,000	○○농장	2021.00.00.	관외 출장
4	보식용 ○○○○○	○○○○○	4,000	○○○○	2021.00.00.	관외 출장
5	휴양림 야생화 단지 보식용 초화	○○○	8,000	○○○○	2021.00.00.	관외 출장
		○○	17,500			
		○○○	20,000			
		○○○	2,000			
		○○○○○	15,000			
6	바다휴양숲 조성용 야생화	○○○	18,000	○○○○	2021.00.00.	관외 출장
		○○○○○○	4,200			

연번	사업명	구입품목	구입량	구입처	납품일자	위임받은 검수공무원 근무상황
7	중앙광장식재용 ○○○	○○○	25,000	○○○○식물원	2021.00.00.	관외 출장
8	자연휴양림조성용 ○○○○○○	○○○○○○	8,400	○○○○	2021.00.00.	관외 출장
9	휴양림보완조성용 ○○○○○	○○○○○	25,000	○○식물원	2021.00.00.	관외 출장
10	다육식물 군락조성사업 화초	○○○	11,000	○○○○	2021.00.00.	관외 출장
		○○○	21,000			
11	휴양숲 추계 ○○ 구입	○○	200	○○농장	2021.00.00.	관외 출장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적정하게 물품을 납품하였는지를 검수하지 못한 채 대금이 지급되어 신안군의 행정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물품구매 하자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하자 사항을 기록·유지[1]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안군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뮤지엄파크지원과)은 2020. 4월부터 2021. 11월까지 [별표] “○○○○○○○○파크 초화류 식재 명세”와 같이 휴양림 동산 조성 ○○ 구입 등 총 16건의 물품 구입에 대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단 한차례도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감사기간 중 초화류 식재 현장을 확인한 결과 [표 2] “초화류 고사 현황”과 같이 2020. 7월부터 2021. 8월까지 구입하여 식재한 ○○○○○ 등 4개 수종, 36,600본이 고사했거나 고사하고 있는데도 계약상대자 등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지 않은 채 담당부서인 ○○○○○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제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초화류 고사 현황(2020.7월~2021.8월)

(단위 : 본, 천원)

사업명	구입품목	구입량	구입처	납품일	하자 발생 금액	하자 보증기간	감사기간 동안 현장확인 결과
6건	4종	36,600			29,387		
휴양림조성용 특수목	○○○○○	3,000	○○○○	2020.00.00.	2,850	2020.00.00. ~2022.00.00.	고사로 자체제거
○○○○ 구입	○○○○	10,000	○○○○	2020.00.00.	7,037	2020.00.00. ~2021.00.00.	〃
○○○○○ 구입	○○○○○	3,000	○○○○	2021.00.00.	3,000	2021.00.00. ~2022.00.00.	〃
휴양림 야생화 단지 초화	○○○	8,000	○○○○	2021.00.00.	9,600	2021.00.00. ~2022.00.00.	〃
바다휴양숲 조성용 야생화	○○○ ○○○	4,200	○○○○	2021.00.00.	2,300	2021.00.00. ~2022.00.00.	일부 고사(30%)
휴양림 조성용 ○○○ ○○○	○○○ ○○○	8,400	○○○○	2021.00.00.	4,600	2021.00.00. ~2022.00.00.	〃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하자 검사 및 하자 보수 요구를 통하여 고사된 초화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 29,387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초화류 등 물품 구매 업무와 관련하여 물품 검수 및 하자검사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를 훈계하고**(훈계)**

②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물품 구매 및 사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훈 계 요 구

제 목 무허가 축사 농업경영체 보조금 지원 등 사후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친환경농업과)

훈 계 대 상 자 신안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9. 00. 00.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체(○○○○○○○조합법인, 대표 ○○○)에 무허가로 증축된 돈사 790.22㎡를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2019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을 교부결정하였고, 2020. 3. 27. 보조금을 [표] "○○○○○○○조합법인 보조금 지원 현황"과 같이 지원하였다.

[표] ○○○○○○조합법인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동, ㎡, 천원)

경영체명	소재지	사육두수 (축종)	축사현황		보조금 지원현황				
			동수	건축면적 (무허가)	계	국비	군비	융자	자담
○○○○○○ 조합법인 (대표 ○○○)	○○읍 ○○○길 00	9,545 (돼지)	10	11,800.15 (790.22)	697,910	209,373	78,166	270,789	139,582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 ○○○은 2019.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과에서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의 지원자격 및 요건에 따르면 무

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하여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에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하여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 및 철거 등을 통하여 무허가 부분에 대하여 양성화하는 등 교부조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점검한 후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친환경농업과)은 보조사업자인 ○○○○○○○조합법인이 무허가로 증축한 돈사를 양성화하지 않은 채 군에 보조사업 완료 보고 및 정산서를 제출[2]하였는데도 무허가로 증축한 돈사를 양성화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697,910천원의 집행에 대한 정산내역을 확정 통보[3]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보조금 지원 목적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달성하지 못한 채 697,910천원의 보조금이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집행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2) 지도읍-0000(2020.00.00.) 2019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완료 보고 및 정산서 제출

3) 친환경농업과-0000(2020.00.00.) 2019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 알림

전 라 남 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경관보전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친환경농업과)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9. 1월부터 2020. 10월까지 경관작물 재배를 통하여 농촌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 “경관보전직접지불보조금 지원 현황”과 같이 1,361개 농지 1,778ha에 2,457백만원의 경관보전직접지불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 경관보전직접지불보조금 지원 현황(2019.1월~2020.10월)

(단위: 개, ha, 원)

구분	농지 수	경관조성 면적	지급액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1,361	1,778	2,457,107,870	1,228,553,940	245,710,780	982,843,150
2019	331	507	596,528,540	298,264,270	59,652,850	238,611,420
2020	513	661	1,008,454,650	504,227,330	100,845,460	403,381,860
2021.10월까지	517	610	852,124,680	426,062,340	85,212,470	340,849,870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해당 작물의 정부수매 또는 녹비작물 종자구입를 지원받는 농지 및 초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은 농지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원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은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은 농지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중복 지원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야 하고, 중복 지원의 경우 이에 대하여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친환경농업과)은 2019. 1월부터 2021. 10월까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면서 경관보전직접지불금과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를 비교할 경우 충분히 중복여부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었는데도 [별표] “경관보전직접지불보조금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명세”와 같이 중복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 없이 26개 농지 소유자에게 경관보존직접지불금 20,324,040원을 추가 지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조사료용 종자를 지원받는 26개 농지 소유자에게 경관보전직접지불금 20,324,040원이 부당하게 추가 지원되어 보조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조사료용 종자를 지원받는 26개 농지 소유자에게 추가 지원된 경관보전직접지불금 20,324,040원을 회수하고**(시정)**

② 앞으로 조사료용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 소유자에게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 추가 지원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전통문화 전수교육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농촌진흥과)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8. 1월부터 2021. 10월까지 풍물놀이, 난타 등으로 구성된 전통문화 전수교육을 ○○○○○○ ○○○연합회 회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신안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신안군 농업관련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전통문화 전수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신안군 공무직 관리 규정」 제14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공무직은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고, 근무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신안군은 전통문화 전수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속 14개 읍면지소에 전통문화 전수교육 추진계획을 통보[1]하면서 교육생 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신안군은 전통문화 전수교육을 추진할 경우 교육 목적에 부합한 대상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 관리 및 공무직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1) 1. 농촌진흥과-00(2019. 00. 00.), 2. 농촌진흥과-000(2020 001. 00.), 3. 농촌진흥과-0000(2021. 00. 00.)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농촌진흥과)은 2018. 1월부터 2021. 10월까지 전통문화 전수교육 업무 보조를 담당하는 공무직 6명이 [표 1] “읍면지소 공무직원의 교육참석자 등록부 서명 현황”과 같이 207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장의 출장명령부 서면결재 없이 전통문화 전수교육 업무 보조이외에 교육에 직접 참석하고 있는데도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

[표 1] 읍면지소 공무직원의 교육참석자 등록부 서명 현황(2018.1월~2021.10월)

행위 당시 소속	대상자		서명횟수				
			계	2018	2019	2020	2021
계	6명		207	49	120	20	18
농업기술센터 ○○지소	공무직	○○○	22	2	10		10
농업기술센터 ○○지소	공무직	○○○	30		30		
농업기술센터 ○○지소	공무직	○○○	73	25	30	10	8
농업기술센터 ○○지소	공무직	○○○	50	10	30	10	
농업기술센터 ○○지소	공무직	○○○	22	12	10		
농업기술센터 ○○지소	공무직	○○○	10		10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8. 1월부터 2021. 10월까지 교육참석자 등록부에 서명된 자 중 [표 2] “등록부 허위서명 현황”과 같이 ○○○○○○ ○○○ 등 2명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채 등록부에 30회에 걸쳐 허위로 서명하였는데도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

[표 2] 등록부 허위서명 현황(2018.1월~2021.10월)

행위 당시 소속	대상자		허위서명 횟수				
			계	2018	2019	2020	2021
계	2명		30	10	10	10	
○○○○○○	지방○○6급	○○○	10	10			
○○면 보건지소	공무직	○○○	20		10	10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전통문화 전수교육 교육생 관리와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 공무직의 복무관리가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앞으로 전통문화 전수교육 관련 교육생 관리 및 소속 공무직의 출장 시에는 반드시 출장허가를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세무회계과)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8년부터 2021. 11월까지 [표 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과 같이 지방세를 부과·징수하였다.

[표 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2018~2021.11월)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2018년	29,367	29,154	118	95
2019년	31,108	30,786	56	266
2020년	86,999	86,548	98	353
2021년	74,435	73,612	139	684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2021. 12. 1. 기준)

2. 상속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1]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세무회계과)은 2021. 12. 1. 감사일 현재 [별표 1] “상속 취득세 미부과 명세”와 같이 51명에 대해서 취득세 18,368천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3. 취득세 감면분 추징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특례법」 제17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 : 농지 1천분의 23, 농지외의 것 1천분의 28

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사후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고,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세무회계과)은 2021. 12. 1. 감사일 현재 [별표 2]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추징 명세”와 같이 장애인 차량 감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조합 등이 감면대상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감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경감한 취득세 8명 9,071천원을 추징하지 않고 있다.

4. 지하수 굴착신고 등록면허세 부과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24조에 따르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는 면허를 발급받는 자에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지하수 굴착행위의 신고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세무회계과)은 2021. 12. 1. 감사일 현재 [별표 3] “지하수 굴착신고 등록면허세 추징 명세”와 같이 굴착행위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19명 810천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부과(추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부과(추징) 누락된 취득세 등 28,249,890원을 부과(추징)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3] 생 략

전 라 남 도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관광용 자전거 등 물품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증도면, 임자면)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신안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물품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2년마다 정기 재물조사(2018년, 2020년)[1]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보유 중인 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수명이 다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 결정 및 처분 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표 1] 정기 재물조사 결과 보고 현황

(단위 : 천점, 억원)

연도	장부상 총재물	현품 실사결과			
		총재물	가액	초과품	부족품
2018	23	23	287	-	-
2020	33	33	440	-	-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재물조사 및 불용물품 처리 부적정

가. 재물조사 소홀 및 사후관리 부적정

1) 세무회계과-0000(2018.00.00.), 세무회계과-00000(2020.00.00.)

1)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재물조사 결과 물품이 훼손되었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재물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2018년, 2020년 정기재물조사 후 해당부서에서 없어진 물품에 대하여 경위서 징구, 사실 조사 등 객관적인 확인 및 보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세무회계과)은 2018년과 2020년 정기재물조사 후 해당부서에서 없어진 물품에 대하여 경위서 징구, 사실 조사 등 객관적인 확인 및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2020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검증을 위해서 종합감사 기간 중 표본조사한 결과 [표 2] “물품 실사 결과 현황”과 같이 신규로 구입한 전기자전거 100대가 조사에서 누락되었고, 노트북 등 폐기 여부를 알 수 없는 물품이 다수 존재하는 등 재물관리에 불신을 초래하였다.

[표 2] 물품 실사 결과 현황

(단위 : 건, 천원)

물품명	2020 재물조사	감사기간 재물실사	누락재물		사유
			건수	추정금액	
자전거 (전기)	-	100	100	100,000	○○○○과 구입 / ○○도 관리사업소(57), 대부(20), 기타(23) 등 관리 누락
노트북	65	61	△ 4	4,000	○○○○과, ○○○○과, ○○○○과, ○○면 자체 폐기처리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나. 불용물품 폐기절차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신안군 물품관리 조례」 제16조에 따

르면 물품관리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 등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신안군 물품관리 조례」제17조에 따르면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거나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불용 대상물품이 발생하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단가(장부가격) 등을 기준으로 군수 등의 결재를 받아 일괄적으로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고, 물품의 상태확인을 통하여 매각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며, 처분 시 매각절차를 우선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매각은 감정평가 후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공개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세무회계과)은 2018년과 2020년 정기재물조사 후 불용결정 시 군수 등의 결재를 받지 않고 [표 3] “불용물품 처분 현황(물품관리시스템 등록내역)”과 같이 없어진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시스템에 일괄 폐기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또한 불용물품에 대해 물품관리관(세무회계과장)이 일괄적으로 회수하여 불용결정 및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매각 또는 폐기하도록 하였다.

[표 3] 불용물품 처분 현황(물품관리시스템 등록내역)

(단위 : 점, 천원)

처분기간	처분물품	처분방법				
		매각		폐기		기타 (보관 등)
		개수	매각금액	개수	취득가액	
2018 재물조사 이후	70종, 260점	70	519,581	190	441,410	
2020 재물조사 이후	353종, 3,237점	49	344,620	3,188	3,387,839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관광용 자전거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안군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사업소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신안군은 2007년 ○○ 자전거섬 선포식 등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자전거 905대를 구입하여 ○○와 ○○도의 관광지에 물품관리 전환 후 비치하였다.[2)]

따라서 신안군은 자전거 구입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취득한 물품의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훼손이나 분실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안전건설과, 증도면, 임자면)은 [표 4] “관광용 자전거 구입 현황”과 같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구입한 905대 관광용 자전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불용절차 없이 임의로 폐기하거나 일실하였고, 2018년 재물조사에서는 이미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전거 694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조사하였다.

---

2) 건설재안관리과-0000(2010.00.00.), 건설재난관리과-0000(2010.00.00.), 임자면-00000(2012.00.00.), 증도면-0000(2013.00.00.)

[표 4] 관광용 자전거 구입 현황

(단위 : 대)

연도	합계	○○면	○○면
계	905	498	407
2007년	657	357	300
2010년	205	105	100
2012년	27	20	7
2013년	16	16	-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4. 물품 대부료 부과·징수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물품의 대부 시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신안군은 2020. 8월 [표 5] “물품 대부료 부과 현황”과 같이 전기자전거 20대를 관광상품 목적으로 대부[3]하였다.

따라서 신안군은 전기자전거를 대부할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산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문화관광과)은 2020. 8월 [표 5] “물품 대부료 부과 현황”과 같이 자전거 20대를 대부하면서 업무연찬을 소홀히 하여 물품 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대부료만 부과하여 1,200천원의 대부료를 부과 누락하였다.

[표 5] 물품 대부료 부과 현황

물품명	대부자	대부기간	대부목적	대부료(원)	대부료 산출근거
전기자전거 20대	○○○	2020.00.00.~ 2022.00.00	자전거 대여 (관광 상품)	240,000	1,200,000원(평정가) × 20대 ×10/1000(요율)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문화관광과-00000(2021.00.00.) 공유재산 사용 허가(○○면 전기자전거 20대)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위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용절차를 준수하며, 대부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부과(추징) 누락된 대부료 1,200천원을 부과(추징) 조치하고, 재물조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며**(시정)**

② 관광용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 라 남 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신안 ○○○○박물관 매입 및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문화관광과)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장 ○○○의 40년 ○○○○ 공예활동 계승 및 홍보를 통하여 전승기반 구축 및 공예산업 활성화,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표 1] “신안 ○○○○박물관 매입 현황”과 같이 ○○○○박물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추진하였다.

[표 1] 신안 ○○○○박물관 매입 현황

(단위 : 원)

명칭	재산종류	취득일자	취득목적	취득금액	비고
신안 ○○○○박물관	행정재산 (공공용)	2019.00.00.	박물관 조성	364,001,680 (군비)	토지 228,690,000 건물 135,311,680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유재산 취득 절차 및 목적외 사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

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전통자수박물관 추진계획이 취소되었거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고, 행정재산의 취득 시 그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문화관광과)은 2019년 연초 ○○○○박물관 추진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는데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에서 추진했던 계획에 의거 세출예산의 목적 및 계획과 다른 물건을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취득하였다.

또한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매입한 ○○읍 ○○○○○을 2021. 12. 1. 감사일 현재 일부만 ○○○○ 기사 휴게소로 사용하고 대부분은 특별한 용도 없이 방치하는 등 당초 취득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당초 목적과는 다른 물건을 취득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원칙(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을 위반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공유재산 공제 미가입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물·선박 및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등의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건물·선박 및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나

풍수, 설해,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재산권의 안정적 확보와 시설이용자들의 안전을 담보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문화관광과, 세무회계과)은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매입한 ○○읍 ○○○○○에 대하여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위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조속한 시일에 공제에 가입하겠고, 향후 전통자수박물관 추진 시 절차를 숙지하여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제에 반드시 가입하여 화재나 풍수, 설해,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산권의 안정적 확보와 시설이용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고**(시정)**

② 앞으로 당초 계획했던 세출예산의 목적에 맞게 공유재산을 취득·사용하고, 계획과 다른 물건을 취득 시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미통보**

관계기관(부서)　신안군(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섬발전진흥과,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 ○○-○○간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22조 및 제4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광업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부서)의 장은 통보를 받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 면적 등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기관(부서)에 통보하고, 부과·징수기관(부서)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인·허가 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부과금액·납부기간 등에 관한 통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 징수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인·허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 되는 인·허가 내용을 20일 이내에 전라남도(기후생태과)에 통보하여 자연훼손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안전건설과 등 5개 부서)은 2019년부터 2021. 10월까지 [표]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사업 현황”과 같이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인 ○○ ○○-○○간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5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인·허가)을 하고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전라남도(기후생태과)에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156,017,850원을 부과·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사업 현황(2019~2021.10월)

(단위 : ㎡, 원)

사업명	사 업 시행자	면적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협의일	인허가일	협력금 미부과금액	비고
	계	5건			156,017,850	

사업명	사 업 시행자	면적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협의일	인허가일	협력금 미부과금액	비고
○○ ○○-○○간 우회도로 개설사업	○○○	70,347	2020.00.00.	2020.00.00.	29,494,800	안전건설과
신안군 ○○○○저수지 시설사업(○○면)	○○○	96,048	2021.00.00.	2021.00.00.	92,961,750	상하수도 사업소
○○ ○○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	31,480	2019.00.00.	2020.00.00.	6,374,400	섬발전진흥과
○○○ ○○○ ○○○○&○○○ 조성사업	㈜○○ ○○	39,929	2020.00.00.	2020.00.00.	11,689,200	민원봉사과
신안 ○○○○장 조성사업	○○○	53,559	2020.00.00.	2020.00.00.	15,497,700	행정지원과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생태보전협력금 미부과 사업 5건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156,017,850원이 부과·징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 라 남 도

훈계·개선요구

제　　목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업무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세계유산과)

훈 계 대 상 자 신안군 ○○○○과 지방○○서기 ○○○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 소각시설 가동중단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692,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지방○○서기 ○○○은 2020.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과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지역 내 폐기물 처리 및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소관사무로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30조에 따르면 계약체결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을 제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지역 내 폐기물 처리 및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비용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별다른 사유 없이 추정가격을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세계유산과)은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별표] “○○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 명세”와 같이 매년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군 생활폐기물 처리 담당부서(세계유산과) 예산으로 편성된 ○○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를 매월 ○○관리사무소에 예산 재배정하여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105건, 650,970천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로 인하여 동종 업체에 대한 공정한 입찰 참여기회를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2인 이상 경쟁(낙찰 하한율 87.745%)을 통해 67,906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 용역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서기 ○○○을 훈계하고**(훈계)**

② 앞으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추진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을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세계유산과)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개발행위 또는 건축허가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안내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이행 여부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확인 등의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1](이하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행정처분의 기준 2-다-2)-가)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1) 건설업 :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축조공사, 공사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조경공사, 연면적 3,000㎡ 이상인 조경공사,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사용중지 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92조 제4의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9조에 따르면 점검기관은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 유해화학물질, 악취 등 무허가 또는 미신고(이하 “무허가사업장”이라 한다)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및 건설공사현장의 적발 및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뿐만 아니라 미신고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을 통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세계유산과)은 2018년 11월부터 2021.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면적(11,180,000㎡) 등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도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관련부서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여 [별표]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명세”와 같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16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그로 인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62건)이 발생하는 등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계획 수립 시 무허가사업장을 점검계획에 누락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개발행이 인·허가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도·점검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징계·훈계요구

제 목 용역 적격심사 등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세무회계과)

징 계 대 상 자 신안군 ○○○○과 지방○○주사보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신안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8. 11월부터 2021. 10월까지 [표 1] “최근 3년간 계약 현황”과 같이 6,641건 733,567,383천원 상당의 공사, 용역, 물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최근 3년간 계약 현황(2018.11월~2021.10월)

(단위 : 천원)

년도	소계		공사		용역		물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641	733,567,383	2,837	536,918,079	2,219	104,813,831	1,585	91,835,473
2018.11~12월	328	14,512,408	154	9,519,794	104	2,345,635	70	2,646,979
2019년	2,419	274,312,216	1,058	207,511,460	863	35,899,080	498	30,901,676
2020년	2,283	230,092,136	942	160,651,286	775	37,742,056	566	31,698,794
2021.1~10월	1,611	214,650,623	683	159,235,539	477	28,827,060	451	26,588,024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보 ○○○은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용역계약 업무담당자로, 지방○○주사 ○○○은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계약 등을 담당하는 경리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2. ○○○ ○○공원 조성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절 낙찰자 결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이행실적,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 4개 항목을 적격심사하여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신안군이 2019. 00. 00. 입찰공고한 ○○○ ○○공원 조성 위한 신안군 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용역(이하 “○○○ 군관리계획 용역”이라 한다) 공고문 및 적격심사평가서에 따르면 적격심사와 관련한 이행실적 평가시 평가대상 인정업종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으로 하여 해당 실적금액의 합계가 추정가격 189,090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은 10점을, 50% 이상은 9점을, 40% 이상은 7점을, 40% 미만은 6점을 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을 입찰 공고하여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제출한 최근 3년간의 이행실적이 공고문에 명시한 평가대상 인정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신안군(세무회계과)은 2019. 00. 00. ○○○ 군관리계획 용역을 입찰공고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에 대하여 같은 해 00. 00. 적격심사를 하면서

㈜○○가 최근 3년간 용역실적으로 제출한 10건의 223,497천원 중에서 [표 2] “적격심사 대상 업체 ㈜○○의 최근 3년간 용역 이행실적 제출 현황”과 같이 공고문에 명시한 이행실적 인정 업종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과 동일한 이행실적은 3건에 86,772천원으로 ○○○ 군관리계획 용역 입찰 공고 상 추정가격 189,090천원의 45.88%에 해당되어 해당 비율의 등급(C등급) 점수인 7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제출된 실적 모두를 동일한 이행실적으로 인정하여 추정가격 189,090천원 대비 118.19%로 계산한 후 해당 비율의 등급(A등급) 점수인 10점을 부여[2]하였다.

[표 2] 적격심사 대상 업체 ㈜성우의 최근 3년간 용역 이행실적 제출 현황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신안군 이행실적 인정 부적정 평가	전라남도 감사관 정당 평가
계	10건	223,497	10건 223,497	3건 86,772
○○○○시장 제○○○주차장 조성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 설계용역	2016.00.00.~2017.00.00.	42,028	42,028	42,028
○○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	2018.00.00.~2018.00.00.	18,600	18,600	18,600
○○○○공원묘지 및 자연장지 조성사업 계획변경 용역	2018.00.00.~2018.00.00.	19,285	19,285	
○○읍 ○○~○○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도시관리계획결정)	2018.00.00.~2019.00.00.	26,144	26,144	26,144
○○○지구 교통체계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17.00.00.~2018.00.00.	82,026	82,026	
○○○ ○○○○ 조경보완공사 실시설계 용역	2019.00.00.~2019.00.00.	8,503	8,503	
○○○ ○○○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2019.00.00.~2019.00.00.	7,994	7,994	
2019 ○○○○ ○○○(가로수)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2019.00.00.~2019.00.00.	6,760	6,760	
○○○ ○○○○ 보완공사 실시설계 용역	2019.00.00.~2019.00.00.	5,887	5,887	
2018년 ○○○○○ ○○○ 복원공사 실시설계 용역	2018.00.00.~2018.00.00.	6,270	6,270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입찰 참가자 ㈜○○는 이행실적을 정당하게 평가하였더라면 종합평점이 92.8점이 되어 낙찰자 결정 하한 점수인 95점 미달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아야 했는데도 이행실적을 과도하게 인정함에 따라 [표 3] “적격심사 부적

2) 용역계약 적격심사 결과보고(2019.00.00., 세무회계과-00000) 기안 담당자 ○○○, 검토 경리담당 ○○○, 세무회계과장 ○○○, 결재 행정복지국장 ○○○

정 및 정당 평가 현황”과 같이 95.8점이 되어 낙찰자[3]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 3] 적격심사 부적정 및 정당 평가 현황

평가분야	심사항목	배점	신안군 부적정 평가	전라남도 감사관 정당 평가
계			95.8	92.8
수행능력	이행실적	10	10	7
	경영상태	10	10	10
입찰가격	입찰가격	80	75.8	75.8
기술인력		-10	-	-
계약질서 준수		-1.0	-	-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다.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지방○○주사보 ○○○은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용역계약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은 ○○○ 군관리계획 용역 적격심사 대상업체인 ㈜○○가 용역실적으로 제출한 10건의 223,497천원 중에서 공고문에서 명시한 이행실적 인정 업종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과 동일한 이행실적은 3건에 86,772천원으로 ○○○ 군관리계획 용역 입찰 공고 상 추정가격 189,090천원의 45.88%에 해당되어 해당 비율의 등급(C등급) 점수인 7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제출된 실적 모두를 동일한 이행실적으로 인정하여 추정가격 189,090천원 대비 118.19%로 계산한 후 해당 비율의 등급(A등급) 점수인 10점을 부여하는 등 적격심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입찰 참가자 ㈜○○는 이행실적을 정당하게 평가하였더라면 종합평점이 92.8점이 되어 낙찰자 결정 하한 점수인 95점 미달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아야 했는데도 이행실적을 과도하게 인정함에 따라 95.8점이 되어 낙찰자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3) 계약기간 2019.00.00.~2020.00.00., 계약금액 183,825천원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절 낙찰자 결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이행실적,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 4개 항목을 적격심사하여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신안군이 2020. 00. 00. 입찰공고한 ○○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이하 “군관리계획 용역”이라 한다) 공고문 및 적격심사평가서에 따르면 적격심사와 관련한 이행실적 평가 시 평가대상 인정업종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으로 하여 해당 실적금액의 합계가 추정가격 132,727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은 10점을, 50% 이상은 9점을, 40% 이상은 7점을, 40% 미만은 6점을 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을 입찰 공고하여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제출한 최근 3년간의 이행실적이 공고문에 명시한 평가대상 인정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신안군(세무회계과)은 2020. 00. 00. 군관리계획 용역을 입찰 공고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 주식회사에 대하여 같은 해 00. 00. 적격심사를 하면서 ○○○○○ 주식회사가 최근 3년간 용역실적으로 제출한 2건의 78,515천원 중에서 [표 4] “적격심사 대상 업체 ○○○○○ 주식회사의 최근 3년간 용역 이행실적 제출 현황”과 같이 공고문에 명시한 이행실적 인정 업종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과 동일한 이행실적이 없어 이행실적 평가점수를 최하등급(D등급) 점수인 6점으로 부여해야 하는데도 제출된 실적 모두를 인정하여 추정가격

132,727천원 대비 59.15%로 계산한 후 해당 비율의 등급(B등급) 점수인 9점을 부여하였다.

[표 4] 적격심사 대상 업체 ○○○○○ 주식회사의 최근 3년간 용역 이행실적 제출 현황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신안군 이행실적 인정 부적정 평가	전라남도 감사관 정당 평가
계	2건	78,515	2건 78,515	0건 0
○○○ 관광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및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	2018.00.00.~2018.00.00.	32,467	32,467	
○○○ ○○○○ 실시설계 및 실시 계획인가 용역	2019.00.00.~2020.00.00.	46,048	46,048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입찰 참가자 ○○○○○ 주식회사는 이행실적을 정당하게 평가하였더라면 종합평점이 93점이 되어 낙찰자 결정 하한 점수인 95점 미달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아야 했는데도 이행실적을 과도하게 인정함에 따라 [표 5] “적격심사 부적정 및 정당 평가 현황”과 같이 97점이 되어 낙찰자[4]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 3] 적격심사 부적정 및 정당 평가 현황

평가분야	심사항목	배점	신안군 부적정 평가	전라남도 감사관 정당 평가
계			97	93
수행능력	이행실적	10	10	6
	경영상태	10	10	10
입찰가격	입찰가격	80	77	77
기술인력		-10	-	-
계약질서 준수		-1.0	-	-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다.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지방○○주사보 ○○○은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용역계약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4) 계약기간 2020.00.00.~2021.00.00., 계약금액 126,218천원

○○○은 군관리계획 용역 적격심사 대상업체인 ○○○○ 주식회사가 용역실적으로 제출한 2건의 78,515천원 중에서 공고문에서 명시한 이행실적 인정 업종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과 동일한 이행실적이 없어 이행실적 평가점수를 최하등급(D등급)의 점수인 6점으로 부여해야 하는데도 제출된 실적 모두를 동일한 이행실적으로 인정하여 추정가격 132,727천원 대비 59.15%로 계산한 후 해당 비율의 등급(B등급) 점수인 9점을 부여하는 등 적격심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입찰 참가자 ○○○○○ 주식회사는 이행실적을 정당하게 평가하였더라면 종합평점이 93점이 되어 낙찰자 결정 하한 점수인 95점 미달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아야 했는데도 이행실적을 과도하게 인정함에 따라 97점이 되어 낙찰자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4. 일감 몰아주기 등 입찰 회피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으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절 낙찰자 결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이행실적,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 4개 항목을 적격심사하여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발주부서가 같은 날짜에 계약의뢰 한 건이 여러 건이라 하더라도 단일사업이면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특

정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 등을 하지 않고 입찰 공고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신안군(세무회계과)은 2019. 00. 00. ○○○○과에서 계약의뢰한 5건의 2019년 ○○○○○○○ 용역이 단일사업이면서 추정가격이 154,410천원이므로 입찰 공고를 해야 하는데도 같은 해 00. 00. ○○○○○(주)와 5건으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5]을 체결하는 등 발주부서가 2019. 1. 1.부터 2021. 10. 30.까지 최근 3년 동안 단일사업인 13건 1,352,346천원의 용역계약을 의뢰한 건에 대해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별표] “입찰 대상 용역 건 특정업체와 1인 견적 분할 수의 계약 등 부적정 명세”와 같이 32건으로 분할하여 ○○○○○(주) 등 13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 인하여 예정가격 대비 제한 최저율인 87.745%를 적용하는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낙찰율을 90%로 적용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표 6] “1인 견적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및 예산낭비 현황”과 같이 48,173천원의 예산이 낭비가 되었고, 용역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불특정 업체들의 입찰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6] 1인 견적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및 예산낭비 현황(2019.1월~2021.10월)

(단위 : 건, 천원)

일반입찰 공고 대상		신안군 1인 견적 수의계약			제한 최저율 (87.745%) 적용 시 계약금액(B)	예산낭비 금액(B-A)
건수	예정가격	건수	계약금액(A)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		
13	1,352,346	32	1,234,789	90%	1,186,616	48,173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다.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지방○○주사보 ○○○은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용역계약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은 2019. 00. 00. ○○○○과가 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3건(○○

5) 계약기간 2019.00.00.~2020.00.00., 계약금액 152,865천원

○○○공원, ○○ ○○○공원, ○○ ○○○공원) 149,600천원의 계약을 의뢰하면서 특정업체 지정 등 수의 1인 견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의뢰를 하지 않았는데도 2019. 00. 00. 이를 임의로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과 3건으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발주부서가 2019. 1. 1.부터 2021. 10. 30.까지 최근 3년 동안 단일사업인 13건 1,352,346천원의 용역 계약을 의뢰한 건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32건으로 분할하여 ○○○○○(주) 등 13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예정가격 대비 제한 최저율인 87.745%를 적용하는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낙찰율을 90%로 적용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48,173천원의 예산이 낭비가 되었고, 용역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불특정 업체들의 입찰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앞으로 용역 계약 추진 시 지방계약 법령 등을 연찬하여 적격심사를 면밀히 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용역 적격심사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의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에 위배 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용역 적격심사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주사보 ○○○을「지방공무원법」제72조에 따라 경징계하고(**징계**)

② 용역 적격심사 등 계약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기 관 경 고

제　　목　기성타절 등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

관계기관(부서) 신안군(세계유산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가고싶은 섬 지원단, 교통지원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섬발전진흥과, 신재생에너지과)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8. 11. 1.부터 2021. 10. 30.까지 최근 3년 동안 28건 14,976,184천원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1,028,841천원에 계약해제 등 기성타절 하였다.

2. 민선7기 군정인수위원회 요청사항 검토 및 계약해제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해당 사업 부지의 지형 변경 등으로 해당 사업 추진에 따른 군 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교통지원과)은 ○○～○○ 간 대형버스 등 원활한 물류수송은 물론 안정적인 바닷길 제공을 위하여 2017. 00. 00. (사)○○○○연구원과 350톤급 여객선 운항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1]을 거쳐 같은 해 00. 00. ㈜○○○○○

1) 계약기간 2017. 00. 00.～2017. 00. 00., 계약금액 17,550천원

○ 업체와 350톤급 여객선 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2]을 완수하고. 2018. 00. 00. 350톤 여객선 건조사업을 ㈜○○○○○과 계약을 체결[3](이하 “위 계약”이라 한다)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8. 00월 경(날짜는 알지 못함) 민선7기 군정인수위원회에서 위 계약에 대하여 중지 요청을 하자 같은 해 00. 00. 세무회계과에 사업중지 요청[4]을 하였고, 같은 해 00. 00. 세무회계과가 위 계약 건에 대하여 물품계약 정지결정 통보[5]를 한 이후 같은 해 00. 00. 위 물품계약 해제 검토보고[6]를 하면서 2017. 00. 00. 과업을 완수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수심 깊이가 15m 이내로 저수심 관련 개선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표 1]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보고서와 다르게 물품계약 해제 검토 부적정 현황”과 같이 군정인수위원회의 요청사항 의도에 맞게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에 반하여 수심 깊이가 1m 이하여서 개선사업비가 약 2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면서 물품 계약을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한 후 2018. 00. 00. 위 계약 및 책임감리용역 계약 해제[7] 통보를 하였다.

[표 1]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보고서와 다르게 물품계약 해제 검토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운영비	수심 깊이	
		수심 깊이	저수심 관련 개선사업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보고서	676,588	15m 이내	-
물품계약 해제 검토보고서	789,500	1m 이하	약 2,500,000

자료 : 전라남도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후 2018. 00. 00. ㈜○○○○○이 과업 수행에 따른 투입된 인력, 자재비 등 투입금액 등으로 총 373,728천원을 요구하자 2019. 00. 00. 위 계약이 양방향 차도선 건조사업으로 설계변경[8] 되었다는 사유로 요구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00. 00. 위 계약 추진 등 협의기간(변경 납품기한 연장, 당초 2019.

2) 계약기간 2017. 00. 00.~2018. 00. 00., 계약금액 156,185천원

3) 계약기간 2018. 00. 00. ~ 2019. 00. 00., 계약금액 4,040,600천원

4) 350톤급 여객선 건조계약 사업중지 요청(시설관리사업소-0000, 2018. 00. 00.)

5) 물품계약 정지결정 통보(350톤급 여객선 건조계약)(세무회계과-00000, 2018. 00. 00.)

6) 350톤급 여객선 건조 및 책임감리용역 계약해제 보고(교통지원과-0000, 2018. 00. 00.)

7) 350톤급 여객선 건조 및 책임감리용역 ‘계약 해제’ 통보(교통지원과-0000, 2018. 00. 00.)

8) 350톤급 여객선 건조사업 설계변경(양방향 차도선) 추진계획(교통지원과-0000, 2019. 00. 00.)

00. 00.에서 2019. 00. 00.까지로 변경)이 ㈜○○○○○○와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협의가 되었다고 하여 물품계약 정지해지통보[9]를 하였고, 같은 해 00. 00. ㈜○○○○○○이 신안군에서 물품계약에 대한 정지해지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물품계약 해제 건이 다시 소급하여 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자 같은 해 00. 00. 계약 해제[10]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은 신안군과 기성 타절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00. 00. 신안군수를 상대로 과업 수행을 위해 그동안 투입되었던 354,082천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11]을 제기하였다.

그로 인하여 같은 해 00. 00. 위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입한 550,016천원(타당성 조사 용역 17,550천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56,185천원, 위 여객선 350톤급 건조 계약에 대한 기성 타절 추정 금액 354,082천원, 책임감리용역[12] 기성타절 22,199천원) 등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3. 충분한 사업 타당성 등 검토없이 사업추진으로 기성타절 남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사회 간접 자본 등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 가능성과 변경 가능성, 사업부지 확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준비하여 향후 계약에 따른 과업 수행 중에 사업계획 취소 등에 따른 기성타절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9) 물품계약 정지해지 통보(세무회계과-0000, 2019. 00. 00.)

10) 350톤급 여객선 건조계약 관련 계약해제 및 정지해지에 대한 이해촉구건 회신(교통지원과-00000, 2019. 00. 00.)

11) 사건번호 2019가합000000 손해배상(기), 담당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00민사부(합의)

12) 용역명 : 350톤급 여객선 건조 책임감리용역, 계약상대자 : ㈜○○○○○기술, 계약일자 : 2018. 00. 00., 계약금액 129,074천원, 계약기간 : 2018 00. 00.~2019. 00. 00.

그런데 신안군(문화관광과 등 9개 부서)은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사업부지 확보 등 이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과업 수행 중에 사업부지 부재 등 사유로 기성 타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신안 ○○○○○○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이행해야 할 용역(기본 및 실시설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 인허가) 계약을 유한회사 ○○ 등 3개 업체와 체결(계약금액 117,344천원)하여 과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부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101,793천원에 기성 타절하였고, 신안군 ○○○○○처리시설 구매 제작설치 계약을 ㈜○○○○○와 체결(계약금액 6,980,000천원)하여 과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 부지가 없다는 사유로 58,669천원에 기성 타절하는 등 2018. 11. 1.부터 2021. 10. 30.까지 [표 2] “용역 등 계약 건 기성타절 부적정 현황”과 같이 최근 3년 동안 17건 7,702,265천원의 계약 건에 대해 사업부지 변경 등 사유로 기성을 타절하여 타절금액 390,589천원 만큼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용역 등 계약 건 기성타절 부적정 현황(2018.11월~2021.10월)

(단위 : 천원)

계 약 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타절일자	타절금액	타절사유
계	17건	7,702,265		390,589	
신안군 ○○○○○ 처리시설 구매 제작설치	㈜○○○○○	6,980,000	2020.00.00.	58,669	사업부지 부재
신안 ○○○○○○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유한회사 ○○	78,923	2019.00.00.	67,494	사업부지 변경
○○ ○○(○○○)지구 가뭄항구대책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주식회사 ○○○○	39,264	2021.00.00.	1,157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과 중복으로 타절
신안 ○○○○○○장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 엔지니어링	22,271	2019.00.00.	19,853	사업부지 변경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주)○○○○	33,965	2021.00.00.	145	도 감사지적에 따른 포장사업 취소로 인한 폐기물처리 취소
『가고 싶은섬 가꾸기』○○○○○○ 실시설계용역	(유)○○건축사사무소	40,663	2019.00.00.	12,198	별도 건축물 안전성 평가, 진단 결과 반영
신안 ○○○○○○장 조성사업 산지전용 인허가 용역	유한회사 ○○ 엔지니어링	16,150	2019.00.00.	14,446	사업부지 변경
신안 ○○○○○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사사무소	50,908	2020.00.00.	9,100	사업계획 변경
○○ 구 ○○초등학교 리모델링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축사사무소 ○○○○(주)	65,289	2021.00.00.	28,138	사업계획 취소
대한민국 ○○○○○○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 건축사사무소	43,758	2020.00.00.	30,630	사업계획 변경
○○면 ○○○○형 보건지소 기능 보강사업 설계 용역	○○○○ 건축사사무소	34,867	2020.00.00.	17,354	사업계획 변경

계 약 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타절일자	타절금액	타절사유
신안군 응급환자 수송 ○○○ ○○○선 건조 실시설계 용역	㈜○○○○설계	18,216	2020.00.00.	11,840	사업취소
○○ ○○마을 공동작업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주)○○건축사사무소	11,293	2020.00.00.	3,011	사업계획 변경
대한민국 ○○○○○○관 리모델링 공사 구조안전진단 설계 용역	○○○○ 건축사사무소	35,460	2020.00.00.	13,376	사업계획 변경
○○ ○○항 정박지(안벽)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주)○○건설	78,719	2021.00.00.	47,200	연계사업(선박리모델링) 2~3년 소요
신안 ○○○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 주식회사	126,219	2021.00.00.	50,478	사업비 과다
○○ ○○○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건축사사무소	26,300	2020.00.00.	5,500	사업계획 변경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신안 ○○○○○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대한민국 ○○○○○○○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면 ○○○○형 보건지소 기능 보강사업 설계용역’ 등 4건의 계약의 경우 사업 부지가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대상지로 변경되는 등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기성타절하게 되었고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안군은 위 4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가능성과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였더라면 과업 수행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가 되지 않아 기성 타절 등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위 4건의 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그 간의 업무처리 관행대로 무분별하게 계약을 추진하여 과업 수행 중에 해당 사업부지가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대상지로 변경되는 등 과업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를 기성 타절하여 70,460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신안군은 위 4건의 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을 태만히 하여 추진함으로써 기성 타절 등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신안군이 위 4건의 용역 계약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성타절한 사항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앞으로 군정인수위원회의 업무중지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의도에 맞게 부당하게 검토하여 부적정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 가능성과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계약에 따른 과업 수행 중에 사업부지 변경 등 사유로 기성타절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기관경고)**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주민복지과, 교육복지과, 민원봉사과)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아동수당·가족양육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아동수당법」 제4조, 제13조 및 제16조,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사업안내」 제6편 수급자관리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보건복지부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Ⅸ. 보육 예산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하되,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수급 아동과 영유아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교육복지과)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표 1] “국외체류 대상자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90일 이상 국외체류 대상자인 ○○면 ○○○ 등 8명에게 3,30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1] 국외체류 대상자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과다 지급 현황(2018.11월~2021.10월)

(단위 : 원)

구분	성명	주 소 (읍면동)	생년월일	출국일자	90일 시점	과다 지급		
						지급기간	개월	금액
계	8명							3,300,000
아동수당	6명							1,600,000
	○○○	○○면	2017.00.00.	2018.02.17.	2018.05.17.	2018.09.~2019.05.	9	900,000
	○○○	○○면	2017.00.00.	2019.05.23.	2019.08.20.	2019.09.~2019.11.	3	300,000
	○○○○	○○면	2018.00.00.	2020.10.03.	2020.12.31.	2021.01.	1	100,000
	○○○	○○면	2014.00.00.	2019.01.17.	2019.04.16.	2019.05.	1	100,000
	○○○	○○면	2015.00.00.	2019.01.04.	2019.04.03.	2019.05.	1	100,000
	○○○	○○면	2018.00.00.	2018.12.11.	2019.03.10.	2019.04.	1	100,000
가정양육수당	2명							1,700,000
	○○○	○○면	2017.00.00.	2018.02.17.	2018.05.17.	2018.07.~2019.04.	10	1,500,000
	○○○	○○면	2016.00.00.	2017.11.25.		2019.03.25.	1	200,000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신규 기초연금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기초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등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

으려는 사람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최장 60일)이내에 가구별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요건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주민복지과)은 2018년 11월까지 2021년 10월까지 신규 기초연금 수급자인 ○○면에 거주하는 ○○○ 등 2명에게 [표 2] “신규 기초연금 과다·과소지급 현황”과 같이 114,510원을 과다, 480,00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2] 신규 기초연금 과소·과다지급 현황(2018.11월~2021.10월)

(단위 : 원)

구분	성명	주 소 (읍면동)	생년월일	최초 신청일	월 지급액	최 초 지급일	총 지급액	과다·과소 지급	
								개월	금액
과다	○○○	○○면	1955.00.00.	2020.01.08.	89,290	2020.02.25.	293,090		114,510
과소	○○○	○○면	1951.00.00.	2020.09.16.	240,000	2020.11.25.	240,000	2	480,000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제소득 미반영 지원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소득·재산이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시장·군수는 매년 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의 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그 밖의 금품은 수급자의 실제소득[1]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3편 조사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자동연계[2]되지 않는 보훈명예수당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금, 이·통장 직책수당 등은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금액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급자의 실제소득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신안군은 「신안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만 65세 이상부터 79세 이하 월 7만원, 만 80세 이상부터 89세 이하 월 15만원, 만 90세 이상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연 1회 이상 수급자의 소득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자체 지원금 현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에 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주민복지과)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실제소득에 미산정하여 [표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읍에 거주하는 ○○○ 등 14명에게 생계급여 9,92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

1)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 이전소득,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2)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수급자의 소득에 자동 반영되나, 지자체 지원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별도의 조사 및 자료 입력 필요

[표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과다 지급 현황(2018.11월~2021.10월)

(단위 : 원)

성명	주 소 (읍면동)	생년월일	지자체 지원금 지급 현황				과다 지급	
			구분	지급 개시	지급 최종	월 지급액	개월	금액
14명								9,920,000
○○○	○○읍	1948.00.00.	참전명예수당(도)	2021.07.	2021.10.	20,000	4	80,000
○○○	○○읍	1949.00.00.	참전명예수당	2019.05.	2020.12.	70,000	20	1,400,000
			참전명예수당(도)	2021.01.	2021.10.	20,000	10	200,000
○○○	○○면	1930.00.00.	참전명예수당	2020.09.	2020.12.	150,000	4	600,000
			참전명예수당(도)	2021.01.	2021.10.	20,000	10	200,000
○○○	○○면	1930.00.00.	참전명예수당(도)	2021.01.	2021.10.	20,000	10	200,000
○○○	○○면	1948.00.00.	참전명예수당	2018.11	2018.12.	50,000	2	100,000
			참전명예수당	2019.01.	2020.12.	70,000	24	1,680,000
			참전명예수당(도)	2021.01.	2021.10.	20,000	10	200,000
○○○	○○면	1948.00.00.	참전명예수당	2020.01.	2020.12.	70,000	12	840,000
			참전명예수당(도)	2021.01.	2021.10.	20,000	10	200,000
○○○	○○면	1931.00.00.	참전명예수당(도)	2021.03.	2021.10.	20,000	8	160,000
○○○	○○면	1932.00.00.	참전명예수당	2021.02.	2021.10.	70,000	9	630,000
○○○	○○면	1933.00.00.	참전명예수당	2021.06.	2021.10.	70,000	5	350,000
○○○	○○면	1932.00.00.	참전명예수당	2021.01.	2021.10.	70,000	10	700,000
○○○	○○면	1935.00.00.	참전명예수당	2021.06.	2021.10.	70,000	5	350,000
○○○	○○면	1933.00.00.	참전명예수당	2021.01.	2021.10.	70,000	10	700,000
○○○	○○면	1931.00.00.	참전명예수당	2021.02.	2021.10.	70,000	9	630,000
○○○	○○읍	1931.00.00.	참전명예수당	2021.01.	2021.10.	70,000	10	700,000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신규 수급권자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4편 급여의 실시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복지급여 신청을 성실하게 하였는데도 보장기관이 반영을 누락하는 등 그 귀책사유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복지급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하여 지급하며, 과다 지급된 급여는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주민복지과)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된 ○○면에 거주하는 ○○ 등 3명에게 [표 4] “신규 생계급여 과소 지급 현황”과 같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4,330,46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4] 신규 생계급여 과소 지급 현황(2018.11월~2021.10월)

(단위 : 명, 원)

성명	주 소 (읍면동)	신청일	월 지급액	최초		과소 지급	
				지급일	지급액	개월	지급액
3명							4,330,460
○○	○○면	2019.11.05.	527,160	2020.02.20.	527,160	3	1,551,380
○○○	○○읍	2019.12.17.	407,810	2020.03.20.	407,810	3	1,197,600
○○○	○○읍	2020.07.09.	527,160	2020.10.20.	527,160	3	1,581,480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9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에는 임차(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 안내」 제4편 주거급여의 실시에 따르면 입원일을 기준으로 90일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임차급여를 제외하고, 90일이상 입원으로 인하여 주거급여 지급제외 사유가 발생한 달에 퇴원했어도 다음달 급여를 미지급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수급자의 주거실태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거

급여 대상 가구원 전체가 3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한 경우에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민원봉사과)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주거급여 대상자 중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장기 입원자에 대한 주거급여를 중단하지 않아 [표 5]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면 ○○○ 등 13명에게 총 3,579,8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또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더라도 입원 3개월과 퇴원 후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표 6]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과소 지급 현황”과 같이 ○○읍 ○○○ 등 5명에게 2,814,600원의 주거급여를 과소 지급하였다.

[표 5]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과다 지급 현황(2018.11월~2021.10월)

(단위 : 원)

성명	주 소 (읍면동)	생년월일	월 지급액	최종 지급일	입원일	퇴원일	과다지급		
							기간	개월	지급액
13명									3,579,800
○○○	○○면	1931.00.00.	94,800	2020.07.20.	2020.01.01.	2021.06.30.	2020.04.~07	4	379,200
○○○	○○면	1933.00.00.	94,800	2020.08.20.	2020.02.28.	2020.05.29.	2021.06	1	94,800
○○○	○○면	1945.00.00.	97,800	2021.01.20.	2020.08.04.	2021.02.28.	2020.12.~2021.01	2	192,600
○○○	○○면	1937.00.00.	97,800	2021.04.20.	2020.11.05.	2021.02.28.	2021.04	1	97,800
○○○	○○면	1967.00.00.	88,200	2021.09.17.	2019.02.27.	2019.09.30.	2019.06. ~ 09.	4	352,800
○○○	○○읍	1986.00.00.	97,800	2021.06.18.	2020.12.23.	2021.07.22.	2021.04. ~ 06.	3	293,400
○○○	○○면	1952.00.00.	88,200	2021.09.17.	2019.01.30.	2019.09.09.	2019.05. ~ 09.	5	441,800
○○○	○○면	1972.00.00.	94,800	2020.07.20.	2020.02.11.		2020.06. ~ 07.	2	189,600
○○○	○○읍	1964.00.00.	97,800	2021.08.20.	2021.03.25.		2021.07. ~ 08.	2	195,600
○○○	○○면	1940.00.00.	97,800	2021.05.20.	2020.12.04.		2021.04. ~ 05.	2	195,600
○○○	○○면	1941.00.00.	88,200	2019.09.20.	2019.03.13.		2019. 07. ~ 09.	3	264,600
○○○	○○면	1935.00.00.	88,200	2019.10.20.	2019.06.24.		2019.10.	1	88,200
○○○	○○읍	1960.00.00.	88,200	2019.09.20.	2018.10.01.		2019.01. ~ 09.	9	793,800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6]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과소 지급 현황(2018.11월~2021.10월)

(단위 : 원)

성명	주 소 (읍면동)	생년월일	월 지급액	최종 지급일	입원일	퇴원일	과소지급		
							기간	개월	지급액
5명									2,814,600
○○○	○○읍	1995.00.00.	88,200	2019.10.18.	2019.08.14.		2019.11.	1	88,200
○○○	○○면	1933.00.00.	94,800	2020.08.20.	2020.02.28.	2020.05.29.	2020.9.~2021.9	13	1,259,400
○○○	○○면	1945.00.00.	97,800	2021.01.20.	2020.08.04.	2021.02.28.	2021.03. ~09.	7	684,600
○○○	○○면	1937.00.00.	97,800	2021.04.20.	2020.11.05.	2021.02.28.	2021.05. ~09.	5	489,000
○○○	○○면	1931.00.00.	97,800	2020.07.20.	2020.01.01.	2021.06.30.	2021.07.~09	3	293,400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장제급여 지급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제4편 급여의 실시에 따르면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를 실제로 실시하는 사람에게 1가구당 750,000원(2020년부터 800,000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제를 책임진 자가 장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장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주민복지과)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사망자의 수급자 가족 또는 장례를 책임진 자에게 부양가족이나 실제 장례를 책임진 자에게 적극적으로 장제급여 신청을 안내하지 않는 등 장제급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여 [별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미지급 현황”과 같이 총 27명, 21,100,000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5) 보장시설 사망자 생계급여 초과 지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6. 보장시설 Ⅳ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에 따르면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보장시설에서 퇴소하면 시설생계급여를 시설장에게 퇴소일까지 일단위[3]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보장시설에서 사망한 수급자 생계급여는 사망한 당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여 시설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주민복지과, 교육복지과)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보장시설 사망자 생계급여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시설장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표 7] “보장시설 사망자 생계급여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시설장에게 4명의 시설생계급여 370,646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7] 보장시설 사망자 생계급여 과다 지급 현황(2018.11월~2021.10월)

(단위 : 원)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시설명	월 지급액	최종 지급일	과다 지급액
4명						370,646
○○○	1998.00.00.	2018.11.27.	○○○○원	222,950	2018.11.20.	25,040
○○○	1935.00.00.	2020.03.14.	신안군○○○○요양원	236,251	2020.03.20.	127,513
○○○	1940.00.00.	2020.05.05.	신안군○○○○요양원	236,251	2020.05.20.	197,416
○○○	1935.00.00.	2020.05.28.	○○○○○○공동생활가정	260,245	2020.05.20.	20,677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5. 장애인연금 지급 부적정

3) 일단위 지급기준 : 30인 미만(2018년 8,280원, 2019년 8,312원, 2020년 8,556원 2021년 8,813원), 30인 이상(2018년 7,330원, 2019년 7,545원, 2020년 7,767원, 2021년 8,000원)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주민복지과)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표 8] “신규 장애인연금 과소 지급 현황”와 같이 신규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읍 ○○○ 등 3명에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지 않아 1,742,50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8] 신규 장애인연금 과소 지급 현황(2018.11월~2021.10월)

(단위 : 원)

대상자	주 소 (읍면동)	최초 신청일	월 지급액	최초지급		과소지급	
				지급일	지급액	개월	지급액
3명							1,742,500
○○○	○○읍	2019.00.00.	273,750	2019.04.19.	273,750	3	821,250
○○○	○○읍	2019.00.00.	380,000	2019.05.20.	1,420,000		100,000
○○○	○○읍	2019.00.00.	273,750	2019.11.20.	273,750	3	821,250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수급자 39명에게 과소지급된 생계·주거급여·기초연금·장제급여·장애인연금 30,467,560원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40명에 대하여 17,284,956원을 회수하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보장급여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해양수산과)

훈 계 대 상 자 ① 신안군 ○○면 지방○○○○○주사 ○○○

② 신안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 개요

신안군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18.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담당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는 2021.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행정처분에 따른 면세유 공급 중지기간 통보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수산업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제9호 및 제58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

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8항에 따르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징금(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상응하는 정지 처분 기간 동안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불법 어업행위 등으로 어업 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면세유류 관리기관(수산업협동조합)에 정지 처분 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처분 결과를 통보하여 어업정지 기간 동안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해양수산과)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어업정지 기간을 명확히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면세유 공급중지 통보 부적정 명세”와 같이 ○○○ 등 33명에 대하여 어업정지 기간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등으로 기재한 채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 어업정지 처분기간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

그로 인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자가 어업정지 처분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로부터 면세유 공급을 받을 수 없는데도 [표 1] “면세유 부정수급 현황”과 같이 ○○○ 등 2명에게 면세유 800리터가 부당하게 공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면세유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리터, 원)

선명	성명	어선번호	행정처분일자 (처분내용)	공급일자	유종	수량	판매금액
				계		800	537,840
○○호	○○○	0000000 -0000000	2018.00.00. (면세유공급중단, 인지한날부터 30일)	2018.00.00.	휘발유	200	155,710
				2018.00.00.		200	155,710
○○호	○○○	0000000 -0000000	2019.00.00. (면세유공급중단, 인지한날부터 45일)	2019.00.00.	휘발유	200	110,110
				2019.00.00.		200	116,310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3. 행정처분(시정명령) 이행확인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 Ⅱ항 2호 가목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어업 또는 어획물 운반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어업등 행정처분이나 해기사 행정처분의 요구는 청문을 실시한 날 또는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고처분은 경고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기한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제6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은 30일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8조 제5항에 시정명령을 이행한 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완료 통보서에 증명서류와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청은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처분하고, 30일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완료 통보서와 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해양수산과)은 2019. 00. 00.에 ○○○ 등 23명에게 [표 2] “휴업 미신고 무조업어선 행정처분 현황”과 같이 경고처분한 후 30일 범위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어업인으로부터 기한 내에 시정완료 및 그 이행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행정처분의 당위성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휴업 미신고 무조업어선 행정처분 현황

연번	선명	어선번호	어업허가	성 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처분일)
계				23명		
1	○○○호	1409002-0000000	연안○○ 2019-000	○○○	휴업 미신고 무조업어선 (수산업법 제30조)	경고 (2019.12.30.)
2	○○호	9905001-0000000	연안○○ 2019-000	○○○	〃	〃
3	○○○호	9712309-0000000	연안○○ 2019-000	○○○	〃	〃
4	○○○호	9711148-0000000	각망○○ 2019-000	○○○	〃	〃
5	○○○호	9712010-0000000	연안○○ 2019-000	○○○	〃	〃
6	○○호	0408001-0000000	연안○○ 2019-000	○○○	〃	〃
7	○○○호	9710049-0000000	연안○○ 2019-000	○○○	〃	〃

연번	선명	어선번호	어업허가	성 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처분일)
8	○○호	0506005-0000000	패류○○ 2019-000	○○○	휴업 미신고 무조업어선 (수산업법 제30조)	경고 (2019.12.30.)
9	○○호	1002009-0000000	패류○○ 2019-000	○○○	〃	〃
10	○○○호	9611040-0000000	패류○○ 2019-000	○○○	〃	〃
11	○○호	1306011-0000000	연안○○ 2019-000	○○○	〃	〃
12	○○호	9508246-0000000	연안○○ 2019-000	○○○	〃	〃
13	○○호	0701001-0000000	○○○어업 2019-000	○○○	〃	〃
14	○○호	1602006-0000000	연안○○ 2019-000	○○○	〃	〃
15	○○○호	9510012-0000000	연안○○ 2019-000	○○○	〃	〃
16	○○○호	9409001-0000000	○○○어업 2019-000	○○○	〃	〃
17	○○호	0111006-0000000	○○어업 2019-000	○○○	〃	〃
18	○○호	9803020-0000000	연안○○ 2019-000	○○○	〃	〃
19	○○호	0404019-0000000	연안○○ 2019-000	○○○	〃	〃
20	○○호	9712238-0000000	연안○○ 2019-000	○○○	〃	〃
21	○○호	0104005-0000000	연안○○ 2019-000	○○○	〃	〃
22	○○호	9711086-0000000	연안○○ 2019-000	○○○	〃	〃
23	○○호	9905005-0000000	연안○○ 2019-000	○○○	〃	〃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4. 행정처분 감경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 Ⅱ항 2호 가목 27에 따르면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외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는 1차 위반은 어업정지 60일, 2차 위반은 어업정지 90일, 3차 위반은 어업허가 취소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4조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 Ⅰ항 6호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행정처분 등의 대상자가 수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상훈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공로패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표창(공로패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음 각 목의 범위 안에서 Ⅱ.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등의 기준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기준 Ⅰ항 6호 가목에 따르면 어업·양식업의 정지, 어획물운반업정지 또는 해기사 면허정지 요구의 대상인 경우는 행정처분 등 기준 일수의 2분의 1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의 어업으로 1차 위반한 경우에는 어업정지 60일 처분을 하기 전에 위반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포상(공로패를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하고, 포상 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정지처분 일수의 2분의 1을 감경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해양수산과)은 2021. 00. 00.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의 어업을 하다 적발된 ○○○에 대하여 [표 3] “행정처분 감경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20. 00. 00. 수여 받은 ○○어업관리단장 표창으로는 어업정지 60일을 30일로 감경할 수 없는데도 2021. 00. 00. 부적정하게 행정처분을 감경하였다.

[표 3] 행정처분 감경 부적정 현황

허가사항	위반일자	선명	허가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일자	포상내용	행정처분 (적법한 행정처분)
연안○○ 2019-00	2021.00.00.	○○호	○○○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2021. 00.00.	○○어업관리단장 표창장 (2020.00.00.)	어업정지 30일 (어업정지 60일)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

5.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 Ⅱ항 2호 가목 28에 따르면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해당 어업을 한 경우 1차 위반은 어업정지 30일, 2차 위반은 어업정지 45일, 3차 위반은 어업정지 60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산업법」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별표 5] 과징금의 부과기준 2항에 모든 연안어업은 어업정지 1일당 6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해당 어업으로 1차 위반한 경우에는 어업정지 30일을 처분하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어업정지 1일당 6만원씩 총 180만원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해양수산과)은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해당 어업을 하다 1차 위반으로 2020. 00. 00., 2020. 00. 00. 적발된 어선 2척에 대하여 [표 4] “부적정 행정처분 현황”과 같이 어업정지 30일 또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어업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4] 행정처분 부적정 현황

허가사항	위반일자	선명	허가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적법한 행정처분)
연안○○ 2019-000	2020.00.00.	제00○○호	○○○	1차 허가구역 외의 어업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과징금 270만원 (어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연안○○ 2019-000	2020.00.00.	000○○호	○○○	1차 허가구역 외의 어업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과징금 270만원 (어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6. 행정처분 대장 작성·관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추진계획[1]에 따라 2017. 10. 1.부터 2019. 9. 30.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의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하여 특별감면하고, 행정처분대장 정리[2]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2021년 신년 특별사면 추진계획[3]에 따라 2019. 10. 1.부터 2020. 10. 31.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의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하여 특별감면하고, 행정처분대장 정리[4]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신안군은 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 2020년과 2021년 신년특별사면 추진계획

1) 근거 문서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0000(2019. 00. 00.), 전라남도 수산자원과-00000(2019. 00. 00.)

2) 행정처분청은 행정처분 대장에 [2019. 12. 31 특별사면으로 기록 삭제] 라고 표기하고 담당자가 날인(지자체)

3) 근거 문서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0000(2020. 00. 00.), 전라남도 수산자원과-00(2021. 00. 00.)

4) 행정처분청은 행정처분 대장에 [2020. 12. 31 특별사면으로 기록 삭제] 라고 표기하고 담당자가 날인(지자체)

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 행정처분대장을 정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해양수산과)은 2018년부터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규정한 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기록·관리하지 않았고, 2020년과 2021년의 신년특별사면 감면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록 삭제 및 관리도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행정처분 기초자료 관리가 소홀히 되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해당 어업을 하다 1차 위반으로 2020. 00. 00., 2020. 00. 00. 적발된 어선 2척에 대하여 [표 4] “부적정 행정처분 현황”과 같이 어업정지 30일 또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2차 위반의 경우에 해당하는 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어업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과 지방○○○○주사 ○○○를 훈계하고**(훈계)**

② [표 2] “휴업 미신고 무조업어선 행정처분 현황”과 같이 경고처분한 23명의 어업인으로부터 시정명령 이행 및 시정완료 통지서를 접수 받아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시고 행정처분 대장을 관련 규정에 맞도록 기록·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해양수산사업 국고보조금 등 반납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해양수산과, 해양자원과)

훈 계 대 상 자 ① 신안군 ○○○○과 지방○○○○주사 ○○○

② 신안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 개요

신안군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과 어업인 복지 등을 위하여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및 재해 대비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23건(143억원)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17. 00. 00.부터 2018. 00. 00.까지, 2021.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고, 지방○○○○주사 ○○○은 2018.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으로 근무하였고, 2018.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재해대비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르면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를 발급하고 민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2조의6[1]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 現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정, 2021. 7. 13. 시행) 제17조 제1항

또한 같은 법 제32조의8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Ⅵ.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2]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에 따르면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반환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보조사업 완료 시 국고보조금 등에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세입고지서를 발급 요청하여 그 집행잔액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해양수산과, 해양자원과)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통해 사업비 집행잔액과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 반납을 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사업비 잔액 등 미반납 현황”과 같이 국고보조금 잔액 1,103,022,990원 및 이자액 29,898,785원, 도비보조금 잔액 18,088,560원 및 이자액 2,042,247원 등 23건, 1,153,052,582원의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해양수산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과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과 어업인 복지를 위한 어업 활성화 사업에 보조금이 재투자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해양수산사업 국고보조금 등 반납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과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② 국고보조금 잔액(1,103,022,990원) 및 이자액(29,898,785원)은 해양수산부에 반납하고, 도비보조금 잔액(18,088,560원) 및 이자액(2,042,247원)은 전라남도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주의요구

제 목 **신안군○○회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행정지원과)

훈 계 대 상 자 신안군 ○○면 지방○○사무관 ○○○

내 용

1. 업무 개요

신안군은 관내 전문체육 활성화 및 선수육성,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안군○○회에 5,742,349천원[1]의 보조금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지방○○사무관 ○○○은 2018.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과에서 신안군○○회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부적격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신안군○○회 규정」 제48조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신안군○○회 사무처리 규정」 제2조 및 제45조에 따르면 신안군○○회의 직원은 별정직과 일반직, 생활체육지도자로 나누고, 별정직은 사무국장과 대외협력차장을 말하며, 일반직은 기술·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

1) 2019년 2,094,799천원, 2020년 1,229,330천원, 2021년 2,418,220천원

하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 보급 및 지도를 담당하는 직원이며, 직원의 정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60세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위 사항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신안군○○회가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행정지원과)은 신안군○○회가 2020. 00. 00. 신안군○○회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정년 만60세를 초과하는 0000년생인 ○○○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는 2023년 정기 총회 전날까지로 심의 의결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2020. 00. 00. 신안군○○○회운영 지원 계획 상근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수립하면서 신안군○○회가 직원의 정년 규정을 위반한 사무국장(○○○)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정년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한 직원에게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회계관직 미지정 및 회계담당자 재정 보증보험 미가입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이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등 그

2) 2021. 7. 1. 개정 전 조례

밖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을 말하고,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지방회계법」제50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지방재정법」및「지방회계법」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신안군○○회에 지원된 보조금의 세입·세출 등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책임한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관직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재무관, 지출원 등 회계관직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재정보증을 가입한 후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행정지원과)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표 1] “신안군○○회 사무국 회계관직 지정·운영 및 재정보증 미가입 현황”과 같이 군 ○○회가 회계관직(경리관, 분임경리관, 지출원)을 지정하지 않고 회계담당자 재정보험 가입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1] 신안군○○회 사무국 회계관직 지정·운영 및 재정보증 미가입 현황(2019~2021년)

명칭	직급(직위)	성명	회계관직	재정보증 가입여부	예산(2019~2021년)
신안군○○회	회장	○○○	없음	부	5,742,349천원
	사무국장	○○○	경리관	부	
	사무과장	○○○	지출원	부	
	행정담당	○○○	담당자	부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회계관직을 지정받지 않은 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계사고 발생 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4. 공공체육시설물 지방재정공제 미가입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군 세무회계과는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신규 조성된 공유재산에 대해 재해복구공제 정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체육시설물 등이 신규 조성될 경우에는 재해복구공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행정지원과)은 군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재해복구공제에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도 [표 2] “체육시설물 재해복구공제 미가입 현황”과 같이 2009년 조성된 ○○ ○○게이트볼장 등 5개 체육시설물이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표 2] 체육시설물 재해복구공제 미가입 현황

(단위: ㎡)

설치년도	시설명	위치	면적
계	5개소		4,787
2009	○○ ○○게이트볼장	○○면 ○○리 000-00	512
2012	○○ ○○○게이트볼장	○○면 ○○리 0000-0	540
2013	○○ ○○○게이트볼장	○○읍 ○○리 000-0	607
2015	○○ ○○○○골프장(○○○)	○○면 ○○리 000-00	2,530
2019	○○ ○○○게이트볼장	○○면 ○리 000	598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신안군○○회 직원의 정년은 만60세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지방○○사무관 ○○○을 훈계하고(**훈계**)

② 신안군○○회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공공체육시설물 지방재정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채육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재정공제에 가입하시기 바라며(**시정**)

③ 앞으로 신안군○○회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인건비 집행대상자가 정년 규정을 준수할 경우에만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 라 남 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지도읍, 압해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훈 계 대 상 자

내 용

1. 업무 개요

신안군은 농업법인 등이 농업경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영농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신청농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3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하여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목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사업범위[1]를 벗어나면 해당 법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 실시로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증명을 발급하며, 이 경우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1조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부동산 매매업 등 사업범위 외 사업이 명시된 농업법인에 대하여는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였는지를 일정 기간을 두고 행정정보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매년 실시하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는지에 대하여 확인 후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지도읍 등 8개 읍면)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서 [별표 1] “농지 취득한 농업법인 등기사항을 미변경한 법인 명세”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 등 12개 법인이 45필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농지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범위 외 사업이 등기상

1)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농업경영보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 했다는 우려가 있는 농업법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농지 이용 효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은 새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농지취득자(신청인)로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그 세대원을 확인하고, 농지원부와 기 발급한 현황을 입력·관리하고 있는 새올시스템을 조회하여 신청면적과 세대원 전부가 기소유면적의 합한 면적을 확인하여 1,000㎡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압해읍 등 3개 읍면)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서 ○○도 ○○시 ○○구 ○○○○로 00, 000동 000호에 거주하는 세대원 ○○○는 1,000㎡ 초과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데도 신안군 ○○읍 ○○리 00번지 2,579㎡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등 [별표 2]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1,000㎡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명세”와 같이 19세대가 소유 상한 면적 1,000㎡ 초과하는데도 37필지 29,124㎡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다.

그로 인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게 농지를 취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8조 제6항에 따르면 농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읍면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읍·면장은 신청인이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심사요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신청인이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가 아닌 토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농지 등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한 경우로서 자격증명 발급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2]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자격증명 발급요건에 적합하면 발급하고, 적합하지 않다면 농지가 아닌 토지인지 아니면 불법 형질 변경으로 원상복구가 필요하여 현 상태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여 반려 통보를 하여야 한다.

---

2) (1) 신청대상 토지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도시계획구역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
(3)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 :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4)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지도읍 등 12개 읍면)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 건에 대하여 반려 통보를 하면서 농지가 미경작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 되었다면 복구가 필요하다고 미발급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3] “직불금 1회 이상 지급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명세”와 같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농지를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농지가 아닌 토지”로 반려하여 381필지, 464,767㎡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상 회복이 필요한 불법 형질 변경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 소유권이 등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부동산 매매업 등 목적 외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대해서 등기사항을 변경하도록 하고, ㈜○○○○○○ 등 12개 법인과 19세대가 취득한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에 대하여 휴경 등 농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하시기 바라며(**시정**)

②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미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반려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3] 생 략

전 라 남 도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농업·기술지도 분야 민간보조사업 등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과)

내 용

1. 업무 개요

신안군은 지역 우수 농산물의 품질 향상·경쟁력 제고 및 생산·유통·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 농업 시설물 공사 예정가격 임의결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2억원·전문공사 1억원·그 밖의 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민간자본이전에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계약대상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지방계약법」제11조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2020. 00. 00. 농업법인 특정감사 등을 통하여 농업용 시설물 조성사업 계약이「지방계약법」등을 따르지 않고 추진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 조성사업 계약 위법 사례 알림”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보조사업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예정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친환경농업과)은 2020년 00월 ○○○○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표 1] “예정가격 임의결정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과 같이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1] 예정가격 임의결정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예정가격 결정방법	추정금액 (A)	예정가격	낙찰금액 (B)	낙찰률 (B/A)
1개사업	1개소	3종		5,565,421	3,071,000	2,637,900	62%
2020년 ○○○○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협동조합	○○○○ 직매장(건축)	임의결정	4,840,708	2,710,000	2,337,900	48.3%
		○○○○ 직매장(전기)	임의결정	477,235	238,000	185,000	38.7%
		○○○○ 직매장(소방)	임의결정	247,478	123,000	115,000	46.4%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계약이 공정하지 못하게 추진되었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우려가 있게 하였다.

3. 민간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73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의 진행사항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중앙단위 사업이행 및 점검 의무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행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실태 및 사업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통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과)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장비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 시 사업 목적대로 운영 사항 등을 파악하여 부서장에게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표 2] “민간보조사업 중요 시설·장비 지원사업 현황”과 같이 ○○○○○마을 육성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 장비 및 농기계 운영 실적, 작물 생산 실적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내용 없이 보유 장비 현황에 대해서만 결과 보고를 하고 있다.

[표 2] 민간보조사업 중요 시설·장비 지원사업 현황(2018~2021년)

(단위 : 천원)

번호	지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총 사업비 (보조금)	관리실태
계		8개 사업	8개소		1,435,383	
1	2018	○○○ ○○○○ 육성사업	○○마을	벼 육묘장, 곡물건조기	576,483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2	2018	○○○○○ 시설 확충	○○○○군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액상차추출기, 액상차 자동포장기	300,000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3	2020	○○○○ 및 ○○○○ 시설장비 지원사업	○○○○○ 조합법인	방제기, 제습저장시설	235,900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4	2019	○○○○○ 복지실천시범	○○면○○마을	두부 가공시설	50,000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5	2019	○○○ ○○○ 안전관리실천시범	○○면 ○○○○○회	제초기, 운반기	50,000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6	2018	○○○○○ 기계화신기술 시범사업	○○○	양파정식기, 트랙터 등	93,000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7	2019	○○○○○ 보급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시범	○○○	시설제어장치, 기상장비	50,000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8	2021	○○ ○○ ○○○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	○○○	드론장비	80,000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기계 장비 등의 지원 목적 달성 여부를 알지 못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우려가 있게 하였다.

4.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침

에 따르면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 지원하고 비가림 시설 준공 이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작피해 방지 또는 가격 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로 1년간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 완공 후 6년까지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건고추 재배시기에 맞춰 보조사업자가 건고추를 재배하는지 준공 후 5년간 관리를 하여야 하고, 연작피해 방지 등으로 1년간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준공 후 6년간 관리하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친환경농업과)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89개 농가에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면서 [표 3] “고추 비가림사업 사후관리 실태 현황”과 같이 준공 이후 5년간 고추 재배 기간인 5~8월에 점검을 하여야 하는데도 2016년부터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사후관리 점검계획을 읍면에 시행하지 않는 등 건고추 재배 지원사업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2021. 11. 26. 감사기간 중에 고추비가림 시설 사용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휴경 1개소, 농자재 보관 10개소가 확인되었다.

[표 3] 고추비가림사업 사후관리 실태 현황(2016~2021년)

(단위 : 명, ㎡)

지원연도	지원인원	사업량	사후관리 공문 시행일	사후관리 결과
계	89	51,536		
2016	68	22,297	미시행	재배 확인 불가(사진 등 증빙자료 없음)
2017	11	13,670	미시행	재배 확인 불가(사진 등 증빙자료 없음)
2018	7	13,259	미시행	재배 확인 불가(사진 등 증빙자료 없음)
2019	3	2,310	미시행	재배 확인 불가(사진 등 증빙자료 없음)
2020	-	-	미시행	재배 확인 불가(사진 등 증빙자료 없음)
2021	-	-	미시행	재배 확인 불가(사진 등 증빙자료 없음)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고추 비가림 시설 준공 이후 5년간 건고추 재배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관리를 하지 않아 목적사업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시행지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에 따르면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운영자금 형식으로 최소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 이내로 융자금[1]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융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 등 시설자금과 포장디자인 개발, 품질개선 등 운영자금으로 집행 할 수 있고, 지원 받은 융자금을 상환완료 이전에 사업자가 융자사업 목적을 포기하고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융자금을 회수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지원된 융자금이 사업계획대로 집행되었고, 융자금 상환완료 이전까지 융자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친환경농업과)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표 4]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 대상 및 실행 인원 현황”과 같이 융자사업 대상자 111명 중 46명이 융자금을 지원 받았는데도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상환완료 이전까지 지원목적 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한 번도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1) 농어업인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2억원,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5억원, 수출·가공·유통사업자 10억원

[표 4]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 대상 및 실행 인원 현황(2018~2020년)

(단위 : 명, 백만원)

지원연도	지원인원	융자금 실행인원	융자금액	주요사업	비 고
계	111	46	3,216		
2018	34	18	1,239	전복 치패, 농기계 등 구입	2018.12.31.
2019	18	9	612	전복 치패, 농기계 등 구입	2019.12.31.
2020	59	19	1,365	전복 치패, 농기계 등 구입	2020.12.31.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융자금으로 지원된 시설·운영 자금에 대하여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앞으로 민간보조사업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사·물품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대상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등 안내를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주의**)

② 보조금으로 지원된 중요 시설·장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장 점검 시 현장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 및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문서화하는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공원녹지과)

훈 계 대 상 자 ① 신안군 ○○○○○○ 지방○○주사 ○○○

② 신안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8. 11월부터 2021. 10월까지 2019년 사방댐 설치사업(신안 ○○○○) 등 12개소 사업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다.

지방○○주사 ○○○은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업무담당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보 ○○○은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방사업법」 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

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고, 매년 관할 구역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사방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방사업 대상지 목록을 작성한 후 목록에 등재된 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처리규정」제5조에 따르면 타당성평가는 사방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후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른 [별표 2]에 따르면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사방사업의 설계·시공을 시장·군수가 시행하도록 재위임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전라남도가 사방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사방사업 대상지 목록에 등재된 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타당성평가가 완료된 대상지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의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공원녹지과)은 2018. 11월부터 2020. 12월까지 실시한 2019년 사방댐설치사업(신안○○○○○) 등 12개소 사업 중 8개소에 대하여 [표 1]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부적정 현황”과 같이 전라남도에서 통보한 타당성평가 결과 알림 공문 시행일 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전라남도의 타당성평가 결과를 통보받기도 전에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의뢰하여 타당성평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부적정 현황(2018.11월~2020.12월)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도급액	사업기간	대상지 선정일	타당성평가 현장조사일	실시설계용역 계약의뢰일	전남도 타당성평가 결과 알림일
계	12건	2,513,000				선계약 : 8건	
1	2019년 사방댐 설치사업 (신안○○○○)	265,000	2019.00.00. ~2019.00.00.	2018.03.23.	2018.08.21.	2018.11.30.	2019.01.08.

연번	사업명	도급액	사업기간	대상지 선정일	타당성평가 현장조사일	실시설계용역 계약의뢰일	전남도 타당성평가 결과 알림일
2	2019년 계류보전사업 (○○○○지구)	136,000	2019.00.00. ~2019.00.00.	2018.03.23.	2018.08.21.	2018.11.30.	2019.01.08.
3	2019년 해안침식방지사업 (○○○○○○)	249,000	2019.00.00. ~2019.00.00.	2018.03.23.	2018.08.21.	2018.11.30.	2019.01.08.
4	2019년 해안침식방지사업 (○○○○○○)	262,000	2019.00.00. ~2019.00.00.	2018.03.23.	2018.08.21.	2018.11.30.	2019.01.08.
5	2019년 해안침식방지사업 (○○○○○○)	242,000	2019.00.00. ~2019.00.00.	2018.03.23.	2018.08.21.	2018.11.30.	2019.01.08.
6	2020년 해안침식방지사업 (○○○○○○)	244,000	2020.00.00. ~2020.00.00.	2019.05.15.	2019.09.23	2019.11.19.	2020.02.20.
7	2020년 해안침식방지사업 (○○○○○○)	287,000	2020.00.00. ~2020.00.00.	2019.05.15.	2019.09.23	2019.11.19.	2020.02.20.
8	2020년 계류보전사업 (○○○○○○)	151,000	2020.00.00. ~2020.00.00.	2019.05.15.	2019.09.23	2019.11.19.	2020.02.20.
9	2021년 계류보전사업 (○○○○○○)	126,000	2021.00.00. ~2021.00.00.	2020.02.24.	2020.07.21	2020.12.07.	2020.09.29.
10	2021년 해안침식방지사업 (○○○○○○)	229,000	2021.00.00. ~2021.00.00.	2020.02.24.	2020.07.21	2020.12.07.	2020.09.29.
11	2021년 해안침식방지사업 (○○○○○○)	231,000	2021.00.00. ~2021.00.00.	2020.02.24.	2020.07.21	2020.12.07.	2020.09.29.
12	2021년 사방댐사업 (○○○○○○)	91,000	2021.00.00. ~2021.00.00.	2020.02.24.	2020.07.21	2020.12.07	2020.09.29.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전라남도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의뢰하여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방사업이 추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사방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방사업법」 제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관리하여야 하고, 준공 후 4년이 지난 야계사방사업(계류보전사업, 계류복원사업, 사방댐 설치사업)의 사방시설과 그 밖에 사방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방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균열, 누수, 붕괴 등

의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산림청 고시) 제2장에 따르면 시·도지사[1]는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필요한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준공 후 4년이 지난 야계사방사업(계류보전사업, 계류복원사업, 사방댐 설치사업)의 사방시설과 그 밖에 사방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방시설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년 2월 말까지 사방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공원녹지과)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준공 후 4년이 지난 야계사방사업 사방시설 등에 대하여 [표 2] “사방시설 정기(안전)점검용역 실시 현황”과 같이 매년 정기(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용역결과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보완·보수대상 19개소의 균열 차단보수 등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2] 사방시설 정기(안전)점검용역 실시 현황(2018~2021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량	용역기간	계약금액	용역사 (대표)	보완·보수 대상지
계	101개소 점검		25,855		사방댐 등 19개소
2018년 사방시설 안전점검 용역	12개소 점검	2018.10.29.~2018.11.27.	2,419	○○협회 (○○○)	사방댐 3개소
2019년 사방시설 안전점검 용역	37개소 점검	2019.04.24.~2019.06.12.	7,818	“	사방댐 등 7개소
2020년 사방시설 안전점검 용역	26개소 점검	2020.03.18.~2020.06.15.	7,809	“	사방댐 등 4개소
2021년 사방시설 안전점검 용역	26개소 점검	2021.04.15.~2021.07.13.	7,809	“	사방댐 5개소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1)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사방사업의 시행 권한 재위임됨

또한 [표 3] “신안군 사방시설 현황”와 같이 95개소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필요한 유지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표 3] 신안군 사방시설 현황(2018~2021년)

(단위 : 개소)

계	사방댐	계류보전	해안방재림	해안침식방지
95	25	10	26	34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사방시설 안전점검 용역보고서를 활용 및 이행하지 못하여 용역비 25,855천원의 예산낭비 및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방시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3. 하자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

고,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검사 공무원은 하자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공원녹지과)은 2021. 12. 1. 감사일 현재 [별표] “정기하자검사 미실시 명세”와 같이 하자검사대상 총 12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2020년에 5개소만 1회씩 실시하고 2019년과 2021년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림] “하자발생 부분 현장 사진”과 같이 여러 곳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적기에 보수를 하지 못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그림] 하자발생 부분 현장 사진



파라펫 상부 콘크리트 동해에 의한 박리 발생	파라펫 콘크리트 벽면 균열 발생	파라펫 콘크리트 상부 균열 발생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전라남도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 의뢰하고, 사방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과 지방○○주사보 ○○○을 훈계하고**(훈계)**

② 사방시설 안전점검 용역결과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보완·보수대상 19개소에 대하여 응급조치하고, 하자검사대상 총 12건에 대하여 정기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신안 ○○도 ○○○○ 보수정비 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문화관광과, 세무회계과)

훈 계 대 상 자 ① 신안군 ○○○○과 지방○○주사보 ○○○

② 신안군 ○○○○과 지방○○서기보 ○○○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20. 00. 00. 전라남도(문화자원과)로부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승인 받은 신안 ○○도 ○○○○ 보수정비 사업(이하 “위 사업”이라 한다)을 2020. 00. 00. ○○○○건설주식회사(대표 ○○○)와 201,182천원에 계약[2]하고 2020. 00. 00. 착공하여 2021. 00. 00. 공사를 완료하였다.

지방○○주사보 ○○○은 2018.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신안 ○○도 ○○○○ 보수정비 사업의 감독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서기보 ○○○는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하도급 계약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문화재 수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2) U형 개거 370m, 기존관 연결 7개소(흄관 6, PE관 1), 기존수로 연결 4개소(흄관), 수로덮개(B=1.9m, L=48m)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문화재 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문화재 수리를 직접 수행하되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 수리의 일부를 문화재 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르면 발주자는 문화재 수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문화재 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 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고,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문화재 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2018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제1항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제36호에 따르면 문화재 수리의 하도급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 수리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고,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신안군 지방계약 감독 및 검사 업무 규정」 제7조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 신청서 등의 서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계약상대자가 문화재 수리 하도급 계약 체결 통보서를 제출하면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하도급 업체가 문화재 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이고,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 수리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지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하도급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세무회계과)은 위 사업의 계약상대자가 2020. 00. 00. 전문 문

화재 수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일반 전문건설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0. 00. 00. 하도급 계약체결 통보서를 제출하자 공사감독관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지도 않은 채 2020. 00. 00. 하도급 계약 체결을 승인하였다.

또한 문화관광과는 위 사업의 공사감독관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2018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체결된 하도급 계약 체결 통보서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감독관 경유 서명만 한 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하도급 계약체결이 승인되도록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문화재 보수 정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문화재를 보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공사감독자 업무수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5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감독일지, 검측 대장 등의 서류를 작성 또는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33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필요시 촬영한 동영상)은 Digital 파일, CD 등으로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공사 감독일지, 검측 대장 등의 서류를 작성 또는 비치하도록 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촬영한 사진은 Digital 파일, CD 등으로 보관하도록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문화관광과)은 공사감독자가 반드시 비치해야 할 공사 감독일지와 검측 대장 등을 사업 대상지가 비금도에 위치한다는 사유로 작성·비치하지 않았고, 사진 등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주요 공정이 설계 및 시방서 내용

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국가지정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공사감독자 및 준공검사자 준공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

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이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문화관광과)은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확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이 준공검사 전에 시정조치 되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바쁘다는 사유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표] “사업 미시공·시공소홀 부분 등에 대한 미회수 현황”과 같이 회수해야 할 3,016천원을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고 있다.

[표] 사업 미시공·시공소홀 부분 등에 대한 미회수 현황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계		110,958,580		107,941,640	△3,016,940
○○○○ 및 ○○	870㎡	4,394,370	870㎡	973,530	△3,420,840
○○○○지정	309㎡	2,586,021	9,150㎡	1,908,384	△677,637
○○○○	510㎡	2,420,460	510㎡	4,802,670	2,382,210
○○○	1,987㎡	66,792,917	1,987㎡	66,383,595	△409,322
○○○		34,764,812		33,873,461	△891,351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준공검사가 관련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사업의 미시공 및 시공소홀 부분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 없이 검사가 완료되어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문화재 수리 하도급 제한 규정 검토 및 하도급 통지 서류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공사감독관 지방○○주사보 ○○○과 관련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 체결을 승인한 지방○○서기보 ○○○를 훈계하고(**훈계**)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다 반영된 3,016,940원을 회수 조치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 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 라 남 도

훈 계 요 구

제 목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섬발전진흥과)

훈 계 대 상 자 ① 신안군 ○○면 지방○○서기보 ○○○

② 신안군 ○○○○과 지방○○주사 ○○○

③ 신안군 ○○○○○과 지방○○서기 ○○○

④ 신안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8. 11. 1.부터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361건을 발주하여 준공 또는 공사 중에 있다.

지방○○서기보 ○○○은 2019.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과에서 ○○ ○○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수변공원 조성공사) 업무담당자로, 지방○○주사 ○○○는 2019.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과에서 ○○ ○○도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1, 2공구)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고, 지방○○서기 ○○○는 2018.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면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 조성) 업무담당자로, 지방○○주사보 ○○○는 2017.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 ○

○○ 조성공사(○○○～○○ 진입도로)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협의 등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와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5조에 따르면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안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문화재보전에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연안[2]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부서와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고, 연안에서 3만㎡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문화재 보존영향 검토·협의 대상 지역)
가) 국가 지정 문화재 : 주거·상업·공업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까지의 지역
나) 도 지정 문화재 : 주거·상업·공업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m까지의 지역

2) 바닷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연안해역)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육지지역(연안육역)

그런데 신안군(섬발전진흥과)은 2020. 00. 00. ○○ ○○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대상지가 전라남도 지정 지방기념물 제000호(○○ ○○ ○○○○생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300m)인데도 건설공사 시행 전에 문화재보존 영향 여부에 대한 검토·협의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2019. 00. 00.과 2020. 00. 00. [표 1]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등 미이행 건설공사 추진 현황”과 같이 2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협의 및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등 미이행 건설공사 추진 현황

(단위 : m)

연번	문화재명	사업명	위치	문화재 이격거리	공사 착공일	사업 추진부서
계		2건				
1	○○ ○○ ○○○○생지 (전라남도 기념물 제000호)	○○ ○○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 수변공원 조성공사)	○○면 ○○ 00	20	2020. 00.00.	섬발전 진흥과
2	연안에서 공사 규모 30,000㎡ 이상	○○ ○○도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1, 2공구)	○○면 ○○○리 산000	연안육역	2019. 00.00.	섬발전 진흥과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국가지정 문화재 및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및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섬발전진흥과)은 2019. 00. 00. ○○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대상지가 국가지정 민속문화재 제000호(○○○ 고택)의 문화재보호 구역인데도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2019. 00. 00.과 2021. 00. 00. [표 2]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미이행 건설공사 추진 현황”과 같이 2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2]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미이행 건설공사 추진 현황

(단위 : m)

연번	문화재명	허가권자	사업명	위치	문화재 이격거리	공사 착공일	사업 추진부서
계	2개소		2건				
1	○○○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000호)	문화재 청장	○○면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 (○○○○ 조성)	○○면 ○○리 000 일원	80	2019. 00.00.	섬발전 진흥과
2	○○ ○○ ○○○군 (지방문화재자료 제000호)	전라남도 지사	○○○○ ○○ 조성공사 (○○○~○○ 진입도로)	○○면 ○○ 000	200	2021. 00.00.	섬발전 진흥과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협의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시행한 지방○○주사 ○○○, 지방○○주사보 ○○○, 지방○○서기 ○○○, 지방○○서기보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면 직원숙소 신축공사 및 3급 관사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훈 계 대 상 자 ① 신안군 ○○○○과 지방○○주사보 ○○○

② 신안군 ○○○○사과 지방○○서기 ○○○

③ 신안군 ○○○○과 지방○○서기 ○○○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9. 00. 00. ○○○○건설㈜(대표 ○○○)와 ○○면 직원 숙소 신축공사를 884,334,000원에 계약[1]하고 2019. 00. 00. 착공하여 2021. 00. 00. 공사를 완료하였다.

지방○○주사보 ○○○은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면 직원숙소 신축공사 업무담당자로, 지방○○서기 ○○○은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농지전용 허가 업무담당자로, 지방○○서기 ○○○는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면 일원 건축허가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권리보전 업무 처리 부적정

1) 사업규모 : 대지면적 2,307㎡, 연면적 223.95㎡, 지상 2층, 원룸형 숙소 12실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권리자의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등 종류별로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지체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세무회계과)은 2021. 00. 00. ○○면 직원숙소 신축공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서도 사업부지(농지)가 추가되어 건축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변경 협의를 하면서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609,520원이 납부되지 않아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등기·등록 등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못하고 있다.

또한 민원봉사과는 농지 1필지가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건축허가사항 변경 및 농지전용 변경 협의에 따라 부과한 농지전용부담금이 미납되어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득하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완료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등록을 못하여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공사감독자 및 준공검사자 준공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이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세무회계과)은 ○○면 직원 숙소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확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이 준공검사 전에 시정조치 되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바쁘다는 사유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표 1] “사업 미시공・시공소홀 부분 등에 대한 미회수 현황”과 같이 회수해야 할 2,293천원을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표 1] 사업 미시공·시공소홀 부분 등에 대한 미회수 현황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계		2,443,120		150,120	△2,293,000
○○○ ○○거푸집(6회)	19.4㎡	1,021,836	0㎡	0	△1,021,836
○○○○ ○○○○ 되메우고 다지기(기계) 백호0.7㎥ 램머80kg, 다짐15cm	54㎥	493,614	54㎥	81,000	△412,614
○○○ ○○○○ 되메우고 다지기(기계) 백호0.7㎥ 램머80kg, 다짐15cm	22㎥	201,102	22㎥	33,000	△168,102
제 비 율		726,568		36,120	△690,448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사업의 미시공 및 시공소홀 부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검사가 완료되어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신안군 3급 관사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에 따르면 관사[2]의 사용은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54조,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2) 1급 관사 : 군수 관사,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및 그 밖의 관사 등

관리대장을 갖춰놓고 정리하며, 관사용 비품 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 관리하며, 관사의 사용 허가가 취소 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관사별 사용허가 대장, 관리대장, 비품대장, 인계대장 등을 작성 비치하여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세무회계과)은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읍 직원 숙소용 관사를 관리하면서 사용 허가대장, 관리대장, 비품대장,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지 않고 있는 등 [표 2] “신안군 직원 숙소용 3급 관사 관리 현황”과 같이 조례에서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2] 신안군 직원 숙소용 3급 관사 관리 현황

(단위 : 개소)

사용 허가대장			관리대장			비품대장			인계·인수		
계	비치	미비치	계	비치	미비치	계	비치	미비치	계	비치	미비치
86	13	73	86	74	12	86	16	70	86	13	73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감사 기간 중 ○○면 관사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담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등 [그림] “신안군 직원 숙소용 3급 관사 현장 사진”과 같이 법면이 유실되고, 관사 담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옥상 점검 사다리의 상·하부가 고정되지 않고 탈락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일부 시설물은 사용하기 부적합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관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림] 신안군 직원 숙소용 3급 관사 현장 사진

			
○○면 관사 법면 유실	○○면 관사 담장 붕괴 우려	○○면 관사 담장 붕괴 우려	○○면 관사 옥상 점검사다리 탈락

그 결과 관사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유재산의 손실 발생 및 일부 시설물의 붕괴 등으로 민간이 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면 직원숙소 건축공사를 완료하고서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보전 등기를 못하는 등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권리보전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보 ○○○과,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서기 ○○○과, 건축허가사항 변경 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서기 ○○○를 훈계하고(**훈계**)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다 지급한 2,293,000원을 회수 조치하며, 3급 관사 관리에 필요한 사용 허가대장, 관리대장, 비품대장, 인계·인수서를 작성 비치하는 등 관사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 라 남 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지방도 도로연결 허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안전건설과)

훈 계 대 상 자 신안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8. 11월부터 2021. 10월까지 「지방자치법」[1] 제104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 4]에 따라 위임국도와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점용과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차선이 퇴색되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압해읍 군도 11호선 차선도색 정비공사 등 23건의 차선도색공사를 시행하였다.

지방○○주사 ○○○는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지방도 도로점용(연결) 허가 및 군도, 농어촌도로의 차선도색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지방도 도로점용(연결) 허가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전라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1) 2021. 1. 12. 개정 전 법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도로에서 차량이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등의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발행 「2015 도로법 해설」에 따르면 도로점용은 점용물이 도로구역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경우(예 : 전주, 표지판, 관로매설 등) 적용되고, 도로점용(연결) 허가는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예 :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진입로 등)에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도로변에 건물 신축 시 진입로를 설치하여 도로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연결) 허가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안전건설과)은 지방도 도로변에 건물 신축 시 진입로를 설치하여 도로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연결) 허가를 하여야 하는데도 2021. 12. 1. 감사일 현재 [별표 1] “도로점용허가 부적정 현황”과 같이 14건에 대하여 도로점용(연결) 허가가 아닌 단순 도로점용 허가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방도의 시설물 보호와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교통안전 관련 기관 미협의 등으로 지방도를 통행하는 차량과 진·출입 차량 사이의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교통안전에 저해를 가져왔다.

3. 차선도색공사 재귀반사 성능시험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도로교통법」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KS M 6080」(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 및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재귀반사[2] 성능이 요구되는 도로상의 노면 표시용 도료를 설치 시 시공 직후 1주일 후에 재귀반사 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10㎞ 이내의 경우 1㎞당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 20개소를, 10㎞ 이상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표] “도료형 노면표시 재귀반사 성능

2) 광원에서 입사된 빛을 받으면 광원 방향으로 다시 되돌려 반사하는 것

기준 현황”과 같이 90% 이상의 재귀반사 성능을 발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도료형 노면표시 재귀반사 성능 기준 현황

(단위 : mcd/(㎡·Lux))

구 분	최소 재귀 반사 성능			비 고
	황색	백색	청색	
설 치 시	240	150	80	기준
우천(습윤시)	100	70	40	권장

따라서 신안군은 차선도색공사 시공 직후 1주일 후에 재귀반사 성능을 검사하여 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안전건설과)는 2018. 11월부터 2021. 10월까지 [별표 2] “차선도색공사 재귀반사 성능조사 현황”과 같이 ○○읍 군도00호선 차선도색 정비공사 등 23건의 차선도색 공사 중 ○○읍 군도00호선 차선도색 정비공사 등 3건에 대하여 재귀반사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를 하였다.

그로 인하여 야간이나 우천 시 노면 표시의 재귀반사 성능이 떨어져 운전자가 차선 표시 등을 식별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차선도색공사에 따른 노면 표시가 재귀반사 성능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차선도색과 관련한 공사 추진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지방도 도로점용(연결) 허가 및 차선도색공사 재귀반사 성능시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 담당 지방○○주사 ○○○를 훈계하고**(훈계)**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도 도로점용(연결) 허가 및 차선도색공사 재귀반사 성능시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안전건설과)

훈 계 대 상 자 신안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표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현황”과 같이 136개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1]을 시행계획 수립·승인 후 공사 추진하고 있다.

[표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현황

(단위 : 개소)

승인 연도	계	밭기반 정비사업	배수 개선사업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방조제 개보수사업
계	136	12	2	1	19	64	6	32
2018	31	3	1	-	3	13	2	9
2019	33	3	-	1	3	13	1	12
2020	40	3	1	-	6	18	1	11
2021	32	3	-	-	7	20	2	-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별표 1] “농업용 관정개발 명세”와 같이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경작이 어려운 마을에 ○○ ○○ 북촌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등 21건의 관정개발 공사를 추진하였다.

1) 농어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준설,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등

지방○○주사 ○○○은 2021.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농업용 관정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변경하려면 전라남도에 사전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안전건설과)은 2018. 11월부터 2021. 10월까지 [별표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미승인 명세”와 같이 ○○ ○○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다.

그 결과 추가되는 신규 공정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

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안전건설과)은 2018. 11월부터 2021. 10월까지 [표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미시공분에 대한 미회수·미감액 현황”과 같이 ○○ ○○지구 ○○○○대책사업 등 4개 현장에서 시공 소홀, 미시공 등 사항에 대하여 회수 및 설계변경 감액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미시공분에 대한 미회수·미감액 현황(2018.11월~2021.10월)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공사비	지적내용	금액	조치 내용
계	4건					회수 3건 42,386 감액 1건 42,761	
1	○○ ○○지구 ○○○○대책사업	2019.00.00. 2020.00.00.	○○○○(주)	1,250,720	성토다짐 살수 미시공	28,437	회수
2	○○ ○○지구 ○○○○ 개보수사업	2018.00.00. 2020.00.00.	㈜○○○○건설	956,995	사석 소운반 미실시	6,645	회수
3	○○ ○○지구 ○○○정비사업	2020.00.00. 2021.00.00.	○○건설(주)	1,373,137	가설사무소 미설치 콘크리트포장 중복계상	42,761	감액
4	○○ ○○방조제 ○○○○ 개보수사업	2020.00.00. 2021.00.00.	○○○건설(주)	127,684	토공 규준틀 미시공 구조물 다짐 미실시	7,304	회수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시공 소홀과 미시공한 상태로 준공검사원이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3건에 42,386천원의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고, 1건에 42,761천원은 설계변경 감액이 되지 않고 있다.

3. 농업용 관정 개발공사 정산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관정 개발공사 시방서」에 따르면 지하수 착정 굴진시 암질이 변할 때 마다 또는 최소 5m마다 시료를 정확히 채취하여 착정 주상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착정에 대한 설계는 추정 설계한 사항이므로 시공 후 착정 깊이에 대한 주상도를 작성하여 사업비를 변경(정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관정 개발공사를 추진하면서 착정 주상도에 따라 착정비를 정산하고 준공하여야 하고,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안전건설과)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별표 2] “농업용 관정 개발 현황”과 같이 ○○ ○○ ○○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등 21건에 대하여 시공사가 시방 규정에 따른 착정 주상도를 제출하지 않거나 설계와 동일한 주상도를 제출하였는데도 실제 굴착 깊이에 대한 시공사 의견만 확인하여 준공처리 하였다.

그 결과 추정치로 설계에 반영된 관정 개발공사 착정비와 실제 착정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공사의 의견대로 준공 처리하는 등 관정 개발공사의 착정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농업기반시설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어촌 정비법」 제18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운전조작 및 정비, 재해 위험 여부 확인, 장애물 제거를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해당 분기에 영농기가 있을 때에는 그 영농기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4조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르면 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정비하며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 등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안전건설과)은 2021. 12. 1. 감사일 현재 매년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농업기반시설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등을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에 등재하지도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 공유의 활성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②「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다 계상된 42,386천원은 회수 및 42,761천원은 감액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섬발전진흥과, 안전건설과,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훈 계 대 상 자 신안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신안군립도서관 등 22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대상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주사보 ○○○은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면 ○○～○○간 해상목교 관리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지정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시설물안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2] 마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1] 및 제2종시설물[2] 외의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3]로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

1) 도로교량(최대경간장 50m이상, 연장 200m, 폭 12m), 철도교량, 터널(연장 1,000m, 3차로 이상), 항만(갑문시설, 방파제 연장 1,000m 이상, 20만톤급 이상 계류시설), 댐(1천만톤 이상), 공동주택외의 건축물(21층 이상), 하천 하구둑 등

2) 교량(제1종시설물 제외한 연장 100m, 폭 6m), 터널(제1종시설물 제외한 300m 이상), 항만(제1종시설물 제외한 연장 500m 방파제, 파제제, 호안), 댐(제1종시설물 제외 1백만톤 이상), 공동주택(16층 이상), 건축물(제1종시설물 제외한 16층 이상), 하천 및 상하수도(제1종시설물 제외 지방상수도) 등

따라서 신안군은 섬을 찾는 관광객의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꼭 필요한 해상목교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고 관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섬발전진흥과)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별표] “해상목교 설치 현황”과 같이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해상목교는 바다라는 지역 특성상 재난에 취약하여 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설물인데도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 ○○도 해상목교 등 7개교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2020년 00월경 ○○면 ○○～○○간 해상목교에서 하부발판이 탈락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관광객이 2m 아래 해변으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사고를 당한 관광객이 신안군을 상대로 민사소송[4]을 하여 150만원에 합의하는 조정 결정이 이루어져 15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이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어 신안군 이미지가 실추된 결과를 초래되었다.

3. 시설물 관리계획 미수립 및 정기·정밀점검 추진 부적정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1) 관계법령(판단기준)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공관리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3) 제1종, 제2종시설물 제외한 교량, 터널, 육교, 옹벽, 그 밖의 시설물(지자체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 터널, 옹벽, 항만, 댐, 하천, 상하수도 등의 구조물)

4) 2020.00.00. 손해배상 소송(원고: 관광객, 피고: 신안군수), 2021.00.00. 조정결정(합의금 150만원)

계획을 이행하도록 안내·촉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안전건설과)은 2018년부터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현황”과 같이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연도별 관리대상 총 83개소 시설물 중 8개소의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시설물관리계획을 이행하도록 안내·촉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시설물 관리업무을 소홀히 하고 있다.

[표 1]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현황(2018~2021. 12. 1.)

(단위 : 개소)

연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대상			수 립			미 수 립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계	83	80	3	75	74	1	8	6	2
2018	17	17	-	17	17	-	-	-	-
2019	22	21	1	18	18	-	4	3	1
2020	22	21	1	18	18	-	4	3	1
2021	22	21	1	22	21	1	-	-	-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나. 시설물의 정기·정밀점검 추진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등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되 정기점검은 안전 A등급은 반기에 1회, 그 외에는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표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현황”과 같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현황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따라서 신안군은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주기별로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안전건설과)은 [표 3] “정기점검 실시 현황”과 같이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2018년 하반기 이후 정기점검 총 153회 중 23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자체 지도·점검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3] 정기점검 실시 현황

(단위 : 회)

연도	구분	정기점검 대상			정기점검 실시			정기점검 미실시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계		153	147	6	130	128	2	23	19	4
2018	하반기	21	21	-	17	17	-	4	4	-
2019	상반기	22	21	1	18	18	-	4	3	1
	하반기	22	21	1	18	18	-	4	3	1
2020	상반기	22	21	1	18	18	-	4	3	1
	하반기	22	21	1	20	19	1	2	2	-
2021	상반기	22	21	1	21	20	1	1	1	-
	하반기	22	21	1	18	18	-	4	3	1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지방상수도, 군립도서관 등 공공시설물과 노후 민간병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관리부실에 의한 피해에 노출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대상시설물 지정 소홀 및 해상목교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보 ○○○을 훈계하고(**훈계**)

②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정밀점검 등 시설물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상하수도사업소)

훈 계 대 상 자 신안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법」에 따라 [표 1] “일반수도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일반수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일반수도사업 추진 현황(2018.11월~2021.10월)

(단위 : km,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계	도급액	관급자재 등		
계	3건		48,904	36,780	12,124		
1	신안군 ○○○○저수지 시설사업(○○면)	콘크리트댐 177m	26,340	17,743	8,597	2021.00.00.~ 2024.00.00.	○○○○㈜ (○○○)
2	신안군 ○○권(○○~○○)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송수관로 1.51㎞	20,977	18,014	2,963	2019.00.00.~ 2022.00.00.	○○○○건설㈜ (○○○)
3	○○○ ○○○○ 계류장 진입도로 개선사업	도로확장 1.58㎞	1,587	1,023	564	2021.00.00.~ 2022.00.00.	㈜○○○○건설 (○○○)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표 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현황”과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 40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표 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현황

(단위 : ㎥/일)

시설명	읍·면	개소 수	처리용량
계		40	6,661
하수종말처리장[1]	압해·지도읍, 임자·흑산면	4	4,000
농어촌 마을하수도[2]	압해읍 등 13개 읍·면	36	2,661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 ○○○은 2018.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2. 건설기술용역 평가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의 평가 중 기본설계는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실시설계는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공사는 해당 공사가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1)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도

2) 농어촌지역 내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도

그리고 「전라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내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분야의 모든 용역평가 결과 점수를 활용하여 상대평가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시공평가대상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용역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건설기술용역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표 3] “건설기술용역 평가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6년 신안군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표 3] 건설기술용역 평가 미실시 현황

구 분	용 역 명	용역 준공일	공사 착공일	평가이행 만료일	평 가 경과 일수
기본 및 실시설계	2016년 신안군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9.00.00.	2020.00.00.	2020.12.24.	342일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시공평가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아 건설기술용역참가자가 신안군에서 발주한 상수도 및 하수도 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시 시공평가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품질관리비 계상 및 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가.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비 과다

(1)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는 그 종류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과 같이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중급 품질관리대상공사는 품질관리 기술인 2명(중급 1, 초급 1)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는 시험관리인[3]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품질관리활동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중급 품질관리대상공사의 중급 품질관리기술자는 별도의 품질관리 활동비를 반영하여야 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 최하위 등급자인 초급 품질관리기술자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미포함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상하수도사업소)은 [표 4]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계상 현황”과 같이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의 초급기술인 1명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되므로 품질관리활동비 반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별도의 품질관리활동비 177,759천원을 과다 반영하였고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감액하지 않고 있다.

[표 4]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계상 현황

사 업 비	사업량	총사업비(백만원)			품질관리 활동비 (천원)
		계	도급	관급 등	
신안군 ○○○○저수지 시설사업(○○면)	콘크리트댐 177m	26,340	17,743	8,597	177,759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품질관리활동비 계상 대상이 아닌 사업에 품질관리활동비를 계

3)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상하여 불필요한 예산 177,759천원이 낭비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나. 일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 공사감독관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

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21. 12. 1. 감사일 현재 추진중인 일반수도 사업에서 설계에 과다 반영되어 해당 공종이 불필요한데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은 현장이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다.

① 신안군 ○○○○저수지 시설사업(○○면)

현장 내 보관 중인 관급자재 관리를 위한 인건비(보통인부, 30개월)를 반영하였으나 관급자재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비 22,580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② 신안군 ○○권(○○～○○)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3. 2. 12.에 따라 상하수도공 난이도를 보통으로 적용하는데 복잡으로 적용하였고, 관기초 5,630㎥의 모래 부설 시 살수를 하지않고 다짐을 실시하여 공사비 48,925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③ ○○○○ ○○○○ 계류장 진입도로 개선사업

세륜기 1개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여 현장 내 세륜기 미설치로 공사비 4,992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4.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4]은 공공하수도[5]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 등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며, 같은 법 제65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하수도법 제18조)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제11조에 따르면「하수도법」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농어촌 마을하수도 36개소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하고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한편 전라남도는 2018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감사관-0000(2019. 2. 15.)로 통보하면서 신안군수에게 사용개시를 공고하지 않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17개소의 사용개시를 공고하고, 사용료 미징수 중인 농어촌 마을 하수도 32개소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신안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21. 12. 1. 감사일 현재 [별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운영 현황”과 같이 2018년 정기종합감사 시 사용개시 공고를 하지 않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17개소 중 5개소는 사용개시 공고를 하였으나 12개소에 대하여 사용개시 공고를 하지 않았고, 2018년 정기종합감사 시 마을 하수도 사용료 미징수 32개소에서 하수도 요금부과가 불가한 도서낙도 10개소를 제외한 22개소 중 5개소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계획[6]을 수립하고 17개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하수도 관련 업무 소홀과 특정지역에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6) 2019. 3. 21. : 사용요금 징수 계획(안)(담당자 ○○○, 담당 ○○○, 소장 ○○○)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2018년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업무 소홀 건을 부적정하게 이행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②「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시공평가를 실시하며,「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품질관리활동비 177,759천원과 설계에 과다 반영된 76,497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고,「하수도법」제15조 등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하지 않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12개소에 대하여 사용개시를 공고하며, 사용료 미징수 중인 농어촌 마을 하수도 17개소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섬발전진흥과, 안전건설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행정지원과, 세계유산과, 신재생에너지과, 천일염지원과, 세무회계과, 상하수도사업소)

훈 계 대 상 자 ① 신안군 ○○○○과 지방○○사무관 ○○○

② 신안군 ○○○○○과 지방○○사무관 ○○○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8년 11월부터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균형 있고 조화로운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하천, 지방어항, 건축, 상하수도 등 [표 1] “5억원 이상 건설공사 추진 현황”과 같이 110건의 공사를 252,218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1] 5억원 이상 건설공사 추진 현황

(단위 : 백만 원)

계		안전건설과		섬진흥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		기 타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110	252,218	53	90,485	40	99,792	6	31,948	2	6,196	9	23,797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사무관 ○○○은 2021.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으로, 지방○○사무관 ○○○은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으로 근무하고 있다.

2. 건설공사 현장 품질시험계획 승인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에 따르면 초급 품질관리 대상 건설공사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규모 20㎡ 이상의 시험실과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를 배치할 경우에는 기본교육 35시간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제출된 품질시험계획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승인 통보하고, 규모 20㎡ 이상의 시험실과 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하였는지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안전건설과 등 9개 부서)은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별

표 1]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명세”와 같이 97개 사업장에서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대하여 검토 및 승인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안전건설과 등 8개 부서는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2] “시험실 미설치 명세”와 같이 82개 사업장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험실(시험, 검사장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등 9개 부서는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3] “품질관리자 교육 이수 명세”와 같이 82개 사업장의 현장에서 기본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등에 따라 건설공사장에 대한 품질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계획 승인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와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높이가 10m 이상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등)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및 이외에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로 되어 있다.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2조 제2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시설물안전법」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판정한 후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의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안전건설과 등 9개 부서)은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4] “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 업무처리 명세”와 같이 96개 사업장에서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 및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아 공사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가져왔다.

4.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비 과다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는 그 종류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과 같이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중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하는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에 해당되므로 초급 품질관리기술자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 품질관리기술자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미포함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섬발전진흥과 등 2개 부서)은 [표 2]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계상 현황”과 같이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의 초급기술인 1명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되므로 품질관리활동비 반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별도의 품질관리활동비 90,535천원을 과다 반영하였고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감액하지 않고 있다.

[표 2]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계상 현황

사 업 비	사업량	총사업비(백만원)			품질관리 활동비 (천원)	비 고
		합 계	도급	관급 등		
3개소		17,344	12,882	4,462	90,535	
○○항 ○○○○300사업 (○○○)	방파제 80m	3,698	3,272	426	40,106	섬발전진흥과
○○항 ○○○○300사업 (○○○○○○)	선착장 125m	2,824	2,515	309	40,096	섬발전진흥과
신안군 ○○○○ 건립공사	건축공사 1식	10,822	7,095	3,727	10,333	교육복지과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을 준수하고 부실시공 예방에 철

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품질시험계획 업무를 태만히 하여 공사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할 우려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사무관 ○○○과 지방○○사무관 ○○○을 훈계하고(**훈계**)

②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계획 승인 없이 시행 중인 현장에 대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아 승인하며, 시험실 면적이 부적합한 현장은 법적 기준에 따라 시험실을 설치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 계상된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90,535,000원을 감액 조치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4] 생 략